

제4부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전체 목록

※ 제4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0년 한해 동안 접수 · 처리한 언론중재 · 조정 사건의 전체목록을 게재합니다. 연구목적으로 인용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 익명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리결과 내 '이행방법'은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대상사건 중 조정조서 (조정성립의 경우)나 결정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혹은 중재결정의 경우)에 적시된 이행방법을 의미합니다. 편집자 주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2010서울조정1~2	한국철도공사 對 경향닷컴 (정정·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6일자) (2) 『‘단체해지 → 파업, 복귀 → 증징계’ 시나리오대로 ‘착착’』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노조 파업발생 50여 일 전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는 계획을 세워 파업을 유도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기사삭제,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정정보도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3~4	한국철도공사 對 경향닷컴 (정정·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중인 노조에 교섭재개를 제안했다가 청와대의 제동으로 철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 확정 후 3일 이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 본문 연결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2010서울조정5~7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문화일보, 문화닷컴,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법치 도전 법정 소란, 더 엄격히 처벌해야』 제하의 사실기사 [문화일보 (2009년 9월 2일자 39면), 문화닷컴·네이트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문화닷컴 : 각 기각결정 (사유 :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네이트 :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기각결정 (2010서울중재8 참조)]

2010서울조정8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조선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재판에 출석한 증인 폭행한 혐의 광고중단 협박 단체 2명 법정 구속』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5일자 A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며,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2010서울조정9~11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네이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오늘의 법정 모욕은 법원의 業報다』 제하의 사설기사 [조선일보 (2009년 9월 2일자 A35면), 디지털조선일보·네이버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2010서울조정8 기각사유 참조)	
2010서울조정12~15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광고주 협박범 재판 나온 증인 폭행 언론회 2명에 항소심도 '유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09년 10월 23일자 A10면), 디지털조선일보·네이버·네이트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2010서울조정8 기각사유 참조)	
2010서울조정16~18, 20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네이버,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 “키 작은 남자는 루저”』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09년 12월 26일자 A10면), 디지털조선일보·네이버·야후 (1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2010서울조정8 기각사유 참조)	
2010서울조정19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네이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정치 - YS “DJ와 난 세계 유례없는 특수 관계”』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2010서울조정8 기각사유 참조)	
2010서울조정21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뉴데일리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광고중단’ 협박 언론회, 항소심도 유죄』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22~26		구니카(주)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포장 뜯었더니 죽은 쥐 … 쇼핑몰은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제조, 판매한 유아용품에서 죽은 쥐가 발견된 후 신청인이 책임을 떠넘기며 성의 없이 대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PR보도 약속)

2010서울조정27~42	진○○ 對 한겨레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왜냐면』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 신분인 신청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해당민원은 적절하게 처리되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기고문 게재 (2010서울중재2~7 참조)] • 구글 · 파란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고문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기고문 이어서 게재 • 구글 : 기사제공언론사(한겨레닷컴)에 게재된 기고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닷컴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신문고 민원 수사 최선을 다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2010서울조정43~45	1.단월드 2.이승헌 對 신동아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해부 단월드 성공한 문화기업, 세계적인 정신지도자... 의혹으로 얼룩진 흥익인간 이화세계』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호 84~12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회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중용하는 종교단체인 것처럼 잘못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 사기, 탈세, 창립자의 부정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호 신동아독자 발언대 코너 ‘말길글길’ 면) ※ 조정조서상 반론보도문 제목 : 『신동아 1월호 “대해부 단월드” 보도 관련 반론보도』

2010서울조정46	배○○ 對 KBS-2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2009년 11월 9일 23:00)
신청인주장	프로그램 출연자가 “키 작은 사람은 루저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결정 (사유 : 사실적 주장이 아니다.)

2010서울조정47~49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對 iMBC,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 제하의 보도 [MBC-TV (2009년 11월 23일 21:00, 2009서울조정894 참조), iMBC · 네이버 · 다음 (1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이 구청장 부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근로를 동원해 경작시키면서, 관련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고의 누락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 네이버 · 다음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BC · 네이버 · 다음 :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BC · 네이버 · 다음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6일자)

2010서울조정50~53	김○○ 對 MBC-TV, iMBC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불만제로」 프로그램 ‘황당한 대리주차’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1월 6일 18:50), iMBC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대리주차 요원들이 고객 차량을 뺏긴다는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100만원, 사과서신, 부제소) • iMBC :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상업적 이용금지, 부제소)

2010서울조정54~55	이○○ 對 MBC-TV, iMBC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불만제로」 프로그램 ‘황당한 대리주차’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1월 6일 18:50), iMBC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비공개를 전제로 대리주차 피해사례를 제보했으나 신청인의 실명과 초상 등이 그대로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iMBC : 각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MBC-TV와 iMBC 연대하여 250만원, 유감표시, 부제소)

2010광주조정1~2	(주)동방이엔지 對 남도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나주시 홍보탑 업체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4일자 1면)
신청인주장	나주시 홍보탑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광주조정3, 5	(주)동방이엔지 對 인터넷 호남도민일보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나주시 고가 홍보탑 설치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나주시 홍보탑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광주조정4, 6	(주)동방이엔지 對 인터넷 호남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나주시 고가 홍보탑 설치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나주시 홍보탑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 이행방법 : 14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게재, 제목 클릭 시 합당한 정정보도문의 본문 표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행결과	『반론보도문 ‘나주시 고가 홍보탑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호남신문 (2010년 1월 22일자 6면), 인터넷 호남신문 (1월 25일자)] ※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 제목 : 『“나주시 고가 홍보탑 설치 특혜 논란” 정정보도문』

2010서울조정56~59	오○○ 對 MBC-TV, iMBC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불만제로』 프로그램 ‘황당한 대리주차’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1월 6일 18:50), iMBC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대리주차 요원들이 고객 차량을 뒤횈다는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100만원, 사과서신, 부제소) • iMBC :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상업적 이용금지, 부제소)

2010경기조정1~6	안○○ 對 중부일보, 구글,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반론청구)
조정대상	『“경찰이 합의 종용… 진단서 제출도 거부했다”』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09년 12월 23일자 22면), 구글·네이트·다음·드림위즈·파란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형사고소사건의 담당형사인 신청인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안 될 땐 쌍방과실이 될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일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구글 : 취하 • 네이트·다음·드림위즈·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23면) • 네이트·다음·드림위즈·파란 : 각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0~66	오은선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오은선 씨 히말라야 등정 성공 의혹제기, 간철폐가만 아는 진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09년 11월 24일자 10면), 한겨레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드림위즈·파란 (11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간철폐가 등반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칸첸중가 등정에 성공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2월 11일자 29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파란 (2월 11일자)]

2010서울조정67~68	오은선 對 SBS-TV, SBSi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8뉴스』 프로그램 '오은선, 칸첸중가 등반 의혹... "산은 알고 있다"' 제하의 보도 [SBS-TV (2009년 11월 24일 20:00), SBSi (11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칸첸중가 등반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69	붕○○ 對 코미디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TV 동물농장』 프로그램 '다래의 가출' 제하의 보도 (2010년 1월 3일 11:4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경과 신청인 소유의 차량 번호를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 결정 (피신청인 주장 : 1. SBS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방송한 것으로 방송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2. 내용에 대한 관련기관의 심의필을 완료하여 방송한 것이므로 방송에는 문제가 없다. 3.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2010서울조정70~75	환경부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기자메모> '미군부대 오염' 변죽만 울린 환경부』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1월 4일자 B2면), 경향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환경부가 부평미군부대 안팎 환경오염 원인규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경향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9~16 참조)]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닷컴 : 홈페이지에 24시간 동안 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합의한 반론 보도문 본문 연결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고 자체 움부즈만 코너인 '정정 · 반론 등 게재 코너' 에 게시 • 야후 : 뉴스 홈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 표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인천경향 1월 4일자 2면』 제하의 기사 [인천경향 2010년 1월 22일자 2면, 경향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1월 22일자)]

2010서울조정76~79	(주)경기방송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경기방송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조 정 대 상	[미디어오늘 (2009년 12월 16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12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기방송에서 알력다툼이 불거져 상호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7일 자 2면)

2010서울조정80	(주)동방이엔지 對 뉴시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나주시 고가 홍보탑 설치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나주시 홍보탑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1~86	삼화산업(주)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라이코스,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포스코 하청업체 삼화산업, 새해 첫 해고』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회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던 노조원을 해고한 뒤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권고사직”이었고 고소·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87~94	국립의료원 對 메디컬투데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립의료원, 직원 신분문제 등 대책 마련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법인화되면서 직원의 공무원 신분 유지문제와 관련 설명회 등의 개최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 모두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국립의료원, 직원 신분문제 등 대책 마련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8일자)

2010서울조정95~98	국립의료원 對 메디파나뉴스, 구글,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립의료원 떠나는 500여 명 어디로 가나』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법인화되면서 직원의 공무원 신분 유지문제와 관련 설명회 등의 개최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국립의료원 떠나는 500여 명 어디로 가나』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2010서울조정99~101	국립의료원 對 민중의소리,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립의료원 법인화 코 앞으로 ... '갑갑한' 노동자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법인화되면서 직원의 공무원 신분 유지문제와 관련 설명회 등의 개최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02	(주)동방이엔지 對 뉴시스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나주시 고가 홍보탑 설치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나주시 홍보탑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대전조정1	이○○ 對 대전투데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연기 전의면 사무소 직원 욕설 '물의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7면)
신청인주장	연기군 면사무소 직원인 신청인이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인터넷 대전투데이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03~104	이○○ 對 TVN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엑소시스트』 프로그램 '다시 보고 싶은 2009 엑소시스트'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30일 24:00)
신청인주장	무속인인 신청인이 전화 목소리만 듣고도 병명을 맞출 수 있다고 했고, 제작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를 사실 그대로 방송한 것이므로 정정이나 손해배상은 불가하다.)

2010서울조정105~120	(주)동방이엔지 對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조인스MSN, 천리안,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나주시 고가 홍보탑 설치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나주시 홍보탑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21~124	(주)대전프로축구 對 한국축구신문, 인터넷한국축구신문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전 시티즌, U-15 코칭스태프 심야 선수 폭행 파문』 제하의 기사 [한국축구신문(2009년 12월 30일자 6면), 인터넷 한국축구신문 (12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구단이 재정 지원과 운영을 맡고 있는 축구부에서 폭행사건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과장 보도하여 구단의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각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축구신문 : 홈페이지에 24시간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합당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연결
이 행 결 과	『유성중 축구부 감독 학생폭행, 사실과 달라』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3일자 6면)

2010서울조정125~128	이○○ 對 한국축구신문, 인터넷한국축구신문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대전 시티즌, U-15 코칭스태프 심야 선수 폭행 파문』제하의 기사 [한국축구신문(2009년 12월 30일자 6면), 인터넷한국축구신문 (12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전시티즌 U18팀 충남기계공고 축구부 학생들을 만취상태에서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할 수는 없다.)

2010서울조정129~136	(주)투머로우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이단 종교행사에 고3 동원 '말뚝'』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신청인주장	'투머로우' 라는 서적은 (사)국제청소년연합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회사가 발행하는 서적이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불성립결정 (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2010서울조정137~140	(사)국제청소년연합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이단 종교행사에 고3 동원 '말뚝'』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이단종교단체 및 대학선교단체가 아니며, 보도된 행사가 고3 학생들을 동원한 종교 행사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 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보도할 사안이 없으며, 현재 법원에 민 · 형사 소송이 제기중이므로 조정에 응할 수 없다.)

2010전북조정1	1. 최○○, 2. 최□□, 3. 백○○ 對 전주KBS-1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9 - 전주」 프로그램 '현장추적7400 - 엉터리 행정'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11일 21:00) (2) 「뉴스9 - 전주」 프로그램 '속보' 관광농원 행정 거짓 들뜸'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14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무주군청으로 허가받은 관광농원 진입로를 불법적으로 막은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1회 방송, 화면하단에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반론보도문의 본문 낭독

이행결과	「뉴스9 - 전주」 프로그램 '무주 관광농원공사 중단 관련 속보'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8일 21:00)
2010부산조정1~2 1. 박○○,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對 부산일보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자활센터 횡령 알고도 '쉬쉬'』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8일자 6면)
신청인주장	사회복지재단의 간부인 신청인이 구청으로부터 수탁관리·운영해오던 자활센터를 통해 거액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3일자 14면)
2010경기조정7 과천시 對 과천시저널 (정정청구)	
조정대상	『과천시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 추진 가능』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1~2면)
신청인주장	과천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재건축이 정비계획에 의한 재건축 보다 2년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반론보도문 "과천시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 추진 가능" 보도에 대한 과천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1일자 1면)
2010서울조정141~148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오늘(141~142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미디어오늘(143~144 정정·손배청구), 네이버(145 정정청구), 다음(146 정정청구), 드림위즈(147 정정청구), 파란(148 정정청구)	
조정대상	(1)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 [미디어오늘 (2010년 1월 13일자 1면), 인터넷 미디어 오늘·네이버·다음·드림위즈·파란 (1월 12일자)] (2) 『KBS 수신료 관리, 방만한 사각지대』 [미디어오늘 (2010년 1월 13일자 3면), 인터넷 미디어오늘·네이버·다음·드림위즈·파란 (1월 12일자)]
신청인주장	KBS내에 수신료 납부대상자를 현장에서 조사하는 계약직 직원보다 이를 감독·관리하 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내근인력이 2배 가까이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채소) • 네이버·다음·드림위즈·파란 :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미디어오늘 : 홈페이지에 24시간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 표시, 각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 KBS 수신료 내근 직원 184명 아닌 164명』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0년 2월 10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네이버·다음·드림위즈· 파란 (2월 4일자)]

2010서울조정149~150		대한공중보건업협회의 인터넷보건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공중보건한의제도 유명무실로 ‘폐지론’ 대두』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한의대 졸업생들을 공중보건업에 편입시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및 기사 삭제)	
이행결과	『“공중보건한의제도 유명무실로 ‘폐지론’ 대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2010충북조정1~4		조○○○ 對 충청리뷰, CJB-TV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리뷰: 『청주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8일자 사회면) • CJB-TV: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9년 12월 18일 06:2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지급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1~156		(주)케너텍 對 이투뉴스,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국내 첫 구역전기사업(CES) 애물단지 전략』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일자)	
신청인주장	구역형 전기사업자인 신청인 회사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입주자들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투뉴스: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네이트: 각 취하 [사유: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게재(2010서울중재 17~20 참조)]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투뉴스: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반론보도문 게재 	
이행결과	• 이투뉴스·네이버·네이트: 『사당동 CES사업 보도에 대한 케네텍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1월 26일자)	

2010서울조정157~159		(재)시민방송 對 독립신문,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시민방송 RTV는 진정한 시민채널인가, 공산주의 선전매체인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사회주의 성향이며, 참여정부 시절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후속보도 게재)	
이행결과	『RTV, “공산주의 선전매체”에 발끈』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2010서울조정160~167	(재)시민방송 對 뉴데일리 ^(160~161) , 구글 ⁽¹⁶²⁾ , 네이버 ⁽¹⁶³⁾ , 다음 ⁽¹⁶⁴⁾ , 드림위즈 ⁽¹⁶⁵⁾ , 야후 ⁽¹⁶⁶⁾ , 파란 ⁽¹⁶⁷⁾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데일리 · 구글 · 다음 : 『방개혁 “시민채널 RTV, 공산주의 선전 방송인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 뉴데일리 · 네이버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DJ때 출생, 노무현이 키운 RTV는 어떤 곳?』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4일자) • 네이버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방개혁, “RTV, 이념적 편향성 도 넘어”』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사회주의 성향이며, 참여정부 시절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데일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구글 · 네이버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각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데일리 : 초기화면 중앙목록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구글 · 네이버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뉴데일리가 정정보도문을 전송해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 뉴데일리 · 구글 · 네이버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파란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일자)

2010제주조정1~2	1. 윤○○, 2. (주)아시아포럼 對 JIBS-TV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아침뉴스』 프로그램 ‘중국산 옥돔 불법유통’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1일 07:15)
신청인주장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창고와 소속 직원의 초상을 내보냈으나 적발된 바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프로그램 말미에 화면 좌측 하단에 제목(바로잡습니다) 표시, 배경화면으로 조정대상 보도 중 신청인 등장 화면 인용, 진행자가 통상속도로 정정보도문 낭독, 1회 방송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168~169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對 한국농정, 인터넷 한국농정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농민단체 더욱 굳건히 단결할 것』 제하의 기사 [한국농정신문 (2009년 12월 14일자 1면), 인터넷 한국농정 (1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농민연합을 탈퇴한 이유가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의 마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할 수는 없다.)

2010서울조정170~171	이○○ 對 한겨레 (정정·반론청구)
조정대상	『"왜국보도 고통, 평생 멍에로 남아"』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9일자 20면)
신청인주장	정청래 전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던 신청인이 당시 정 의원의 경쟁후보 선거 사무장이었고, 제보가 허위였음을 인정하바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35면)

2010서울조정172~173	김○○ 對 국민일보, 쿠키뉴스 (매체별 손배청구)
조정대상	『집은 많은데 갈 곳이 없네』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0년 1월 16일자 8면), 쿠키뉴스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집은 많은데 갈곳이 없네' 제하의 기사에서 하숙집 전단지를 쳐다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100만 원, 부제소) • 쿠키뉴스 :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부제소)

2010서울조정174~179	(사)케이비엘(한국축구연맹)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재파일』 KBL의 과도한 서울사랑과 오락가락 행정』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09년 12월 10일자 A25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10일자)] (2) 『역주행 농구 KBL 대해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09년 12월 15일자 A26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15일자)] (3) 『한국농구, 이대로는 안 된다 <1> 허울뿐인 이사회』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09년 12월 23일자 A27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23일자)] (4) 『한국농구, 이대로 안 된다 <3> KBL의 일방통행식 밀실 행정』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09년 12월 25일자 A15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맹이 일방통행식 밀실 행정을 통해 안건을 결정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국일보 : 스포츠면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 연결
이행결과	『KBL, "구단들과 유기적인 소통 노력"』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0년 2월 12일자 A21면), 인터넷한국일보 (2월 12일자)]

2010서울조정180~198	김○○ 對 뉴시스, 연합뉴스, 경향닷컴, 노컷뉴스, 뉴스천지, 매경닷컴, 뷰스앤뉴스, 브레이크뉴스, 세계닷컴, 시민일보인터넷, 시사서울닷컴, 인터넷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닷컴, 오마이뉴스, 폴리뉴스, 프레시안, 한강타임즈, 한겨레닷컴, iMBC (매체별 정정청구)
-----------------	---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스 : 『민주 “경찰, 지관스님 폭행 공개 사과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7일자, 이하 게재일자 같음) • 연합뉴스 : 『김포경찰, 스님, 경찰 폭행혐의 조사』 제하의 기사 • 경향닷컴 : 『술취한 경관들 스님 폭행 불교계 화났다』 제하의 기사 • 노컷뉴스 : 『“만취 경찰관 스님 폭행, 경기청장 사과하라”』 제하의 기사 • 뉴스천지 : 『술 취한 경찰이 스님 ‘폭행’ … 불교계 강력 반발』 제하의 기사 • 매경닷컴 : 『주지 스님이 경찰과 서로 폭행 ‘입건’』 제하의 기사 • 뉴스엔뉴스 : 『민주 “경찰, 4대강 반대 스님 사찰하다 폭행?”』 제하의 기사 • 브레이크뉴스 : 『만취 경찰, ‘4대강 반대’ 스님 폭행 … 불교계 거세게 반발』 제하의 기사 • 세계닷컴 : 『“만취경찰 스님 폭행” … 뿔난 불교계』 제하의 기사 • 시민일보 인터넷 : 『심야 만취 경찰관 스님 집단폭행』 제하의 기사 • 시사서울닷컴 : 『경찰, ‘4대강 반대’ 지관스님 폭행 … 민주당, 불교계 ‘반발’』 제하의 기사 • 인터넷 아시아경제 : 『만취한 경찰, ‘4대강 반대’ 스님 폭행』 제하의 기사 • 아시아투데이닷컴 : 『조계종, ‘스님 폭행’ 경기경찰청 항의방문 … 진상규명 요구』 제하의 기사 • 오마이뉴스 : 『조승수 “지관스님 폭행, 국회 차원 진상조사할 것”』 제하의 기사 • 폴리뉴스 : 『경찰, ‘4대강 반대’ 지관스님 폭행 파문 … 정치권 비상한 관심』 제하의 기사 • 프레스시안 : 『만취 경찰의 스님 폭행 … 불교계 뿔났다』 제하의 기사 • 한강타임즈 : 『민주당 논평, 경찰청장은 지관스님 폭행에 공개 사과하고, 정치사찰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 한겨레닷컴 : 『경찰이 ‘4대강 반대’ 지관스님 폭행 ‘성난 불교계’』 제하의 기사 • iMBC : 『만취 경찰관 지관스님 폭행 … 불교계 ‘강력 항의’』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기사에서 ‘승려’ 라는 예삿말 대신 ‘스님’ 이라는 높임말을 써서 “경찰관들이 지관스님을 폭행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2010서울조정199~2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파업으로 증명된 방만경영』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4일자 3면)
신청인주장	철도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여객운송에 차질이 없었다는 것은 과잉인력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필수업무 분야의 파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광주조정7	정순열 對 광남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민주당 공천 관문 누가 뚫을까”』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고흥군수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9일자 5면)

2010서울조정201~207		최○○ 對 뉴시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홀라당 끌락... '교수와 여제자'가 뭐기에』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08~214		최○○ 對 마이데일리,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1) 『전라 연극 '교수와 여제자' 최○○ 하차, 이탐미로 교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2) 『전라 연극 '교수와 여제자' 노출 수위 높여 부산공연 돌입』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15~219		최○○ 對 매경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알몸 연극 '교수와 여제자', 이탐미 투입 ... "좀 더 노골적 공연될 것"』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20~225		최○○ 對 인터넷 맥스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1) 『전라 연극 '교수와 여제자' 하차한 최○○에게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2) 『교수님은 왜 최○○에서 이탐미로 "여제자"를 바꿨나?』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26~228		최○○ 對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다음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1) 『"알몸, 성행위 연기 몰카소동" ... '교수와 여제자' 최○○, '이탐미'로 교체된 사연은?』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4일자) (2) 『"얼마나 야할까?" ... '파격 성 묘사' 선보일 교수와 여제자, 최○○ 대신 이탐미?』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3) 『"부산에선 더 야하다" ... 교수와 여제자, 최○○ 대신 이탐미 "얼마나 야하길래?"』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4) 『노골적인 성행위? ... 최○○ 하차한 '교수와 여제자', 이탐미로 '주료' 대체 왜?』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5) 『"부산에 떴다?" ... 최○○ 떠나고 이탐미 뜬 교수와 여제자, 얼마나 야하길래?』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조정 대상	(6) 『"더 야하다?" ... 최○○ 대신 이탐미 '교수와 여제자' 열연 기대,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7) 『"얼마나 야하길래?" ... 교수와 여제자, 최○○ 대신 이탐미 "대체 왜?"』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8) 『"더 야해진다?" ... 교수와 여제자 '최○○ 떠나고 이탐미 오고' "얼마나 야해?"』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29~230 최○○ 對 문화저널21, 네이버 (매체별 손배청구)	
조정 대상	(1) 『'교수와 여제자' 이번엔 몰카 소동 최○○ 입원』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2) 『'교수와 여제자' 이번엔 몰카 충격 최○○ 하차 이탐미 교체 투입』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31~232 최○○ 對 다음, 야후 (매체별 손배청구)	
조정 대상	『'교수와 여제자' 이번엔 몰카 충격 최○○ 하차 이탐미 교체 투입』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33~235 최○○ 對 스포츠서울TV, 네이버,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정 대상	『이탐미 '교수와 여제자' 파격적인 성행위 궁금증』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36~240 최○○ 對 시사서울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손배청구)	
조정 대상	(1) 『'교수와 여제자' 최○○ 성행위 연기 장면 디카 촬영 '앗 뜨거!!』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3일자) (2) 『'교수와 여제자' 여배우 최○○, 불안증세 호소 뒤 입원』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3일자) (3) 『연극 '교수와 여제자', 부산으로 간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41~242 최○○ 對 인터넷 아시아투데이닷컴, 네이버 (매체별 손배청구)	
조정 대상	『알몸연극 '교수와 여제자', "동영상 촬영, 너무 몰지각"』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43~245	최○○ 對 네이트,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해청구)
조정대상	『‘교수와 여제자’, 몰카총격 최○○ 하차 이담미 교체투입』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246~257	육○○ 對 서울신문NTN,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브리트니 머피로 돌아보는 약물 사망 스타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5일자)
신청인주장	95년 사망한 가수故 김성재가 약물복용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알려드립니다] 듀스 전 멤버故 김성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2010서울조정258~26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조선일보 (정정·반론·손배청구)
조정대상	『“야합 비난” 민노총의 이중성』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9일자 A4면)
신청인주장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가 노사정 합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시행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디지털 조선일보에 반론보도문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8일자 A12면)

2010부산조정3~5	최○○ 對 굿데이스포츠, 네이버, 다음 (매체별 손해청구)
조정대상	『‘교수와 여제자’, 최○○ 하차 - 이담미 투입 부산공연 노출 수위 UP』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부산조정6~7	일산아파트1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對 울산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1) 『조합이 200억원 추가 부담키로』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일자 2면) (2) 『일산APT 1지구 재건축 ‘난항’』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6일자 6면) (3) 『일산APT 1지구 재건축 기공식 강행』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건축사업을 공식을 강행하는 등 내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261~262	전국철도노동조합 對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파업으로 증명된 방만경영』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4일자 3면)
신청인주장	철도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여객운송에 차질이 없었다는 것은 과잉인력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필수업무 분야의 파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A12면)

2010서울조정263	국무총리실 對 신동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문건에 나타난 MB 세종시의 불편한 진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호 82~91면)
신청인주장	세종시 원안 추진 시에도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가 활발히 추진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으므로 정정할 수 없다.)

2010강원조정1	현대제철석회석저장시설반대대책위원회 對 강원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석회석 화물 동해항 유치 협의체 결성』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20면)
신청인주장	석회석화물 동해항유치를 위한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단체는 주민협의체 결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내용 : 2010년 2월 19일자 A20면)

2010강원조정2	전○○ 외 11인 對 강원도민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이금선 여경협 강원지회장 재추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5일자 6면)
신청인주장	이금선 현 회장이 여성경제인연합회 강원지회 회장에 재추대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임시총회시 정족수 미달로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협회 규정상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재추대에 관한 논란이 있더라도 그것은 여경협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언론사가 정정할 사안은 아니다.)
경 과 사 항	『"현 여경협 회장직은 임시" 강원지회 일부 회원 주장』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7일자 경제면)

2010강원조정3~5	최○○ 對 인터넷강원일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교수와 여제자 최○○ 대신 이탐미 투입 ... 노출 수위 높인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전북조정2~3	오○○ 對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일보 (매체별 추후청구)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일보: 『"선생님이 학생싸움 부추기며 욕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4일자 6면) • 인터넷 전북일보: 『"선생님이 학생끼리 싸우라며 욕" 진위여부 논란 예고』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경찰에 고발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추후보도 게재)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일보: 『"교사가 학생싸움 부추긴다" 돈 노린 거짓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6면) • 인터넷 전북일보: 『교사가 학생싸움 부추긴다 고발... 경찰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2010서울조정264~266	임○○ 對 기독교성결신문 (정정·반론·손배청구)
조정 대상	(1) 『유지재단 밀실인사와 비리』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4일자 7면) (2) 『총회보고서에 드러난 재정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4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불법으로 채용되어 교단 총무보다 더 높은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게재, 기독교성결신문 홈페이지의 뉴스홈 동일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부제소)
이행 결과	『유지재단 관리실장, "총회보고서 재정의혹,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7면)

2010경기조정8~15	(주)경기방송 對 경기도민일보, 경도신문, 다음, 수도권일보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민일보: (1) 『작년 28억, 올 10억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면), (2) 『청취율 자료제공 요청 거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1면) • 경도신문: 『지역방송 예산 '몰아주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11면) • 다음: (1) 『지역방송 예산 '몰아주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2) 『방송사 특혜논란 '주먹구구' 해명』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 수도일보: (1) 『경기도, K지방방송사와 협약 혈세 낭비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면), (2) 『경기 "특혜의혹 지방방송 재계약 신중검토"』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민일보·경도신문·수도일보: 각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게재, 인터넷판 메인 화면에 1일간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이어서 게재) • 다음: 취하 (사유: 기사 삭제)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민일보: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1일자 14면) • 경도신문: 『정정보도문, '지역방송 예산 몰아주기 논란'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1일자 11면) • 수도일보: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6일자 15면)

2010경기조정16~27	(주)경기방송 對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오늘신문, 인터넷 오늘신문, 우리일보, 전국매일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일보 : (1) 『낮은 청취율 불구 ‘듬뿍’, 경기도, 지방방송사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5면), (2) 『경기도, 지방방송 특혜 논란 계속』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1면) • 시대일보 : 『경기도, 캠페인 제작 ‘혈세 평평’』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2면) • 오늘신문 : 『작년 28억원 올해 1개 프로에 10억 협약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4면) • 인터넷 오늘신문 : 『작년 28억원 올해 1개 프로에 10억 협약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 우리일보 : (1) 『작년 28억원 올해 1개 프로에 10억 협약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면), (2) 『경기도, 방송사 재계약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1면) • 전국매일 : (1) 『청취율 낮은 지방방송사 예산 대폭지원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6면), (2) 『“내년 재계약 신중 검토”』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일보·우리일보·전국매일 : ▷ 정정청구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게시,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 오늘신문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 인터넷 오늘신문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 시대일보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p>※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오늘신문 : 메인화면에 1일간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6일자 15면) • 시대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2면) • 오늘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14면) • 인터넷 오늘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 우리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1면) • 전국매일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6면)
2010서울조정267	이○○ 對 프라임경제 (추후청구)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주대교구, 임동성당 사태 해명 나서』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7일자) (2) 『임동성당 신도들 성체의식 거부 왜?』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6일자) (3) 『[포토]임동성당 신도들 대주교에게 거센 항의』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6일자) (4) 『[포토]광주대교구 신부들 신도들과 몸싸움 벌여』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6일자)

조정대상	(5) 『[포토]임동성당 미사도중 신도들 집단항의 '거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6일자) (6) 『[포토]임동성당 신도들 미사 중 성체의식 거부』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6일자) (7) 『[포토]임동성당 비리의혹 농성 5일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6일자) (8) 『임동성당 횡령 진실게임 2라운드 돌입』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2일자) (9) 『[기자수첩] 무서운 신부님과 순수한 신자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6일자) (10) 『공금횡령 '의혹' 임동성당, 사목회 등 진실규명 '촉구'』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5일자) (11) 『광주대교구 임동성당 배일 속 회계 관리』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7일자) (12) 『천주교 광주대교구 진실공방』 법정으로 이어지나』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3일자) (13) 『천주교 광주대교구 드러나는 의혹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8일자) (14) 『천주교 광주대교구 진실공방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임동성당 사무장으로 재직하던 신청인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사유 : 추후보도 게재, 피신청인과 기사전재계약을 맺은 포털에 게시된 각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부제소) ※ 이행방법 : 7일간 프리임경제 초기화면 중앙목록에 추후보도문의 제목 표시,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 연결, 추후보도문을 각 조정대상기사와 동일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천주교 광주대교구 임동성당 회계부정 의혹,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2010제주조정3	(주)한라에너지 對 제민일보 (반론청구)
조정대상	(1) 『"한라LPG충전소 또 부실시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4면) (2) 『<사실> 규명되어야 할 LPG 부실공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1일자 2면) (3) 『가스공사 부실여부 확인 모르쇠』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1일자 4면) (4) 『<사실> 가스안전공사의 안일한 안전의식』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2일자 2면) (5) 『한국가스공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2일자 4면) (6) 『가스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3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추진중인 LPG 가스 충전소의 시공과정에서 파일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와 유감표명은 게재할 수 있으나 합의 시 부제소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10서울조정268~269	(주)○○식품 對 소비자기만드는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상한 음료 먹고 구토" vs "안 마셨잖아"』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한 두유를 마신 아이들이 구토 증상을 보였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2010광주조정8	(유)파인뉴스 對 회순미래뉴스 (정정청구)
조정대상	『군민 혈세로 화순군, 홍보비 '평평'』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화순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는 등 군정에 대한 비판보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2010서울조정270~276	1. 경기도, 2. 김문수 對 뉴스앤뉴스, 네이버, 네이트, 드림위즈, 야후, 파란,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주도한 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 때문에 경기도의 수입이 줄어 재정자립도가 폭락했다고 보도했으나, 부동산 감세정책은 참여정부시절부터 시행된 것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반론보도문> 경기도의 입장 “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 관련 기사』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일자)

2010서울조정277~278	조○○ 對 일일서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박영준 국무차관 ‘옥외광고탑’ 회의 주재』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3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옥외광고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해당 보도문 송고, 부제소)
이행결과	『‘옥외광고사업 로비 의혹’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8일자 6면)

2010서울조정279~286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반론청구)
조정대상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영진위 심사 의혹 ‘눈덩이’』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2월 4일자 24면), 한겨레닷컴·구글·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파란 (2010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공모 서류에 모 영화인의 이름을 동의없이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기각결정(사유 :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0서울조정287~302	(주)한스킨 對 머니투데이, 인터넷 머니투데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비비크림’ 한스킨, 유통사업 부진』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0년 1월 28일자 11면), 인터넷 머니투데이·네이버·네이트·다음·드림위즈·야후·파란 (2010년 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잦은 구조조정으로 팀장급 인력이 대거 교체되거나 퇴사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303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對 문화일보 (반론청구)
조정대상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들 임금동결했다더니 ... 복지 포인트로 '눈가림' 대폭인상』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지자체들이 복지포인트를 올려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기사에서 울산이 가장 많이 인상됐다고 보도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정정이나 반론보도할 의향이 없다.)	

2010서울조정304~305		(사)한국영화감독협회 對 한겨레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영화계 우파 '떡고물 과욕'』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7일자 2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대표적인 영화계 우파단체이며, 기획전을 신청인 협회 시사회에서 열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한겨레닷컴의 뉴스홈 동일기사의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5일자 25면)	

2010서울조정306~309		(사)한국영화감독협회 對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영화계 우파 '떡고물 과욕'』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대표적인 영화계 우파단체이며, 기획전을 신청인 협회 시사회에서 열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뉴스홈의 자체 움브즈만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이행결과	『2월 25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4일자)	

2010대전조정2		세종시원주민생계및재보상비상대책위원회 對 세종뉴스 (정정청구)
조정대상	『일당 3만원에 500여 명 동원한 세종시 수정안 집회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비대위가 궐기대회를 열면서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동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메인면에 24시간 게재,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에 링크시켜 배치	
이행결과	『세종시 수정안 집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5일자)	

2010서울조정310~311		세종시원주민생계및재보상비상대책위원회 對 경향닷컴, 한겨레닷컴 (정정청구)
조정대상	• 경향닷컴 : 『세종시 집회 참가자 "돈 받았지만 출처 몰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조 정 대 상	• 한겨레닷컴 : 『세종시 수정안 찬성집회 돈으로 군중 동원』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비대위가 권기대회를 열면서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동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향닷컴 : 취하 • 한겨레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한겨레닷컴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시하고, 제목 클릭 시 반론 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겨레닷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4일자)

2010부산조정8	대연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對 부산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밀어붙이기 개발 제동 재건축 · 재개발 시장 대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9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소송 원인을 ‘백지 재개발 동의서’ 때문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으므로 정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312	(주)에스비에스 對 KBS-1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한국이 붕?’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9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로 인해 2006년 월드컵 중계권료가 2002년 대비 233% 인상됐다고 보도했으나, 133%가 맞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뉴스9」 프로그램 중에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
이 행 결 과	「뉴스9」 프로그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9일 21:00)

2010서울조정313~320	국립중앙극장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정부 10억 지원 ‘이상한 스토리’』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1월 22일자 1면), 경향닷컴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하나포스 (2010년 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요덕스토리’ 라는 뮤지컬과 관련, 정부가 10억을 지원하고 국립극장 측이 대관을 해준 것은 모두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2면) • 경향닷컴 · 구글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하나포스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2010서울조정321~328	문화체육관광부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하나포스 (매체별 반론청구)
------------------------	--

조정대상	『정부 10억 지원 ‘이상한 스토리’』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1월 22일자 1면), 경향닷컴·구글·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하나포스 (2010년 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뮤지컬 ‘요덕스토리’와 관련해, 정부가 10억을 지원하고 국립극장 측이 대관을 해준 것은 모두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경향닷컴·네이버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구글·네이트·다음·야후·하나포스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닷컴·구글·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하나포스 : 홈페이지 뉴스면에서 반론보도문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2면) • 경향닷컴·구글·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하나포스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2010제주조정4~7		김○○ 對 한라일보, 제주의소리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일보 : 『탐라대 ‘불법매각’ 계획 파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3일자 4면) • 제주의소리 : 『동원학원 전 이사장, 탐라대 150억 ‘불법매각’ 계획 파문』 (2010년 2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탐라대를 불법매각하여 과거 횡령했던 교비를 보전하려고 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부제소) • 제주의소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소리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일보 : 『“탐라대 불법매각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0일자 3면) • 제주의소리 : 『김○○ 전 이사장 “탐라대 ‘불법매각’ 계획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2010서울조정329		국가정보원 對 한겨레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MB’ 맨 국정원장의 MB 향한 헌신?』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30일자 5면)	
신청인주장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내가 다 책임질테니 일하라’고 지시하였고, ‘퇴직직원 접촉 금지령’을 내리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6일자 2면)	

2010제주조정8~9		동원교육학원 공동비상대책위원회 對 제주의소리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동원학원 전 이사장, 탐라대 150억 ‘불법매각’ 계획 파문』 (2010년 2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김○○ 전 이사장의 측근들이며,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전 이사장의 복귀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행결과	김○○ 전 이사장 “탐라대 ‘불법매각’ 계획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2010서울조정330	김○○ 對 KBS-1TV (정정청구)
조정대상	『뉴스9』 프로그램 ‘선진국, 독점방지 대세는 합동방송’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10일 21:00)
신청인주장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계약한 회사는 SBS인터내셔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주체가 서울방송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리결과	기각결정 (사유 :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2010서울조정331~334	전국철도노동조합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09년 12월 4일자 1면), 인터넷 중앙일보 (1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으로 어느 입시생이 면접에 늦어 서울대에 불합격했다고 보도했으나, 사건 당일 열차 운행은 조기 정상화되었으므로 학생의 지각과는 무관했다.
처리결과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피신청인 각 이의신청 (사유 : 보도내용은 사실이므로 중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인터넷 중앙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게재 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 게재한 뒤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2010충북조정5~6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對 인터넷 충청매일, 충청매일 (매체별 반론청구)
조정대상	『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 내분』 제하의 기사 [인터넷 충청매일 (2010년 2월 10일자), 충청매일 (2월 11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합회 회장이 연임을 위해 정관을 무시하고 총회 일정을 늦추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매일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을 1일 동안 게재, 제목을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게재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이행결과	『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충청매일 (2010년 3월 1일자), 충청매일 (3월 2일자 사회면)]

2010강원조정6~8	윤○○ 對 화천인터넷뉴스 (6~7 정정·손배청구), 다음 (8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화천 새내면 광덕 계곡 끊이지 않는 의혹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군으로부터 대여 받은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 여러 건의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천인터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정정보도, 이 사건 보도에서 다른 쟁점들에 대한 재판부의 확정판결 내용이 원보도 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정보도 게재)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대전조정3~5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對 인터넷 충청시대, 온아신문, 충청시대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충청시대 : 『시각장애인연합회 내분 심각』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 온아신문 : 『충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련 내용』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 충청시대 : 『시각장애인연합회 내분 심각』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1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총회날짜를 3월로 결정한 것이 회장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충청시대 : 핫이슈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 게재, 이후에는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에 링크시켜 배치 • 온아신문 :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 게재, 이후에는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 기사에 링크시켜 배치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충청시대·온아신문 : 『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6일자) • 충청시대 : 『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6일자 2면)

2010서울조정335~343	국립의료원 對 메디컬투데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립중앙의료원 노조 독단적 지방발령은 인사전횡』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법인화를 추진중인 신청인 단체가 소속 간호사를 지방발령한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344~346	국립의료원 對 코리아헬스로그, 구글, 네이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립의료원, 공무원 신분 유지자들에 인사 횡포』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법인화를 추진중인 신청인 단체가 소속 간호사를 지방발령한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헬스로그 · 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구글 : 취하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헬스로그 · 네이버 : 『국립의료원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2010서울조정347~352	국립의료원 對 헬스코리아뉴스, 구글, 네이버,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성명] 여성의 약점을 악용한 거둬들이는 인사횡포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법인화를 추진중인 신청인 단체가 소속 간호사를 지방발령한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박 성명 게재)
이 행 결 과	『[반박성명] 국립의료원 공무원 노동조합 성명서 관련 해명자료』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2010경기조정28~29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2. 이익진 對 인천경향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이익진 계양구청장 수사 검토』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6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구청의 CCTV사업자 선정과 관련, 경찰이 단체장을 수사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유감표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에는 각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 이어서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이익진 계양구청장 보도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천경향신문 (2010년 2월 26일자 2면), 인터넷 인천 경향신문 (2월 26일자)]

2010서울조정353~358	황화성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네이버, 네이트, 야후, 코리아닷컴, 하나포스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선출 불협화음』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회장직을 연임하기 위해 정관을 무시하고 총회 일정을 늦추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일자)

2010경남조정1~2	함안군 對 The 함안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골묘지 강행 주민 원성』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1면) (2) 『초심으로 돌아갈 때』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2면) (3) 『상대후보 출마자에 음해성 비방』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4면) (4) 『무사안일 함안군 재무행정 빈축』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11면)

신청인주장	함안군청이 과오납 세금을 5년간 방치하는 등 무사안일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1면)
2010경기조정30~31	정중근 對 경기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관급공상 수의계약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4일자 1면) (2) 『자치계약법 위반 특혜 ‘파장’』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5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시의회 부회장이 신청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건설회사가 포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독식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경기도민일보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게시, 그 이후에는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2면)
2010서울조정359~374	(주)펀스테이션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성남 ‘펀스테이션 특혜’ 사실로』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2월 4일자 14면), 경향닷컴·구글·네이버·네이트·야후·하나포스 (2010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내지 않았고, 분양을 통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겨 흑자부도를 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경향닷컴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구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문 게재) • 네이버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문 게재, 부제소) • 네이트·다음·야후·하나포스 :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21~28 참조)]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닷컴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 구글 : 경향닷컴이 게재하는 정정보도문이 구글의 뉴스페이지를 통해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경향닷컴이 게재하는 정정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게시 • 네이트·다음 : 경향닷컴의 정정보도문이 뉴스홈에서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게시 • 야후·하나포스 : 경향닷컴의 정정보도문이 각각의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0일자 2면) • 경향닷컴·구글·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하나포스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2010경기조정32~33	이천에너지(주) 對 이천타임스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사실> 폐기물 소각 더 이상은 안 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2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폐기물소각장 추진을 위해 마을 주민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해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요구를 일부 받아들일 용의가 없지 않지만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다른 법적 요구를 포기하여야 한다.)

2010광주조정9	구례군 對 호남매일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구례군 부패사슬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8일자 1면)
신청인주장	구례군이 예산을 낭비하고 불법, 편법으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와 담합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1면)

2010서울조정375~377	김○○ 對 더데일리,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한 20대 입건』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378~379	김○○ 對 동아닷컴, 구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 은행경비원 덜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380~383	김○○ 對 BBS불교방송,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BS불교방송 : 「뉴스」 프로그램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23일 09:16) • 다음·드림위즈·파란 :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384~385	김○○ 對 네이트, 다음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 은행경비원 덜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취하(사유: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386~388	김○○ 對 네이트,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해청구)
조정대상	(1) 『애인카드 훔친 뒤 유희비 탕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2)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은행경비원 달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취하(사유: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389	김○○ 對 네이트 (손해청구)
조정대상	『애인카드 훔쳐 현금 인출』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취하(사유: 기사 삭제)

2010대전조정6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對 서천신문 (반론청구)
조정대상	(1) 『김양식 어민들, 조합장 물러나라』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30일자 2면) (2) 『똥물 뒤집어 쓴 서천군 수협』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8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김 양식 피해 어민들의 대책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했으나 현재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다.
처리결과	취하

2010대전조정7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對 서천신문 (반론청구)
조정대상	(1) 『수협 서천점 전세금 거품』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1면) (2) 『말로만 “다했다”는 서천군수협』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2면) (3) 『〈사설〉 서천군수협,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텐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2면) (4) 『수협조합장, 친인척 관련 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1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조합장 부인 소유의 건물로 이전한 것과 관련 배임의혹 등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건물의 위치가 좋아 이전했을 뿐이다.
처리결과	취하

2010대전조정8~9	김○○ 對 TJB-TV (반론 · 손해청구)
조정대상	「8뉴스」 프로그램 '이상한 버스정류장?'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24일 20:26)
신청인주장	신청인 소유 건물 앞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버스 정류장이 엉뚱한 곳에 설치된 이유에 대해

신청인주장	외국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론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 이행방법 : TJB 대전방송 「8시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표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8시뉴스」 프로그램 ‘버스 단말기 이전착수 /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2일 20:00) ※ 조정조서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 『버스 정류장 이전 관련 반론보도문』

2010경기조정34	손○○ 對 김포미래신문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김포노인복지회관 위탁 참여기관 자격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5일자 1면)
신청인주장	김포시노인회 전 회장인 신청인이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입찰에 은밀히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의 충분한 해명을 담아 인터뷰 형식으로 후속보도 게재)

2010경기조정35~36	정○○ 외 5인 對 김포미래신문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김포노인복지회관 위탁 참여기관 자격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5일자 1면)
신청인주장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입찰참여기관의 서류를 복지관 간부들이 대리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보도내용에 잘못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정정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경기조정37	1. 삼천리권선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 삼천리권선2차아파트 부녀회 對 중부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비대위 ‘수익금 정산내역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6일자 23면) (2) 『<취재파일 365> 입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윤영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7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이 윤영진들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방만한 운영에 참다못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 간에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권선 삼천리 2차아파트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6일자 2면)

2010서울조정390~391	이○○ 對 매일경제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고시학원 강사로 뛰는 行試 합격자』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3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행시에 합격하고도 고시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역대가 넘는 연봉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건강과 학업 때문에 임용을 포기했던 것이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392~407	이○○對 매경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고시학원 강사로 뛰는 行試 합격자』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행시에 합격하고도 고시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억대가 넘는 연봉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건강과 학업 때문에 임용을 포기했던 것이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경닷컴·구글·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드림위즈·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경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일간 게재, 제목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 표시, 게재 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정정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 구글·야후 : 매경닷컴이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반영하여 조정대상기사 및 정정보도문 검색 시 홈페이지 뉴스면에 노출되도록 함 • 네이버·네이트·다음 : 매경닷컴이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맨 코너에도 정정보도문 게재
이행결과	『[정정보도문] 고시학원 강사로 뛰는 行試 합격자』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2010서울조정408	문형배對 조선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우리법연구회장 “비밀단체 아니야 … 해체 안할 것”』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소속된 ‘우리법연구회’가 결성된 이후 회원명단이나 활동내용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정정청구 포기)
이행결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자 2면)

2010서울조정409~410	박윤석對 종합법률신문 (반론·손배청구)
조정대상	『4. 19 단체회장 수억 원 횡령죄로 고발 돼』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3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4.19 단체 회장으로 근무하며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고 보도했으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 게시, 부제소)
이행결과	『4. 19 단체 회장 공금횡령,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7면)

2010광주조정10~15	이○○對 인터넷 한국뉴스,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행정고시 합격하고도 유명학원행』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행사에 합격하고도 고시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억대가 넘는 연봉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건강과 학업 때문에 임용을 포기했던 것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국뉴스 :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보도를 게재할 수 있지만 손해 배상을 할 수는 없다.) • 드림위즈 · 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경 과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국뉴스 : 『‘행정고시 합격하고도 유명학원행’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8일자)

2010제주조정10~12	김○○ 對 시사제주,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여친 카드로 수백만원 인출... 은행경비원 달미』 제하의 기사 [시사제주 (2010년 2월 23일자 4면), 드림위즈 · 파란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전북조정4~5	(주)써미트 對 진안신문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부귀 골프장 허가권 취소요구』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진안군 부귀면 골프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유류대금 및 하청업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보도내용은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정정 및 손해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411~413	대안미용외과학회 對 KBS-2TV(411~412 정정 · 손해청구), KBS(413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비전문의 성형수술... 부작용 속출’ 제하의 보도 [KBS-2TV (2010년 2월 5일 08:00), KBSi (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도했으나, 불법이 아니며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고유 영역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대구조정1	이동관 對 경북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靑 “세종시 관련 대구 · 경북 언론논조 불만 많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구 · 경북지역 언론사들의 논조에 불만을 표하면서 ‘TK X들’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를 게재할 수는 있으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
경 과 사 항	『정정보도문... ‘이동관 수석, 저속한 표현했다’ 와전』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7일자 3면)

2010서울조정414~415	강○○對KBS - 1TV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아침마당」 프로그램 (2010년 3월 3일 08:25)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이름이 보도에서 언급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기각결정 (사유: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다.)

2010서울조정416~420	북정(주)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네이버, 네이트, 야후,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X새끼’ ‘XX년’... 너한테 안 팔아』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상품의 박스에 욕설이 적혀있어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29~38 참조)]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홈에 24시간 이상 게시,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에 이어서 게시 • 네이버·네이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만 코너인 ‘정정·반론 등 게재’ 란에 게시 • 야후·하나포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홈에 24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 표시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9일자)

2010대전조정10	신○○對 시사보령 (추후청구)
조정대상	『2억원 가로챈 목사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지인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2일간 추후보도문 제목을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 기사의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이어 게재
이행결과	『2억원 가로챈 목사구속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2010서울조정421~430	(사)무예24기보존회對 데일리안 (421~422 정정·손배청구), G (423 정정청구), 네이버 (424 정정청구), 네이트 (425 정정청구), 다음 (426 정정청구), 드림위즈 (427 정정청구), 야후 (428 정정청구), 파란 (429 정정청구), 하나포스 (430 정정청구)
조정대상	(1) 『경기도의 무형문화재 지정 심사 문제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8일자) (2) 『십팔기나? 24기나? <4>』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8일자)

조 정 대 상	(3) 『국가와 국민을 더 이상 속일 수는 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및 무에 '24기가 좌파정권의 개혁코드에 맞춰 급조된 것이며, '18기의 모조품'이라고 폄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일리안·고·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고문 게재, 부제소) • 네이버·네이트·드림위즈·야후·파란·하나포스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박기고문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일리안 : 신청인의 기고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게재, 초기화면 중앙목록에 3일간 게재, 제목 검색 시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해당 기고문을 링크시킴 • 고·다음 : 데일리안이 신청인의 기고문을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 뉴스면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함 • 네이버·네이트·드림위즈·야후·파란·하나포스 : 데일리안이 신청인의 기고문을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 뉴스면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431~435	안경경찰서對 내일신문, 인터넷 내일신문, 구글,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경찰강압 못이겨 허위자백' 무혐의 석방』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0년 2월 11일자 20면), 인터넷 내일신문·구글·네이버·네이트 (2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에서 구속 수사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석방된 것은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때문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신문·인터넷 내일신문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구글·네이버·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0년 3월 18일자 20면), 인터넷 내일신문·구글·네이버·네이트 (3월 17일자)]

2010광주조정16	이○○對 호남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양어장 물고기 다 죽이고 되레 명예훼손』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동종업자가 운영하는 인근 양어장의 물고기를 몰살시킨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양어장 물고기 다 죽이고 되레 명예훼손’ 후속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6일자 9면)

2010대구조정2	남○○對 포항MBC-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선상 결사 항전'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일 21:00)
신청인주장	최근 대개 불법 포획이 심각하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250만원)

2010전북조정6~8		이○○ 對 소통신문 (정정·반론·손배청구)
조정대상	『타지역의 비웃음 산 '익산문화재단'』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J신문화재단에서 무능력한 인물로 평가되었는데도 익산문화재단의 정책연구실장으로 선발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취하	

2010서울조정436~437		최○○ 對 도시재생신문 (추후·손배청구)
조정대상	『냉천동 종교 부지, 비리 종합선물세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재개발 지역의 사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신청 기간이 아닌데도 분양권을 받아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정대상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결과 혐의없음(일부 혐의없이 인정된 경우도 포함)이 인정된 경우 추후 보도	

2010서울조정438~439		최○○ 對 인터넷 도시재생신문 (추후·손배청구)
조정대상	『충정로 냉천구역 재개발, 종교 부지에 얽힌 비리 때문에 표류』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재개발 지역의 사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신청 기간이 아닌데도 분양권을 받아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2010서울조정436~437 조정성립 내용 참조)	

2010서울조정440~441		최○○ 對 데일리노컷뉴스 (추후·손배청구)
조정대상	『조합장 비리는 통과리레?』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재개발 지역의 사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신청 기간이 아닌데도 분양권을 받아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2010서울조정436~437 조정성립 내용 참조)	

2010서울조정442~449		최○○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조정대상	『비리로 얼룩진 재개발...줄줄이 올스톱』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재개발 지역의 사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신청 기간이 아닌데도 분양권을 받아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수사결과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신청인이 이를 문서로 통보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컷뉴스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박스기사를 게재하고,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네이트·다음 : 노컷뉴스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포함하여 송고하였을 경우 뉴스검색 화면에 노출

2010서울조정450~451	박○○對 KBS-2TV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두 살부터 키 크는 약 복용?' 제하의 보도 (2010년 1월 25일 08:20)
신청인주장	신청인 한의원을 몰래카메라로 취재하여 한의원의 치료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보도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게시된 VOD(다시보기) 및 스크립트의 일부 내용 삭제

2010제주조정13~14	차○○對 제주KBS-1TV (추후·손배청구)
조정대상	(1)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제왕절개 출산 도중 산모·태아 숨져'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17일 19:00) (2) 「뉴스9」 프로그램 '제왕절개 출산 도중 산모·태아 숨져'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17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와 태아가 의료과실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부검결과 사인은 불치병인 양수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 프로그램에서 추후보도문 방송,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추후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 자료화면임이 명시된 수술실 내부 전경을 사용하되, 이는 신청인 병원의 전경이 아니어야 함
이행결과	「뉴스라인」 프로그램 '제왕절개 출산 도중 산모·태아 숨져'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5일 11:40)

2010제주조정15~16	차○○對 제주의소리 (추후·손배청구)
조정대상	『제주 산부인과서 제왕절개 수술 받던 산모·신생아 사망』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와 태아가 의료과실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부검결과 사인은 불치병인 양수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목록에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행결과	『제주 모 산부인과 분만 중 산모 · 태아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4일자)
------	--

2010경남조정3	박○○ 외22인 對 뉴스앤거제 (정정청구)
조정대상	(1) 『대우노조 “연수원 부지매입 의혹 많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4일자) (2) 『대우노조 연수원 부지 건물신축 안되는 줄 알면서도 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우조선노조 전임 집행부가 건축이 불가능한 땅임을 알고도 연수원 부지로 매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행결과	『대우노조 연수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6일자)

2010서울조정452~454	이○○ 對 신동아 (정정·반론·손배청구)
조정대상	『“광화문 광장·세종문화회관 복마전” 오세훈 행보도 석연치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호 92~10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세종문화회관 사장 재직시 관련 공사를 지인에게 맡기고 친구 아들의 채용을 지시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해 보도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의 반론보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충북조정7	(주)파이온텍 對 충북일보 (반론청구)
조정대상	(1) 『오송 ‘1호 입주’ 파이온텍 사옥 건축대금 지급 마찰』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6일자 2면) (2) 『파이온텍 공사비 마찰 ‘진실게임’』 (2010년 2월 17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하청업체들에게 신축사옥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계약서 및 사채 주선 등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2010서울조정455~458	한○○ 對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그들만의 왕국’ 지자체 대해부] [3·끝] 감사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되고』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2월 8일자 A3면), 디지털조선일보 (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부천시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에 관급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거액을 챙겼고, 타인 명의로 조경업체를 운영하며 관급공사를 수주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수뢰혐의 부천시 전국장... 1심에서 무죄 판결』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3월 23일자 A12면, 디지털조선일보 (3월 23일자)]

2010서울조정459~462	전국철도노동조합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백기투항했던 철도노조 또 열차 세우나』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0년 3월 5일자 15면), 한경닷컴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가 대의위원회를 열어 3차 파업을 결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463, 493	고○○ 對 미디어스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한국화보’ 표지 2종으로 제작하다 딱걸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월간지를 발간하면서 이종 표지를 제작하고 취재원에게 잡지를 강매하거나 금품을 요구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손배청구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100만원,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일간 게재, 제목을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게재 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2010서울조정464	대한불교조계종 對 불교닷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아이티 참사’ 불교계 역할을 주목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전력공사의 아이티 지진 현장 의료지원단 공동 봉사 제안에 신청인 단체가 무응답이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런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조계종 보도와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2일자)

2010경기조정38	이○○ 對 OBS경인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경찰 25시』 프로그램 (2010년 3월 8일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어머니의 사체를 발굴하는 장면이 유족의 동의없이 보도되었고, 살아생전 신청인의 어머니의 사진이 유족의 동의없이 공개되어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중재액 100만원, 유감표명 (내용 : 2010경기중재1 참조)]
이 행 결 과	『경찰 25시』 프로그램 ‘고인 및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23:00)

2010서울조정465	서울특별시 對 경향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박홍규 칼럼] 무상급식은 인권이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30면)

신청인주장	서울시의 연간 예산 20조원 중에 무상급식 예산은 1원도 없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기고문 게재)
이행결과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없다』는 글에 대해』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9면)

2010서울조정466~467	신○○對 KBS-2TV, KBSi (매체별 손배청구)
조정대상	『무한지대극』 프로그램 '2010 벼룩시장속으로'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0일 19:20)
신청인주장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 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2TV: 조정성립 (내용: 조정액 200만원, 부제소) • KBSi: 조정성립 (내용: 유감표시, 부제소)

2010서울조정468~469	(주)홀랄라對 MBC-TV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불만제로』 프로그램 '수상한 치킨'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17일 18:5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튀김전용유에 트랜스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지 않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프로그램 중에 반론보도문 보도, 진행자 중 1인이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 처리
이행결과	『불만제로』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31일 18:50)

2010서울조정470~471	김○○對 SBS-TV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뉴스추적』 프로그램 '아파트 관리비 눈 먼 돈인가?'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0일 23:20)
신청인주장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신청인이 추천한 업체에 인테리어공사를 맡긴 후 해당 업체가 도주하는 등 각종 잡음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프로그램 말미에 자막 처리하여 반론보도문 보도,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행결과	『뉴스추적』 프로그램 '아파트 관리비 눈 먼 돈인가?'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31일 23:15)

2010대전조정11~12	1. (사)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 2. 리헌석對 중도일보 (정정·반론청구)
조정대상	『대전예총』 약칭 사용 제동』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합회가 한국예총 대전연합회가 사용하던 '대전예총'이라는 약칭을 사용해 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연합회는 '대예총'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대전예총” 약칭 사용 제동”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6면)

2010대전조정13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對 대전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6천원 짜리를 50만원에 납품』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밭수목원이 식물원을 조성하면서 수목의 가격을 부풀리고, 수목식재공사를 발주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선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472	(주)경기방송 對 신경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경기도, 특정방송사에 10억 지원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청취율이 낮은 지역라디오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예산을 지원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9일자 4면)

2010서울조정473~475	(주)경기방송 對 아시아일보,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도민홍보, 지방방송사 한 곳 만”』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0년 1월 12일자 6면), 네이트·다음 (1월 12일자)] (2) 『경기도 ‘청취율 낮은 지방방송사 특혜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0년 1월 19일자 15면), 네이트·다음 (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청취율이 낮은 지역라디오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예산을 지원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아시아일보·다음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네이트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0년 3월 19일자 6면), 다음 (3월 18일자)]

2010서울조정476~479	(주)경기방송 對 아시아투데이,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경기도, 지난해 1개 프로에 28억원 올해도 10억 협약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2) 『경기도, 특혜의혹 지방방송 내년 교통홍보협약 신중 검토』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청취율이 낮은 지역라디오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예산을 지원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아시아투데이·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네이트·야후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 아시아투데이·네이버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8일자)

2010서울조정480	(주)경기방송 對 현대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특정 라디오방송사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청취율이 낮은 지역라디오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예산을 지원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3일자 1면)

2010서울조정481~482	박○○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교사가 교무실서 교장·교감 폭행』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0년 3월 11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근무평정에 불만을 품고 교장과 교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483~484	박○○ 對 뉴시스, 다음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영광서 교교 현직 교사가 교장 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근무평정에 불만을 품고 교장과 교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485~487	박○○ 對 연합뉴스, 네이버, 야후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이런 하극상이.." 영광서 교사가 교장 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근무평정에 불만을 품고 교장과 교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2010서울조정488~489	박○○ 對 인터넷 와이티엔, 네이버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교장 등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근무평정에 불만을 품고 교장과 교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충북조정8	장○○ 對 청주MBC-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정부 비판글 올린 현직경찰관 파면' 제하의 보도 (2009년 10

조 정 대 상	월 26일 20:12) (2) 「6시 뉴스매거진」 프로그램 ‘정부비판’ 경찰간부 파면 ‘논란’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7일 18:35)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파면조치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위한 의견개진이었을 뿐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파면 ‘경찰간부’ 해임’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21:00)

2010광주조정17~23	박○○對 무등일보, 광남일보, 남도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신문, 일간 호남일보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일보 : 『영광서 교사가 교장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6면) • 광남일보 : 『평교사가 교감 · 교장 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19면) • 남도일보 : 『영광서 교고 교사가 교장 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8면) • 전남매일 : 『교사가 교감 · 교장 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7면) • 전남일보 : 『‘학교업무 갈등’ 교사가 교장 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6면) • 호남신문 : 『영광서 교고 현직교사 업무불만 ‘교장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7면) • 일간 호남일보 : 『영광서 고등학교 교사가 교장 폭행 하극상』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근무평정에 불만을 품고 교장과 교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일보 · 광남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남도일보 · 전남일보 · 호남신문 · 일간 호남일보 : 각 취하 • 전남매일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일보 : 『반론보도문 “평소에도 성실히 근무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6일자 6면) • 광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19면) • 전남매일 : 『폭력행사 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7면)

2010경기조정39	(주)경기방송對 경인종합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道, 청취율 낮은 지방방송사 특혜 ‘잡음’』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2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경인종합일보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09:00부터 1일간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인종합일보 (2010년 4월 2일자 1면),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2010년 4월 1일자)] ※ 조정조사상 정정보도문 제목 : 『“道, 지방 방송사에 특혜 ‘잡음’ ” 보도 바로잡습니다』

2010서울조정490	박근혜對 오마이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박정희와 김대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남겼나』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1일자)

신청인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정수장학회 등 엄청난 금전적 유산을 물려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1일 동안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바로잡습니다> 제하로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를 각 포털사로 송고
이행결과	『알려드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유산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6일자)

2010서울조정491	광명시 對 신아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광명, LED 간판 교체사업 실패?』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문제가 있는 기업에 간판시공을 맡기고,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행결과	(1)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8면) (2) 『『광명, LED 간판 교체사업 실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자 8면)

2010서울조정492	윤○○ 對 MBC-TV (손배청구)
조정대상	『경제매거진M』 프로그램 '걱정 없는 노후'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3일 08:20)
신청인주장	신청인 남편의 급여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게시된 VOD(다시보기) 중 [수입 ○○○만원] 부분에 관한 화면 및 음성 설명에 대하여 모자이크 및 음성 삭제 처리

2010서울조정494	(주)이즈피엠피 對 신동아 (정정청구)
조정대상	『'친이계 핵심' 정태근 의원 부인 회사 MB정권 들어 컨벤션 업계 1위 '대박'』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호 92~9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는 친이계 국회의원 부인의 회사로서 MB정권 들어 매출이 급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는 가능하나 정정보도는 불가하다.)
이행결과	『정태근 의원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호 106면)

2010제주조정17~20	양○○ 對 제주일보, 인터넷제주일보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조정대상	『제주대 직원 법인카드로 공금 횡령』 제하의 기사 [제주일보 (2009년 10월 26일자 4면), 인터넷 제주일보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인터넷 제주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부에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제주일보 (2010년 3월 29일자 2면), 인터넷 제주일보 (3월 29일자)]

2010제주조정21~24 양○○對 한라일보, 인터넷 한라일보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제주대 공금은 눈먼듯?』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09년 10월 27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10월 27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 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라일보 :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 시 추후 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0년 3월 29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3월 29일자)]

2010제주조정25~26 양○○對 제주MBC-TV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제주대 교직원이 공금횡령’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7일 07:20)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제주대 교직원이 공금횡령’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7일 21:40)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 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데스크(제주)> 및 <뉴스투데이(제주)> TV 프로그램과 <정오뉴스> 라디오 프로그램 말미에 추후보도문을 각 방송, 제목은 TV 방송화면 하단부에 자막 표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각 방송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하여 전달
이 행 결 과	• 제주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21:50)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30일 07:50) • 제주MBC-R : 「정오뉴스」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0일 12:10)

2010제주조정27~28 양○○對 제주KBS-1TV (추후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교직원이 ‘카드깡’ 으로 공금 횡령’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6일 19:30)

조정 대상	(2) 「뉴스9」 프로그램 '대학 직원 거액 공금횡령.. 대학은 '쉬쉬''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6일 21:30) (3)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9년 10월 27일 07:15)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 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저녁 네트워크(제주)> 및 <뉴스9(제주)> TV 프로그램과 <12시뉴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추후보도문을 각 방송, 제목은 TV 방송화면 하단부에 자막표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은 각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신청인에게 각 방송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하여 전달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KBS-1T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양모 씨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19:40) (2) 「뉴스9」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양모 씨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21:50) • 제주KBS-R : 「정오 종합뉴스」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양모 씨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0일 12:10)

2010제주조정29~30 양○○對 KC-TV (추후·손배청구)	
조정 대상	「KCTV종합뉴스」 프로그램 '교직원이 '카드깡''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6일 19:00, 21:30, 23:00)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 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KCTV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추후보도문을 3회 방송, 제목은 방송화면 하단부에 자막표시, 추후보도문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이행 결과	「KCTV종합뉴스」 프로그램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19:00, 21:30, 23:00)

2010제주조정31 양○○對 제주의소리 (추후청구)	
조정 대상	(1) 『제주대 직원, 법인카드 카드깡 2500만원 횡령』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2) 『간 큰 제주대 여직원, 카드깡·공금횡령 1억원 꿀꺽』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 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추후보도 게재 함의)
이행 결과	『검찰,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3일자)

2010제주조정32~33 양○○對 제주투데이 (추후·손배청구)	
조정 대상	『제주대 직원 법인카드로 공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9일자)

2010제주조정34~35	양○○對 미디어제주 (추후·손배청구)
조정대상	『제주대, 교직원 수천만원대 공금 횡령 적발』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합의)
이행결과	『[社告]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처분 밝혀져”』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2일자)

2010제주조정36~37	양○○對 시사제주 (추후·손배청구)
조정대상	『공금횡령 제주대 여직원 2명 확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에 1일 이상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행결과	『[정정보도] 제주대 여직원 공금횡령 ‘무혐의’로 밝혀져』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자)

2010제주조정38~39	양○○對 이슈제주 (추후·손배청구)
조정대상	『공금횡령 제주대 여직원 2명 확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조정성립(내용 :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에 1일 이상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행결과	『[정정보도] “제주대 직원 양모씨 공금횡령 무혐의로 밝혀져』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3일자)

2010경기조정40~41	박○○對 인터넷 와이티엔, 네이버 (매체별 반론청구)
조정대상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교장 등 폭행 물의』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근무평정에 불만을 품고 교장과 교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경기조정42~43	이○○ 對 성남뉴스넷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사기막골 또...골프연습장 추진』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성남시 산하단체 임원이며, 성남시가 신청인에게 선심성 행정을 보인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사기막골 골프연습장 추진』 보도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2일자)

2010서울조정495	김○○ 對 신동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前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박근혜 죽이기 TF팀 실제 있었다』제하의 기사 (2010년 4월호 82~91면)
신청인주장	국무원 고위간부였던 신청인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명박 후보측과 결탁, 박근혜 조사전담 TF팀의 배후에 있었고, 이로 인해 감찰조사등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는 가능하나 정정보도는 해줄 수 없다.)

2010서울조정496~499	양○○ 對 노컷뉴스, 연합뉴스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제주대 교직원 카드깡으로 공금 빼돌려』제하의 기사(2009년 10월 26일자) • 연합뉴스 : 『제주대 직원이 법인카드로 카드깡..거액 횡령』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 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p>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39~40 참조)]</p> <p>※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를 완료한 후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 기사의 하단부에 이어서 게시 • 연합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로 밝혀져』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 연합뉴스 :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2010서울조정500~508	1. 이○○, 2. 이□□ 對 뉴시스(500), 네이버(501, 504, 506), 네이트(502), 디지털조선일보(503), 연합뉴스(505), 다음(507), 이타임즈(508)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네이버·네이트 : 『경찰조사받고 귀가한 50대 음독 뒤 숨져』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이하 게재일자 같음) • 디지털조선일보·네이버 : 『청소년 성추행 혐의 50개, 죄책감에 음독자살』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네이버·다음·이타임즈 : 『청양서 경찰 조사받은 50대 음독』제하의 기사

조 정 대 상	• 이타임즈 : 『청양서 경찰 조사받은 50대 음독 사망』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고등학생인 신청인들이 이웃 50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들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509	(주)인어추 환 신이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광명, LED 간판 교체사업 실패?』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설치한 LED간판이 시공한지 6개월도 안돼 전구가 나가는 등 싸구려 물건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광명, LED 간판 교체사업 실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자 8면)

2010충북조정9~11	1. 이○○, 2. 이□□ 對 충청일보, 다음, 네이버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경찰 조사받은 50대 음독』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0년 3월 9일자 사회면), 다음·네이버 (3월 9일자)]
신청인주장	고등학생인 신청인들이 이웃 50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들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다.)

2010대전조정14~18	1. 이○○, 2. 이□□ 對 중도일보, 구글, 청양신문, 대전MBC-TV, TJB 대전방송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일보·구글 : 『청소년 성추행 혐의 50대 경찰조사 받고 음독 자살』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0년 3월 10일자 5면), 구글 (3월 10일자)] • 청양신문 : 『성추행혐의 50대 음독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5일자 경제사회면) • 대전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추행혐의 조사받은 50대 음독 사망'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9일 21:40) • TJB 대전방송 : 「TJB 8뉴스」 프로그램 '성추행 조사 50대 음독자살 기도'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9일 20:51)
신청인주장	고등학생인 신청인들이 이웃 50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들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다.)

2010경기조정44~45	과천시 對 과천저널, 과천문화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재건축·행정 낭비·기간지연·예산누수 막아야』 제하의 기사 [과천저널 (2010년 2월 22일자 1면), 과천문화신문 (2월 22일자 1면)]
신청인주장	서울시와 달리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모두 수립함으로써 재건축 관련 예산 누수, 기간소요 및 행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서울시의 일정지구역시 정비계획 수립 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510		1. 정태근, 2. 한○○對 신동아 (정정청구)
조정대상	『‘친이계 핵심’ 정태근의원 부인 회사, MB정권 들어 컨벤션업계 1위 ‘대박’』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호 92~99면)	
신청인주장	정태근 의원의 부인이 ‘이즈피엠피’라는 컨벤션 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정태근 의원 덕분에 업체가 급성장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신동아> ‘밀착취재’ 면에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 게재	
이행결과	『정태근의원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호 106면)	

2010서울조정511		기륭전자(주)對 인터넷 위클리경향 (정정청구)
조정대상	『[2010 연중기획] 비정규직 근로자는 ‘21세기 전태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기륭전자 노조’ 라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노조가 없으며, 노조조합원으로 보도된 박모 씨는 신청인회사 소속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기륭전자, “우리는 노조가 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2010서울조정512		정정길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정대상	『여권 수뇌부, 4대강에 맞선 천주교 성토』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3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인사들에 대해 ‘반대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한겨레닷컴에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 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해당 반론보도문 송고)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4월 6일자 2면), 한겨레닷컴 (4월 6일자)]	

2010경남조정4-5		최○○對 창원MBC-TV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이 많은 경남의 한 동네의원’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23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이 항생제 처방을 남용한다고 보도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결과 2009년 상반기 동일규모의원 평균보다 항생제 처방률이 낮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사과서신, 인터뷰) ※ 이행방법 : <뉴스데스크> 로컬 뉴스 프로그램 말미(스텝 스코롤이 나오기 전)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방송화면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자막으로 명기하고 조정대상방송화면이 상단 우측 박스 안에 계속 표시되도록 함, 정해진 기일까지 뉴스를 포함 한방송프로그램에 의학전문가의 인터뷰 형식으로 피신청인의 인터뷰를 10여초 이상내보낼 것	
이행결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항생제 오남용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9일 21:30)	

2010경남조정6~7		황철곤 對 창원KBS-1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광장」 프로그램 '거액 뇌물수수 황철곤 시장 측근 영장 청구'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2일 07:30) (2)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거액 수수 단체장 선거운동원 등 구속'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2일 19:20) (3) 「뉴스9」 프로그램 '거액 수수 단체장 선거운동원 등 구속'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2일 21:30)	
신청인주장	토석채취허가를 빌미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모씨가 마산시장으로 재직중인 신청인의 측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광장>과 <뉴스9> 프로그램 중간(스텝 스크롤이 나오긴 전이어야 함)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화면은 진행자를 비추는 동시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명기, 배경화면은 원 조정대상방송의 화면을 내보내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뉴스 화면 하단에 스크롤로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1) 「뉴스광장」 프로그램 '검찰, 황 시장 토석채취 사건과 관련없어'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9일 07:39)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검찰, 황 시장 토석채취 사건과 관련없어'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9일 21:30)	

2010경남조정8~9		황철곤 對 창원MBC-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황철곤 시장 측근 구속영장 청구'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1일 21:30)	
신청인주장	토석채취허가를 빌미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모씨가 마산시장으로 재직중인 신청인의 측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유감표명, 인터뷰,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로컬 뉴스 시작 후 3번째 꼭지 이내 아이템으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화면은 진행자를 비추는 동시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명기, 배경화면으로 원 조정대상방송 화면 중 부산지검 화면을 내보낼 것, 신청인이 원하는 시점에 뉴스를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에 피신청인의 인터뷰를 10초 이상, 2회 이상 내보낼 것, 구체적인 내용과 방송시기 등은 별도 합의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검찰, 황 시장 토석채취 사건과 관계없어'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12일 21:00)	

2010서울조정513~522		김○○ 對 CNBNEWS, 네이버, 네이트,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고등학생의 '장애인괴롭히기' 동영상 유포 '충격'..』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23~528		김○○ 對 KBS-1TV,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뉴스9」 프로그램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파문’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22일 22:10) • 다음·파란: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파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KBS-1TV를 제외하고 모두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29~538		김○○ 對 YTN,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논란’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23일 11:00) • 네이버·네이트·다음·파란: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39~544		김○○ 對 연합뉴스,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천안 모 고교 흡피 장애인 괴롭히는 동영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45~550		김○○ 對 공무원뉴스, 네이트,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속 고교생, 사과가 과연 진심일까?』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51~560		김○○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충남 교육청, 장애인 괴롭힌 학생 징계키로』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61~568		김○○ 對 뉴스엔,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담배피고 욕하고...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69~578	김○○ 對 뉴스천지,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79~586	김○○ 對 디시뉴스,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이번엔 장애인 괴롭히기?...잇단 10대 '막장 동영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87~596	김○○ 對 마이데일리,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40대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유포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597~606	김○○ 對 맥스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충격' 10대 청소년 '40대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파문』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07~612	김○○ 對 소비자만드는신문,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학생이 40대에 욕설"... '장애인괴롭히기' 동영상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13~620	김○○ 對 시사서울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막장 고등학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개념 나간 10대 학생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취하(사유: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21~628	김○○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파문 확산』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취하(사유: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29~636	김○○ 對 아주경제,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무개념 10대,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일파만파』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취하(사유: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37~644	김○○ 對 에이블뉴스, 네이버,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충격』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블뉴스·네이버·다음: 각취하(사유: 반론보도 게재) • 파란: 취하(사유: 기사 삭제)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블뉴스·네이버·다음: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645~654	김○○ 對 투데이코리아,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나이든 지적장애인 괴롭히기, ‘담배 강요’ 거부시 협박』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취하(사유: 기사 삭제)

2010부산조정9~14	김○○ 對 인터넷 부산일보, 네이버,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고등학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파장』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취하(사유: 기사 삭제)

2010부산조정15~18	김○○ 對 굿데이스포츠, 네이버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0대의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충격'』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기사 삭제)

2010대구조정3~4	박○○ 對 경도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구에도 교육비리가?』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고교 검도부 감독인 신청인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선수를 심하게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사유: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1면)

2010대전조정19~22	손○○ 對 대전일보, 네이트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 『대학병원 교수 자살 왜?』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자 1면) • 네이트: 『지역 대학병원 고위 보직교수 자살』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최근 진행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 조정성립 (사유: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100만원, 부제소) • 네이트: 조정성립 (사유: 대전일보가 게재하는 정정보도문은 전송시점부터 뉴스면에 1주일 동안 검색 가능하도록 함, 이후 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대전일보 (2010년 4월 23일자 2면), 네이트 (4월 28일자)]

2010경기조정46~55	김○○ 對 인터넷 경인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유포 '입시교육보다 인성교육 먼저...'』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락실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655~656, 660~675, 684~687	손○○ 對 동아닷컴, 아시아투데이닷컴, 연합뉴스,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디지털조선일보, 한겨레닷컴, 인터넷 한국일보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학병원 교수 자살 놓고 의료계 '술렁'』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최근 진행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이닷컴 : 기각결정 (사유 : 피신청인은 사건 보도에 있어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의 보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아시아투데이닷컴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연합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구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연합뉴스가 게재하는 정정보도문이 송부되는 즉시 뉴스면에 검색되도록 함,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구글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연합뉴스가 게재하는 정정보도문이 송부되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부제소) • 야후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연합뉴스가 게재하는 정정보도문이 송부되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부제소) • 디지틀 조선일보 · 한겨레닷컴 · 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사회면 상단 주요기사 목록에 동일 제목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에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 디지틀조선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최소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 정정보도문 및 조정대상기사 삭제 • 한겨레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 상단 기사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사회면 기사목록에 동일 제목을 박스로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인터넷 한국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사회면 상단 주요기사 목록에 동일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는 삭제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데이닷컴 :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2일자) • 연합뉴스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알림>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6일자) • 디지틀조선일보 : 『‘대학병원 자살교수 의약품 리베이트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 한겨레닷컴 :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9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알립니다]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9일자)
<p>2010서울조정657</p>	<p>손○○ 對 메디파나뉴스 (손배청구)</p>
<p>조 정 대 상</p>	<p>『지방C대학병원 과장 리베이트 조사후 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일자)</p>
<p>신청인주장</p>	<p>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최근 진행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처 리 결 과	기각 결정 (사유 :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는 원 조정대상기사가 부재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메일을 통한 피신청인의 기사배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라고 볼 수 없다.)
---------	--

2010서울조정658~659	손○○對 City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학병원교수 자살에 “술렁”』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최근 진행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2일자)

2010서울조정676~683	손○○對 코메디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학병원 교수 자살, 의료계 ‘침울’』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최근 진행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메디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100만원, 부제소) • 구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코메디닷컴이 정정보도문을 웹상에 전송한 시점부터 구글의 뉴스페이지에서 해당 정정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송부되는 즉시 뉴스면에 검색되도록 함)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구글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네이버·네이트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메디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최소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네이트 : 코메디닷컴이 정정보도문을 송출한 시점부터 뉴스섹션에서 해당 정정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바로 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2010서울조정688~691	손○○對 이뉴스투데이,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전지역 대학병원 교수, 자살 시도』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 교수의 자살이 최근 진행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뉴스투데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100만원, 부제소)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뉴스투데이 : 홈페이지 종합면 목록에 5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정보도문 삭제, 4월 16일까지 조정대상기사 및 관련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대학병원 교수 자살’ 기사 관련 바로 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6일자)

2010서울조정692		오○○對MBC-TV (정정청구)
조정대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아기띠 ‘베이비 슬링’, 질식사 조심!’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6일 21:00)	
신청인주장	미국에서 베이비슬링(서양식 아기 포대기) 제품에 문제가 있어 대규모 리콜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신청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방송해 피해를 당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신청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프로그램을 신청인과 협의하여 지정기일 혹은 피신청인의 파업 종료시 종료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중 빠른 시일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부 중 1분 30초 상당으로 방송	
이행결과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베이비 슬링’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14일 07:00)	

2010서울조정693~695		송○○對뉴스,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검찰,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 ‘검찰,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696~697		송○○對 공무원뉴스,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국내 최대 상조회사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국내 최대 상조회사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698~699		송○○對 뉴데일리,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보람상조, 100억원 대 횡령 ‘덜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반론보도 게재 및 기사수정)	
이행결과	(1) 『의정부 보람병원 “보람상조 계열사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 『보람상조, 100억원 대 횡령 ‘덜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00~702		송○○對 뉴스웨이,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檢 ‘100억대 횡령혐의’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신청인주장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웨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네이버·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웨이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 네이버·다음 : 뉴스웨이가 정정보도문을 인터넷에 송출한 시점부터 뉴스섹션에서 해당 정정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9일자)

2010서울조정703~707	송○○ 對 뉴스한국닷컴, 네이트, 독서신문아이,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100억 횡령 혐의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한국닷컴·네이트 : 조정대상보도 하단 『바로잡습니다』 ‘검찰, ‘보람상조’ 압수수색, 고객 돈 빼돌린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 독서신문아이·네이버·다음 :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바로잡습니다』 ‘검찰, 보람상조 ‘압수 수색, 고객 돈 빼돌린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7일자)

2010서울조정708~711	송○○ 對 마이데일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보람상조’ 압수수색, 고객 돈 빼돌린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검찰, ‘보람상조’ 압수수색, 고객 돈 빼돌린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12~715	송○○ 對 민중의소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보람상조 압수수색..100억원대 횡령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검찰, 보람상조 압수수색..100억원대 횡령 혐의’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16~717	송○○ 對 뉴스엔뉴스,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국내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검찰, 국내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7일자)

2010서울조정718~719	송○○ 對 브레이크뉴스,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횡령 압수수색..”올 것이 왔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보람상조, 횡령 압수수색..”올 것이 왔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20~723	송○○ 對 소비자간드는신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압수수색, 100억원대 횡령 혐의 ‘충격’』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24~727	송○○ 對 CNBNEWS,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국내 최대 상조회사 보람상조 그룹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검찰, 국내 최대 상조회사 보람상조 그룹 압수수색’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6일자)

2010서울조정728~729	송○○ 對 와우넷, 네이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대표, 100억원대 횡령혐의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보람상조 대표, 100억원대 횡령혐의 압수수색”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30	송○○ 對 컨슈머타임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고객돈 100억대 횡령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보람상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31	송○○ 對 쿠키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내 최대 상호회사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보람상조 대표, 100억원대 횡령혐의 압수수색’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32~735	송○○ 對 투데이코리아,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100억 원 빼돌린 혐의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보람상조 압수수색 관련 계열사’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36~738	송○○ 對 폴리뉴스,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100억원대’ 횡령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보람상조 압수수색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일자)

2010서울조정739~741	송○○ 對 프린티어타임스,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檢,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 100억대 고객 돈 횡령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의정부 보람병원’ 은 보람상조 계열사가 아닙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6일자)

2010서울조정742~744	송○○ 對 프레시안,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100억 원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스시안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네이버 · 다음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스시안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 네이버 : 프레스시안이 송출하는 정정보도문을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게시 • 다음 : 프레스시안이 송출하는 정정보도문을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행 결과	『바로잡습니다 <보람상조, 100억 원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제하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6일자)

2010서울조정745	송○○ 對 RNN (정정청구)
조정 대상	『부산지검, 보람상조 그룹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취하

2010서울조정746~749	송○○ 對 매경닷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 대상	『검찰,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100억대 횡령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행 결과	『‘검찰,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100억대 횡령 혐의’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6일자)

2010서울조정750~753	송○○ 對 서울경제닷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 대상	『보람상조 100억대 횡령 혐의 검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제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제닷컴 : 홈페이지 알리면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행 결과	『[알립니다] ‘보람상조 100억대 횡령혐의 압수수색’ 기사』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 제목 : 『‘보람상조 100억대 횡령혐의 검찰 압수수색’ 정정보도』

2010서울조정754~757	송○○對 서울파이낸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檢, 보람상조 압수수색...자칭 '1위'의 이면은?』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檢, 보람상조 압수수색...자칭 '1위'의 이면은?』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58, 774~776	송○○對 세계닷컴, 디지털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산지검,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닷컴 · 디지털조선일보: 각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각 취하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닷컴: 『[바로잡습니다] 3월 30일 연합뉴스 '부산지검,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 디지털조선일보: 『'부산지검,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6일자)

2010서울조정759~761	송○○對 스포츠칸,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뽀뽀한 두 얼굴'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보람상조, '뽀뽀한 두 얼굴'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62~765	송○○對 인터넷 시민일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보람상조 압수수색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66~769	송○○對 시사서울닷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100억 대 횡령 의혹 충격』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서울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네이버·다음·네이트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서울닷컴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 네이버 : 시사서울닷컴이 송출하는 정정보도문을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게시 • 다음·네이트 : 시사서울닷컴이 송출하는 정정보도문을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의정부 보람병원, 보람상조와 무관』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6일자)

2010서울조정770~772	송○○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00억원 꿀깍’ 보람상조 압수수색』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100억원 꿀깍’ 보람상조 압수수색』정정보도』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서울조정773, 781	송○○ 對 SPPLUS, 한겨레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국내 최대 상호회사 보람상조 압수수색』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PLUS : 조정대상보도 하단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 한겨레닷컴 : 조정대상보도 하단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2010서울조정777~780	송○○ 對 파이낸셜뉴스닷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산지검,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그룹 부회장 체포』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음』 “보람병원, 보람상조와 무관”』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82~785	송○○ 對 한경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람상조 압수수색...100억원대 횡령 혐의』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보람상조 압수수색...100억원대 횡령 혐의』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서울조정786~789	송○○對 헤럴드경제닷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내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100억대 빼돌려』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호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의정부 보람병원 "보람상조 계열사 아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경남조정10~11	오○○對 남해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자활센터노조, 화방사 주지 불법 주장』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2일자 10면)
신청인주장	화방사 주지인 신청인이 미필적 고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자활센터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유감표명, 후속기사, 부제소) ※ 이행방법 : 화방사가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들의 설립취지, 설립시기, 시설 및 사업계획 등을 담은 기사를 1,000자 분량 이상으로 게재, 신청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검찰 처리 결과 및 자활센터노조에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검찰 처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뒤 보도
이 행 결 과	『화방사 주지 관련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3일자 10면)

2010경남조정12~13	1. 창녕군, 2. 김충식對 창녕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한나라당 지방재정 파탄 현 단체장 공천 배제』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자 1면)
신청인주장	창녕군이 지방재정 파탄 사례인 것처럼 보도하고 이로 인해 창녕군수가 공천에서 배제 될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경남조정14	하성식對 함안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결국 이런 일이...선거가 사람 잡네"』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1면) (2) 『안갑준·하성식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가져』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3면) (3) 『함안지역 불법·타락선거 '우려' 표명』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4면) (4) 『<데스크 칼럼> 개도 돈도 물고 다니는 '이 더러운 선거'』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4일자 11면)
신청인주장	40대 여인의 음독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군수후보자가 불법선거자금을 살포한 결과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일부 삭제, 사과공문 발송, 부제소)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중 1면 기사 및 11면 칼럼을 해당 서버에서 삭제, 동기사가 게재된 각종 포털 블로그 및 개인 홈페이지 등에서 게시물 삭제
이 행 결 과	『'선거가 사람잡네'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1면)
2010충북조정12 이○○對 CJB청주방송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CJB 종합뉴스』 프로그램 '이웃끼리 고소고발'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3일 20:25)
신청인주장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자신의 땅이라며 트랙터로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790~795 육○○對 매경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최진영 자살로 본 연예인 '자살 일지』』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9일자)
신청인주장	고 김성재가 호텔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경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야후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796~799 육○○對 투데이코리아,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우리 곁을 떠난 스타들, "그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9일자)
신청인주장	고 김성재가 호텔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데이코리아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및 기사수정)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및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듀스故』 김성재 관련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2010서울조정800~804 육○○對 TV Daily, 네이버, 네이트,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연예인 잇단 자살, 고 최진영이 막 내리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고 김성재가 호텔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기사수정)
2010부산조정19~22 승○○對 굿데이스포츠,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내 최대의 상조회사, 보람상조 전격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 상조회사의 계열사 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굿데이스포츠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네이트 : 취하
이 행 결 과	• 굿데이스포츠 · 네이버 · 다음 : 『보람상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일자)

2010부산조정23~24	송○○ 對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산지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3월 30일자 ‘부산지검, 보람상조 압수수색’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일자)

2010제주조정40~42	송○○ 對 인터넷 제주일보,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산지검,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부산지검,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제주조정43~44	송○○ 對 제주투데이,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보람상조 압수수색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2010경남조정15~16	1. (주)풍양에스앤티, 2. 김○○ 對 한남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풍양카페리 선사 · 장목면 주민 마찰』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4일자 4면) (2) 『풍양카페리호 허가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9일자 4면) (3) 『허가관청이 업체 두둔 ‘특혜 시비’』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6일자 1면) (4) 『마산해양항만청, (주)풍향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7일자 1면) (5) 『풍양카페리 허가놓고 전방위 로비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1면) (6) 『풍양카페리 전방위 로비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5일자 4면) (7) 『풍양카페리호 복마전 관리감독 부서 뒷걸음』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4면) (8) 『통영 해경, 풍양 전격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3일자 1면) (9) 『해경 풍양카페리 불법운항 진술확보』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25일자 4면)
신청인주장	진해-거제간 카훼리호를 운항중인 신청인이 관청에 불법로비를 하고 특혜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삭제, 사과공문, PR 보도, 추가게재 중단 합의, 부제소) ※ 이행방법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탭 헤드라인)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홈페이지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및 유사 보도 등을 해당 서버에서 삭제

이행결과	『풍양 카페리 관련 정정보도문 특혜 및 로비 의혹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9일자 1면, 4월 30일자 1면)
2010경기조정56~58	송○○ 對 인터넷 경인일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검찰, 국내 최대 상조회사 보람상조 압수수색..100억원대 고객 돈 횡령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의정부 보람병원 “보람상조 계열사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일자)
2010경기조정59~62	송○○ 對 인터넷 와이티엔,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검찰, 보람상조 압수수색 실시』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와이티엔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와이티엔 : 『[정정보도] ‘검찰 보람상조 압수수색 실시’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경기조정63~64	송○○ 對 인터넷 일간경기,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고객돈 100억대 횡령 보람상조 검찰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정정보도] 보람병원, 보람상조 계열사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2010대구조정5	송○○ 對 인터넷 매일신문 (정정청구)
조정대상	『‘보람상조 ‘100억대 고객 돈 횡령 혐의 ‘압수수색 ‘』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 상조회사의 계열사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경남조정17~18	(주)The 함안신문 對 함안뉴스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2010년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 - 출마의 변』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4면)
신청인주장	함안뉴스에서 자사에 게재된 모 출마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그대로 도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명, 부제소)

2010경남조정19~22	박완수 對 인터넷 경남여성신문,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단독] 박완수 시장 뇌물수수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장인 신청인이 4년전에 뇌물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남여성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삭제, 추가 게재 중단 합의, 부제소) • 다음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삭제, 검색 차단,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남여성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탑 헤드라인)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7일이상 게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홈페이지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및 유사 보도 등을 해당 서버에서 삭제 • 다음 : 인터넷 경남여성신문의 정정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 및 아웃링크 되도록 조치, 뉴스 및 기타 게시판에서 검색되는 조정대상기사 및 유사 보도 삭제, 관련어 검색 차단, 부제소)
이 행 결 과	『[社告] 박완수 시장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2010서울조정805	(사)대한의사협회 對 한국경제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올해만 2조원 적자..."건보료 대폭인상 '군불때기'』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6일자 14면)
신청인주장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부담청구 조사대상을 전체 병원과 약국으로 확대한다면 환수금액이 지금보다 10배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한경닷컴에 정정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 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정정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 : 『알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9일자 15면) • 한경닷컴 : 『알림』 '올해만 2조원 적자...건보료 대폭인상 군불때기' 기사 오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9일자)

2010대전조정23	군인공제회 對 금산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금산군 미온적 대처로 막대한 재정손실 초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폐수처리사업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금산군과의 협약서가 무효가 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계약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산군 미온적 대처로 막대한 재정 손실 초래?'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2일자 1면)

2010서울조정806	(주)M전주방송 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올림마당> 지역언론, '정부 나팔수' 되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일자 1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김택곤 사장 연임을 위해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 기고문은 언론중재법상의 조정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라고 하기 어렵다.)

2010대전조정24	이○○ 對 TJB-TV (징정청구)
조정 대상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가정불화 60대 찾김에 택시 불질러'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11일 07:55)
신청인주장	택시 운전사인 신청인이 자기 택시에 불을 지른 것이 가정불화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화면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표시,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이행 결과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7일 07:30)

2010전북조정9	신○○ 對 전북일보 (손배청구)
조정 대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멍'』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9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라북도 문화재인 '귀래정'에 들어가 족보 등을 절도한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정보도문을 이미 게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

2010서울조정807~808	1.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2. 김○○ 對 일요저널 (징정 · 손배청구)
조정 대상	『김○○ 중앙회장 측 A씨 '돈 선거' 양심선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4일자 2~3면)
신청인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신청인이 선거서 협회 요직을 빌미로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취하

2010서울조정809~812	강남구 對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매체별 징정 · 반론청구)
조정 대상	(1) 『형렴혐의 수배 중 자살기도한 강남구청 前 인사팀장, 구청장에 인사비리 보고했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3월 22일자 A12면), 디지털조선일보 (3월 22일자)] (2) 『강남구청, '4년간 인사' 자체감사 착수』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3월 23일자 A12면), 디지털조선일보 (3월 23일자)] (3) 『人事비리 의혹 강남구청, 사건 축소에만 골몰』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3월 24일자 A12면), 디지털조선일보 (3월 24일자)] (4) 『강남구청 뭔가 쟁기기에... '인사비리 폭로 자술서' 주요내용은 삭제 후 공개』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3월 25일자 A14면), 디지털조선일보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강남구청 인사팀장이 인사비리를 폭로한 자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으나, 자술서는 무단결근 사유에 관한 것일뿐 인사비리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디지털조선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사회면 상단 주요기사 목록에 동일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 후 피신청인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5월 5일자 A2면), 디지털조선일보 (5월 5일자)]

2010전북조정10	완주군 對 완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임군수 기자회견 왜?』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완주군이 '완주군 소식지'를 신문형태로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배달되도록 하면서 지역신문 에는 광고를 주지 않고 있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2면)

2010경남조정23~24	거창3.1정신계승발전위원회 對 경서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경서평론] 가조 3.1문화제 유감』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5일자 3면)
신청인주장	거창 3.1 문화제가 3.1정신을 망각한 채 술먹고 노래부르는 행사로 전락해 국비를 탕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사과 공문, 부제소)
이 행 결 과	『가조 3.1문화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3면)

2010서울조정813~8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매일경제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민노총 “쇠파이프 투쟁 설 땅 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자 A31면) (2) 『[사설] 민노총 쇠파이프 버리겠다'는 약속 꼭 지키길』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6일자 A3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쇠파이프를 버리겠다', '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함의)
이 행 결 과	『고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6일자 A30면)

2010서울조정815~8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조선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민노총 위원장 “쇠파이프 버리겠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자 A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쇠파이프를 버리겠다', '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 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9일자 A14면)

2010서울조정817~8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중앙일보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1) 『민노총 쇠파이프 버리겠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자 1면) (2) 『[사설] ‘쇠파이프를 버리겠다’는 민주노총의 다짐』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6일자 3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쇠파이프를 버리겠다’, ‘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9일자 24면)	

2010경남조정25~26		배○○ 對 더함인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마산원협, 조합장 취임후 사업 크게 성장』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4면)	
신청인주장	전직 원예농협조합장인 신청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3500cc 체어맨을 타고 다녔고 유류대를 월 150만원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게재, 유감 표명, 부제소)	
이행결과	『마산원협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3일자 4면)	

2010서울조정819~8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한국경제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1) 『민노총 “우리 사회의 천덕꾸러기…온건해져야”』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5일자 A1면) (2) 『[오피니언] ‘붉은띠 풀겠다’는 노동운동 새바람, 기대해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6일자 A3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쇠파이프를 버리겠다’, ‘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821~824		(주)산청 對 119매거진, 119매거진닷컴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의혹투성이, 소방안전장갑』 제하의 기사 [119매거진 (2010년 3월호 12~17면), 119매거진닷컴 (3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하여 공급한 소방안전장갑이 물이 줄줄이 새어 들어가고 KF인정을 받은 구조와 달라 치명결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119매거진닷컴: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 119매거진: 『‘의혹투성이 소방안전장갑’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호 9면) • 119매거진닷컴: 조정대상보도 하단 『‘의혹투성이 소방안전장갑’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2010서울조정825~829	육○○對 뉴스엔,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연예인 잇단 자살에 의혹만 증폭』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1일자)
신청인주장	김성재가 호텔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기사수정)

2010서울조정830	임○○對 세계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언어폭력’ 말썽』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6일자 9면)
신청인주장	국립극장 극장장인 신청인이 뒤풀이에서 여자단원들을 옆자리에 앉히고 폭탄주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9면)

2010서울조정831	배○○對 세계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언어폭력’ 말썽』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6일자 9면)
신청인주장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인 신청인이 단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오디션에서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9면)

2010서울조정832~836	기륭전자(주)對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기륭전자여성노조원 “경찰이 성추행”』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신청인주장	기륭전자 노조원이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노조가 없으며, 보도에 언급된 박모 씨는 신청인회사 소속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닷컴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 : 각 취하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닷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24시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그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에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

2010대전조정25	민주당홍성군정당선거사무소對 홍성신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홍성 5+4 논의 결론 없이 끝나』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5일자 5면)
신청인주장	홍성군내 5개 야당이 가진 회동에서 민주당이 후보선출방식과 관련하여 나머지 4당과 입장을

신청인주장	달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합의)
이행 결과	『"당 떴고 여론조사하자" vs "후보자질 검증 토론회 후 여론조사하자"』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3일자 5면)

2010서울조정837~838	나승렬 對 한국경제 (정정·손배청구)
조정 대상	『마지막 노조독점권 깬 동방 나승렬 사장의 '독심'』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A1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울산항운노조와 체결한 '항운노조 상용화 협상' 이 사측의 일방적인 의지로 체결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행 결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0년 5월 13일자 A16면), 한경닷컴 (2010년 5월 12일자)]

2010서울조정839~840	(유)와이에스산업 對 인터넷 환경일보 (정정·손배청구)
조정 대상	(1) 『전주환경청 폐변압기 PCBs 처리업 인허가 변칙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0일자) (2) 『폐변압기 처리업 인허가 과정 검은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변칙, 편법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2,000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토대로한 사실보도이므로 정정 및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일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게 함, 이 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 뒤 조정대상기사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2010경기조정65	안산시민시장비상대책위원회 對 우먼앤피플 (정정청구)
조정 대상	『주상복합 재건축 사실상 물 건너가』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안산시민시장의 주상복합 재건축이 사실상 포기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을 3일간 게재, 이후에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
이행 결과	『안산시민시장 주상복합재건축 용역중단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1면)

2010서울조정841	UDT동지회 對 KBS-1TV (반론청구)
조정 대상	「뉴스9」 프로그램 '다른 곳에서 숨졌다'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7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소속 대원이 고 한주호 준위와 함께 수색작업을 벌인 곳이 침몰된 천안함의 함수 부근이 아닌 제3의 지점인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KBS 뉴스>(09:00)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부에 자막 게시
이 행 결 과	「KBS 뉴스」 프로그램 'UDT동지회 "고 한주호 준위 함수에서 사망"'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8일 09:40)

2010전북조정11	정○○對 새전북신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공동구매업체 선정 접대 의혹』 프로그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6면)
신청인주장	군산 S아파트 입주자 온라인카페 운영자인 신청인이 공동구매 업체선정에 관여해 업자로 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뉴스/사회 섹션에 반론보도 문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 본문과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6일자 6면)

2010서울조정842~843	1.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3. 대한비과학회 對 KBS-2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치과 · 이비인후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5일 08:00) (2) 「뉴스타임」 프로그램 '이비인후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제하의 보도 (2010년 2월 5일 20:00)
신청인주장	이비인후과 의사를 비롯한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문을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 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 처리
이 행 결 과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7일 08:55)

2010부산조정25~26	조○○對 주간KOREAN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사하신문 발행인 코피터졌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1면) (2) 『무등록 사이버언론과 기자를 몰아내자!』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무등록 사이버 언론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더 이상 기사를 게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나, 정정 및 손배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2010대구조정6	김형렬 對 연합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대구지검, 수뢰혐의 수성구청장 소환조사』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투자에 따른 수익배당금을 받았고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인터넷 기사 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고침> 지방(대구지검, 수뢰혐의 수성구청장..)』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3일자)

2010대구조정7	김형렬 對 인터넷 영남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투자에 따른 수익배당금을 받았고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부산조정27~28	김○○ 對 주간KOREAN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사하신문 발행인 코피터졌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고 본지 발행인에게 3주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2010부산조정29~30	김○○ 對 주간한국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다대경제발전협의회, 어떤 단체인가?』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다대경제발전협의회가 상가번영회의 성격을 벗어나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2010경기조정66~67	이경재 對 경인열린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이경재 국회의원, 인천시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제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1면) (2) 『이경재 의원은 6·2 지방선거 강화군수 후보 결정 늦춰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2면) (3) 『[데스크칼럼] 안영수 후보 탈당!!』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3면) (4) 『[사설] '공천현금' 메뚜기도 한 철 이라고?!』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나라당 인천시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심사와 신청인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경인열린신문 인터넷판 신문 메인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7일간 게시,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이행결과	『<정정합니다> ‘이경재 국회의원 및 한나라당 공천심사 보도’ 관련, ‘이경재 국회의원 공천헌금 사실 아니다’, ‘검찰, 보좌관에 무혐의 처분’, ‘당보, 국회의원과 한나라당에 사과와 뜻’』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1면)
------	---

2010충북조정13~15	이○○ 對 충청타임즈 (정정·반론·손배청구)
조정대상	『“현장검증” vs “영업방해”』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3면)
신청인주장	기자인 신청인이 괴산군수와 보건소 직원들의 회식자리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업주 및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현장검증’ vs ‘영업방해’ 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9일자 4면)

2010경남조정27~28	1. 함안군, 2. 조영규 對 더함인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기숙사 운영지원비 위화감 조성』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1일자 1면)
신청인주장	함안군이 군수의 모교에만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학교가 지난 2008년 교과부 1단계 기숙형 고교 중 하나로 선정되어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함안군, ‘특정학교 특혜 의혹 사실과 달라’』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3일자 1면)

2010서울조정844~847	전○○ 對 서울e조은뉴스,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속보] 창원시 관계자, 뇌물수수 의혹 보도기자 협박』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 고위 관계자들이 기자에게 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848	김○○ 對 플리스타임즈 (손배청구)
조정대상	『[대전중부경찰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절취한 공익근무요원 등 검거』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증인지대검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장물취득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200만원 지급)

2010경남조정29~30	조영규 對 경남매일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함안군수 금품제공 혐의 수사』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9일자 6면)
신청인주장	함안군수 선거에 출마한 H씨의 금품살포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보도에 ‘함안군수 금품제공 혐의수사’라고 제목을 달아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공문 발송, 부제소)

2010전북조정12~13		박○○ 對 뉴시스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6·2지방선거』 민주당 전주완산 여성공천 '분란'』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전주시의원 예비후보인 신청인에게 횡령혐의 등이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확인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게재, 후속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전국/전북 섹션에 일정기간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과 연결되도록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선거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인의 인터넷 기사게재	
이행결과	(1) 『[정정보도문] 민주당 전주완산 여성공천 분란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9일자) (2) 『6·2지방선거』 민 박원희 기초의원 후보 "여성정치인 관심 가져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일자)	

2010서울조정849~850		(사)하늘마음회 對 SBS-TV (정정·반론청구)
조정대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대해부 H정신수련원 사건의 진실-2부 정신수련원인가 종교 집단인가' 제하의 보도 (2010년 1월 23일 23:10)	
신청인주장	신청인 수련원 원장이 살인교사 의심을 받고 있으며, 자신을 믿어야 죽지 않는다며 수련원생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 등은 원 보도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2010부산조정31		1. (주)국제종합토건, 2. 김성철 對 국제신문 (반론청구)
조정대상	『김성철 국제종합토건 회장 회삿돈 30억원 빼돌린 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0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7일자 8면)	

2010부산조정32		1. (주)국제종합토건, 2. 김성철 對 KNN (반론청구)
조정대상	「KNN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국제종합토건 채권단 김성철 회장 고발'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0일 07:49)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	
이행결과	「KNN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국제종합토건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7일 07:40)	

2010서울조정851~862	(주)엠오씨 對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개원가 컨설팅 공갈협박 난무(?)』, 『초보개원의 '긴장』』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병원 개원 컨설팅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과다한 컨설팅 비용을 청구한 후 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면 개원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컬투데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 및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네이트·다음·파란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야후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컬투데이 : 조정대상기사 제목 수정,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 게재, 향후 신청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수사결과 혐의없음이 인정된 경우 추후 보도 게재, 고소사건 종결 후 7일 이내 결정문 또는 판결문 사본을 기사로 게재 • 네이버·네이트·다음·파란 : 메디컬투데이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수정한 후 반론 보도문을 포함한 기사를 송고하였을 경우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게재,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컬투데이·네이버·네이트·다음 : 『[반론보도]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2일자) • 메디컬투데이·야후 : 『개원가 컨설팅 관련, 초보개원의 긴장』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8일자)

2010경기조정68	이○○ 외 9인 對 안산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취소된 거리극축제 준비부터 '뼈격』』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1면) (2) 『행사 코 앞에 두고도 우왕좌왕, 첫 단추 얽히고 설켜 '예견된 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주관하는 안산거리극축제의 취소 원인이 축제 준비과정 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경기조정69	이○○ 외 9인 對 우리안산넷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안산거리극축제 취소 '천안함' 때문만은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주관하는 안산거리극축제의 취소 원인이 축제 준비과정 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행방법 :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을 7일간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보이도록 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대구조정8~11	학교법인 성덕학원 (성덕대학) 對 KBS-1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모 전문대 학위장사'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0일 21:00) (2) 『뉴스라인』 프로그램 '모 전문대 학위장사'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0일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인가되지 않은 교회 강의실을 분교처럼 사용하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졸업장을 주는 등 학위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조정대상보도는 일부 과장된 면이 있을지 모르나 진실한 보도이다.)

2010서울조정863~864 세종과학고등학교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무섭고 괴로운 어느 과학고』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4월 29일자 11면), 경향닷컴 (4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실시하고, 자율학습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을 교실로 쫓아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경향닷컴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확인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5월 12일자 13면), 경향닷컴 (5월 11일자)]

2010경남조정31~32 박○○ 對 인터넷 경남여성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1) 『뇌물수수 핵심인물, 구체적 진술』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6일자) (2) 『황철곤 후보측 “뇌물수수” 녹취록 공개』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6일자) (3) 『황철곤 여론조사 경선 중단 요구』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7일자) (4) 『창원시장선거 ‘뇌물의혹’ 폭로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5) 『[발행인 칼럼] 푸른 5월이 붉은 5월로 변하지 않도록』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5일자) (6) 『[외부기고문] 도둑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7일자) (7) 『[외부기고문] 천안함 침몰과 창원함 선장』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7일자) (8) 『[社告] <독자님의 걸음으로 다시 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9일자)
신청인주장	황철곤 예비후보측이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청탁뇌물수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집중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 삭제, 조정액 1,0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핵심당사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기사이고, 외부기고문의 경우 “본사의 논지와 다를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음에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2), (6), (7)을 결정문이 송달되는 시점부터 36시간 이내에 홈페이지 및 해당서버에서 모두 삭제

2010경남조정33~34 박○○ 對 다음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1) 『뇌물수수 핵심인물, 구체적 진술』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6일자) (2) 『황철곤 후보측 “뇌물수수” 녹취록 공개』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6일자) (3) 『창원시장선거 ‘뇌물의혹’ 폭로전 얼룩』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황철근 예비후보측이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청탁뇌물수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집중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및 매개 중단, 부제소) ※ 이행방법 : 다음의 뉴스섹션 기사 및 포털 내 기타 게시글에서 경남여성신문의 디링크 기사 매개 중단, 기존 기사 삭제, 경남여성신문의 디링크 기사가 기타 게시글에서 매개 또는 제공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통지하고 피신청인이 24시간 이내에 삭제)

2010경남조정35~36	하○○ 對 함안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칠원면 무기리 한국이연(주) 용도무단변경 불법공장건축』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1~3면) (2) 『[사설] 공인은 투명인간이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다른 회사의 공장부지에 비밀계약을 체결해 불법으로 아연공장을 건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65~866	박○○ 對 구로오늘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양청장 동생 M골프클럽 징수유예는 “특혜 넘어 불법”』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중 구로구청이 모 골프클럽에 대해 세금 징수유예를 결정한 것이 불법임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2일자 1면)

2010전북조정14	1. (주)JTV전주방송, 2. (주)전라일보, 3. (주)한국리서치 對 새전북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온누리칼럼] 부끄러운 조사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전주방송과 전라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지방선거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주)JTV전주방송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유감표명보도 게재) • (주)전라일보 · (주)한국리서치 :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명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7일자 2면)

2010부산조정33	제일문창교회 對 한국기독교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마산노회, 제일문창교회 담임목사 시벌에 관한 전권위원 구성』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4일자 2면) (2) 『당회장 위에 사모를 왕 당회장으로 모신 어느 교회』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4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와 담임목사 시벌에 관한 34인의 진정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867	파주시청 對 한겨레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파주시장 부인땅 용지변경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 2면)
신청인주장	파주시가 시장 부인의 토지를 ‘밭’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해주는 등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2면)

2010서울조정868~873	(재)광주비엔날레 對 중앙일보 (868~869 정정 · 손배청구), 인터넷 중앙일보 (870 정정청구), 네이버 (871 정정청구), 네이트 (872 정정청구), 야후 (873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의미 깊은 광주비엔날레 세금으로 아트 페어라니...』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4월 30일자 30면), 조인스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4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이 준비 중인 ‘아트페어(미술견본시장)’에 공공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세금낭비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인터넷 중앙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 각 조정에 같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중앙일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네이트 : 중앙일보가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자체 움부즈만 코너에 게시 • 야후 : 중앙일보가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5월 17일자 2면), 인터넷 중앙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5월 17일자)]

2010전북조정15	정○○ 對 전라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수업시간 외출해 기자회견 물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4면)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교장에게 외출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수업시간에 외출 허락을 받아 기자회견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 교사 “지역사회 화합 앞장”』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8일자 14면)

2010서울조정874	김○○ 對 헤럴드경제닷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노숙자, 위장취업 후 승용차 절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노숙자인 신청인이 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검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취지가 대부분 수용된 정정보도문을 이미 홈페이지 뉴스면에 게재한 바 있다.)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노숙자, 위장취업 후 승용차 절취' 사건 관련』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3일자)

2010서울조정875~877 (주)아신엠단성사 對 노컷뉴스,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03년 전통' 단성사에 불이 꺼진 이유는?』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일자)
신청인주장	단성사 극장이 사실상 휴점 상태라고 보도했으나, 일부 매장을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트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41~44 참조)]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페이지에서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e-뉴스룸> '정정기사' 코너에 이를 반영 •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홈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103년 전통 단성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0일자)

2010서울조정878~88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닷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민노총 홈페이지에 총파업 비난글 쇄도』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0년 4월 27일자 10면), 헤럴드경제닷컴 (4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비난하는 글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쇄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과장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럴드경제닷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0년 5월 20일자 12면), 헤럴드경제닷컴 (5월 19일자)]

2010서울조정882~883 (정정 · 손배청구) 서○○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단독] 서수원병원 운영권 불법양도 의혹』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 이사장의 빚을 대신 갚아 주고 이사장직을 양도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적법하게 경영권을 인수받았다.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31일자)

2010서울조정884	해군본부 對 경향신문 (정정청구)
조정대상	『매뉴얼도 없는 해군 '시간과의 싸움' 뒤북·즉흥』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1일자 4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해군이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늦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2010서울조정885	해군본부 對 국민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해군은 손 못쓰고 해경이 구조』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9일자 2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군이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지 않았고 최원일 함장 및 부함장은 구조된 직후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일자 2면)

2010서울조정886	해군본부 對 동아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해경 구조보트 4척 있는데... 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1일자 6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군이 해경의 현장 접근에 제동을 거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3일자 22면)

2010서울조정887	해군본부 對 문화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취재수첩] 낡은 어선탐지기만도 못한 첨단 해군』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6면)
신청인주장	침몰 천안함 함미를 민간 어선이 발견한 것과 관련해 첨단 장비를 갖춘 해군 함정이 낡은 어선보다 못하다고 보도했으나, 해군 함정은 잠수함 등 수중 이동물의 탐색에 적합한 것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해당 기사는 '취재수첩'이라는 기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보도이며, 사실적 주장과 관련하여 잘못된 내용이 없다.)

2010서울조정888	해군본부 對 서울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실망하다 절망한 가족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8일자 5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생존 장병의 기자회견에 대해 '생존 장병들이 입을 맞추고 나왔다', '해군에 보낸 것을 후회한다' 는 등의 천안함 유족들의 발언을 게재해 해군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89	해군본부 對 세계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함미 이동 숨기려다…軍 또 ‘불신’ 자초』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5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함미 인양 과정에서 해군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함미를 몰래 수중 이동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보도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적절한 보고과정 후 이동하였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90	해군본부 對 조선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中·일에 대응" 大洋해군 외치는 사이 앞바다가 뚫렸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9일자 5면)
신청인주장	해군이 중국, 일본 등 주변 강국에 대응하는 대양해군에 집착해 대북 전력보강에는 소홀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91	해군본부 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항로·함미발견 등 은폐·왜곡…'못믿겠 군』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6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중요 사실들에 대해 해군의 의도적 왜곡, 은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892~893	1. 임○○, 2. 한○○, 3. 신○○ 對 YN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출발」 프로그램 '112신고 뒤 지구대 왔다 경찰에 폭행 당해'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3일 05:50)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시민을 주차장으로 끌고가 집단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도주하는 것을 주차장에서 제압한 것으로 폭행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인터넷 YN : 『과도한 공무집행 방해 제지 과정이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31일자)

2010경기조정70~71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對 뉴스리더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임야개발허가 놓고 '정부vs용인시' 해석 판이?』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8일자~5월 4일자 11면)	
신청인주장	개발 취소된 신청인 법인 소유의 임야를 원상 복구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 각종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용인시 개발인·허가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9일자~6월 15일자 11면)	

2010경기조정72~73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對 인터넷뉴스리더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1) 『용인시 개발인허가 의혹...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0일자) (2) 『용인시 개발인허가 풀리지 않는 의혹』 (2010년 4월 28자)	
신청인주장	개발 취소된 신청인 법인 소유의 임야를 원상 복구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 각종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동영상 메인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7일간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함,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체로 보도,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2)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행결과	『<반론보도문> 용인시 개발인허가 풀리지 않는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2010경기조정74~77		이○○ 對 광주투데이, 우리일보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토지거래 이중 계약 성행... 모 시의원 개입설』 제하의 기사 [광주투데이 (2010년 5월 6일자), 우리일보 (5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토지거래 과정에 신청인이 개입하여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리결과	각 취하	

2010대전조정26~27		김세호 對 중앙매일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한나라당,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최종 확정』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4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보도했으나 공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한나라당,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최종확정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0일자 9면)	

2010대전조정28~29		김세호 對 충청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가세로 한나라당 태안군수 후보 최종 확정』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4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보도했으나 공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최종 확정’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0일자 11면)

2010서울조정894	권태신 對 신동아 (반론청구)
조정대상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과다 부동산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호 82~9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2003년 재산공개 당시 소유임야를 누락시키는 등 부동산의 보유 및 매각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호 593면)

2010서울조정895~898	신○○ 對 KBS-1TV, KBSi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천태만상 작명소’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7일 18:50)
신청인주장	작명가인 신청인이 일주일 전에 지어준 이름을 고객이 다시 의뢰하자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가치 평가적 인식의 표현인의 견 등의 영역에 포함된다.)

2010서울조정899~906	양○○ 對 MBC-TV, iMBC,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iMBC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대한민국 사진대전, 3천만원 줘야 대상’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5월 13일 21:00), iMBC (5월 13일자)] • 네이트 · 다음 : 『대한민국 사진대전, 3천만원 줘야 대상』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민국 사진대전’ 금품수수 사건 보도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개인전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iMBC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네이버와 다음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요청, 부제소) • iMBC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정정보도문은 17:00~17:20에 방송되는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 조정대상 보도 중 신청인의 개인전 화면을 배경화면으로 사용,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 진행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iMBC : 「5시 뉴스」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양○○ 사진작가 관련)’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6월 4일 17:00), iMBC (6월 4일자)] • 네이트 : 『알려드립니다 (양○○ 사진작가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 다음 :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907~908		(주)문치퍼스 對 KBS-1TV, KBSi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영터리 환경인증’ 오토바이 활개’ 제하의 보도 [KBS-1TV (2010년 5월 11일 21:00), KBSi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하는 오토바이의 인증을 취득을 위해 브로커를 고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909~910		곽○○ 對 한기여중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목회자칼럼] 요셉의 지도력』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0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명의로 칼럼을 게재하였으나, 신청인은 해당 칼럼을 쓴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100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8일자 1면)	

2010서울조정911		(주)나인스에비뉴 對 KBS-1TV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허위·과장 광고 기승’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20일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들어설 거라는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외국인관광객 면세 판매장을 지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912		(주)나인스에비뉴 對 조선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허위·과장 분양에 또 속았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B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들어설 거라는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외국인관광객 면세 판매장을 지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조선닷컴 움부즈맨 코너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시, 제목 클릭 시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반론보도문 송고,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B4면)	

2010서울조정913		1. 박선숙, 2. 김용태 對 헤럴드경제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이스피싱 관련법 급조...피해자들 두 번 운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2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각각 발의한 보이스피싱 관련법안이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아 법률적 오류로 국회 계류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다른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 일정진행에 따라 지연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21면)

2010서울조정914	1. 박선숙, 2. 김용태 對 에럴드경제닷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어설픈 의원입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돈 언제 돌려받나』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각각 발의한 보이스피싱 관련법안이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아 법률적 오류로 국회 계류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다른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 일정진행에 따라 지연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법 급조’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2010서울조정915	박선영 對 KBS-1TV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시사기획 KBS 10」 프로그램 ‘學者와 論文 ② 공직의 무게’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4일 22:00)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학교수 재직시절 논문을 이중게재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낭독하고 동시에 자막으로 표시, KBS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서두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을 자막으로 게재
이 행 결 과	「시사기획 KBS 10」 프로그램 ‘‘논문이중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15일 22:00)

2010서울조정916~920	양○○ 對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탈북소년 ○○이 “올해는 외롭지 않아요”』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5월 6일자 A13면), 디지털조선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탈북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자세하게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1,500만원) • 디지털조선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21~924	양○○ 對 KBS-1 · 2TV, KBSi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KBSi :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 ‘상을 줄게 돈을 다오’ 제하의 보도 [KBS-1TV (2010년 5월 23일 23:20), KBSi (5월 23일자)] • KBS-2TV · KBSi :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상을 줄게 돈을 다오’ 제하의 보도 [KBS-2TV (2010년 5월 24일 08:05), KBSi (5월 24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민국 사진대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개인전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1·2TV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KBSi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 이행방법 : 반론보도문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 KBS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의 사진 등 관련부분 삭제, 조정대상보도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신청인이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을 경우 1주일 이내 반론보도문 게시
이행결과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KBS-2TV (2010년 6월 11일 08:54), KBSi (6월 11일자)]

2010서울조정92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對 전국아파트신문 (정정청구)
조정대상	『아파트 분쟁 대부분 관리소장 탓』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1일자 9면)
신청인주장	광주지역 아파트 분쟁 대부분이 관리소장의 직무소양 부족과 횡포로 인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밝혀왔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7일자 9면)

2010서울조정926~927	(주)인버전커뮤니티 對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춧불’ 인터넷 커뮤니티 ‘광우병’ 내리고 취미 사이트로』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5월 10일자 4면), 디지털조선일보 (5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SLR클럽’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으나,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
처리결과	각 기각결정 (사유 :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2010서울조정928~929	1. HORVEJKUL NICHKHUN-BUCK(닉쿤), 2. 황찬성 對 TV Daily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2PM 찬성, ‘닉쿤 학대 논란?’』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조작되고 편집된 신청인들의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취하

2010서울조정930~931	윤○○ 對 SBS-TV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8시 뉴스」 프로그램 ‘춧불성금 횡령 구속’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26일 20:00)
신청인주장	김모씨가 신청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걷은 성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자 신청인이 김모씨를 비난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인터뷰에서 김모씨를 비난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932~933	박중수 對 오마이뉴스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경기도 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은 제외』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주제로 올리면 보수 후보들에게 불리하다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0서울조정934~935	국무총리실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나도 총청서 산다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5월 15일자 1면), 경향닷컴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총청도에 살았으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을 거라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은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경향닷컴 정치면 초기 화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6월 12일자 2면), 경향닷컴 (6월 12일자)]

2010서울조정936~937	김창영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나도 총청서 산다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5월 15일자 1면), 경향닷컴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총청도에 살았으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을 거라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은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전북조정16	진안군 對 전북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용담댐 수질문제 또 수면위로』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3일자 1면)
신청인주장	진안군이 쓰레기매립지를 잘못 관리해 용담댐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9일자 2면)

2010서울조정938~944	국도해양부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생태계 ‘자궁’ 드러내려 하는가』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5월 12일자 1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강행 방침 발표이후 안동 구담습지가 1년전에 비해 크게 훼손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한겨레닷컴 · 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야후 · 파란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닷컴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제목 클릭 시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 송고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 한겨레신문이 반론보도문을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한겨레신문이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전송해오는 시점부터 이를 반영하여 노출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6월 22일자 2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파란 (6월 21일자)]

2010경기조정78	남○○ 對 안성신문닷컴 (정정청구)
조정대상	『마을 이장이 공동관정 개인용도로 사용해 물의』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마을 공공의 명목으로 설치된 관정을 수년 동안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행방법 :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일간 게시, 이후 정정보도문이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이행결과	『[정정보도문] “마을 이장이 공동관정 … 물의”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7일자)

2010서울조정945~946	이○○ 對 여성중앙 (정정 · 손해청구)
조정대상	『이혼 소송 박상민 vs 한모씨 엇갈린 공방』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호 490~492면)
신청인주장	이혼소송 중인 배우 박상민 측 변호사인 신청인이 부인 측의 과도한 언론플레이로 명예가 훼손당해 부인 측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취하 • 손해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사는 있으나,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947~948	(주)아신엠단성사 對 스포츠칸,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중앙시네마 76년 만에 폐관』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일자)
신청인주장	단성사가 폐관하고 망한 회사처럼 왜곡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중앙시네마 76년만에 폐관’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8일자)

2010서울조정949~952	(주)아신엠단성사 對 스타뉴스, 네이트,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중앙시네마 폐관, 76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다』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일자)
신청인주장	단성사가 폐관하고 망한 회사처럼 왜곡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뉴스 : 조정대상보도 하단 『“중앙시네마 폐관, 76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다”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8일자) • 네이트 · 야후 · 파란 : 『“중앙시네마 폐관, 76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다.”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8일자)

2010서울조정953~954, 964	(주)오드아이앤씨 對 경향닷컴,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윤상 · 에스원, 온라인 게임 음악 맡아』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소속가수인 윤상이 (주)포스리드의 새로운 게임의 음악을 직접 제작 프로듀서 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55~957, 965	(주)오드아이앤씨 對 데일리정경뉴스, 마이데일리,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일리정경뉴스 : 『윤상-에스원, 진 온라인 음악 맡아』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 마이데일리 · 네이버 · 다음 : 『윤상 · 에스원, 온라인 ‘진’ 게임음악 맡아』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소속가수인 윤상이 (주)포스리드의 새로운 게임의 음악을 직접 제작 프로듀서 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58~959	(주)오드아이앤씨 對 인벤, 네이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진 온라인, 윤상/에스원이 게임음악 맡아』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소속가수인 윤상이 (주)포스리드의 새로운 게임의 음악을 직접 제작 프로듀서 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60~961, 966	(주)오드아이앤씨 對 인터넷 전자신문,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 대상	『'진 온라인' 음악, 윤상·에즈원이 맡는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소속가수인 윤상이 (주)포스리드의 새로운 게임의 음악을 직접 제작 프로듀서 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62~963	(주)오드아이앤씨 對 이크로팬,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 대상	『진 온라인, 게임음악에 윤상, 에즈원 참여』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소속가수인 윤상이 (주)포스리드의 새로운 게임의 음악을 직접 제작 프로듀서 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크로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크로팬 : 『[정정보도] 진 온라인, 게임음악에 윤상, 에즈원 참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8일자)

2010경남조정37~38	이영국 對 고성인터넷뉴스 (정정·손배청구)
조정 대상	『여론조사 결과』 하학열 후보, 이영국 후보 압도』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지난 3월 실시된 도의원 지지율 조사 결과를 최근 조사된 결과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후속보도 게재, 부제소)</p> <p>※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 위치에 최소 만 2일 이상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어야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후속보도는 1주일 이상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간 이상에 위치하도록 게재</p>
이행 결과	<p>(1) 『도의원 선거 여론조사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1일자)</p> <p>(2) 『고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영국』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6일자)</p>

2010서울조정967	김○○ 對 SBS-TV (손배청구)
조정 대상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한밤중에 걸려온 공포의 음란전화'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20일 06:00)

신청인주장	음란전화 피해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150만원 지급)

2010서울조정968	국가인권위원회 對 한국일보 (반론청구)
조정 대상	『유엔보고관 南門·北峯 인권위원장』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0일자 A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위원회 위원장과 유엔 특별보고관의 접견 자리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 결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7일자 A2면)

2010충북조정16~17	김경희 對 진천군민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 대상	(1) 『흑색 허위사실 유언비어 난무, 진천군 위상 추락』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1면) (2) 『우석대 진천캠퍼스 착공 가시화』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2면) (3) 『진천도농복합휴양타운 개발프로젝트 순조』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3면)
신청인주장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해 유리하게 보도해 경쟁후보인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 결과	『사과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4일자 1면)

2010서울조정969, 1035	김우룡 對 신동아 (정정·반론청구)
조정 대상	『"김재철 사장, '큰집'에 불려가 조이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호 114~12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MBC 좌파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됐다", "MBC 내의 '좌빨' 80%는 척결했다" 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970, 1023	서강대학교 對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 대상	『서강대, 교비 254억 전용 의혹』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2010년 5월 27일자), 한국대학신문 (5월 2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교비 254억 원을 전용하였고, 이를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 반토막이 됐다는 등의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6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반론보도문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2일자) • 한국대학신문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2일자 2면)

2010서울조정971 경기지방경찰청 對 뉴시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p>(1) 『경찰, 포천 한나라당 시장 후보 측근 관련 업체 수사』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p> <p>(2) 『경찰, 서장원 후보 보도자료 “허위 사실이다”고 밝혀』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일자)</p>
신청인주장	<p>신청인이 포천 한나라당 시장 후보 측근의 비리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해당 후보측의 보도자료만을 토대로 허위 보도했다.</p>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p> <p>※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24시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p>
이 행 결 과	<p>『알려왔습니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7일자)</p>

2010서울조정972~973 국립환경과학원 對 KBS-1TV, KBSi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p>『뉴스9』 프로그램 ‘엔터리 환경 인증’ 오토바이 활개’ 제하의 보도</p> <p>[KBS-1TV (2010년 5월 11일 21:20), KBSi (5월 11일자)]</p>
신청인주장	<p>신청인의 환경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소된 오토바이도 재인증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처 리 결 과	<p>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p> <p>-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내용인 만큼 반론 및 정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하단에 계속 표시, 진행자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속도로 낭독 • KBSi :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제목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함께 표시되도록 함

2010서울조정974 김○○ 對 한국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p>『어설픈 조사 ‘복지회관 잡았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0일자 14C면)</p>

신청인주장	복지옴부즈만실 실장인 신청인이 옴부즈만실의 사회복지시설 점검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3일자 16C면)

2010서울조정975~980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對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파출부·간병인 등골 빼먹는 유료 직업소개소』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0년 5월 19일자 11면), 인터넷서울신문·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 (5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 소속 직업소개소들이 구직자에게 법정 소개료의 두배에 가까운 소개요금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문 : 취하 • 인터넷 서울신문 :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부제소) • 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 삭제, 부제소)

2010충북조정18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對 충청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행정누수 현상 '아기'』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8일자 1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소속인 예산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파업 결의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인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임금협상과는 무관』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1일자 13면)

2010서울조정981~985	고○○ 對 연합뉴스,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86~988, 1008~1009	고○○ 對 소비자만드는신문, 네이트, 다음,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파란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0서울조정989~995	고○○ 對 매경닷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춘천서 또 남녀 연탄 피워 동반자살』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996~1001	고○○ 對 뉴시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002~1004	고○○ 對 서울파이낸스, 네이버, 야후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춘천 모텔서 남녀 또 동반자살』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005~1007	고○○ 對 인터넷 한국재경신문, 구글, 다음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춘천서 또 연탄불 동반자살』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010, 1024~1025	고○○ 對 인터넷 서울신문,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경기조정79	고○○ 對 인터넷 경인일보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춘천 모텔서 또 남녀 연탄 동반자살』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 모텔에서 남녀가 동반자살 했다고 보도하면서 모텔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성과 연령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011~1022	박○○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현직경찰간부 ‘여경 스토킹’…청문감사실도 ‘쉬쉬’』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간부인 신청인이 부하 여직원에게 구애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합의) • 네이트·다음·야후·파란 : 각 취하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조정보도문> 경찰간부 여경 스토킹 관련』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5일자) • 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파란 : 『<알려드립니다> 경찰간부 여경 스토킹 관련』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8일자)

2010경남조정39	문○○對 인터넷 양산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미니인터뷰> 당근과 채찍으로 ‘제자사랑’ 실천』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3일자)
신청인주장	모 초등학교 교사가 왕따 학생 없이 학급을 이끈다는 사연이 소개되었으나, 신청인은 해당 교사의 학급에서 동급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전학을 간 사실이 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대구조정12	최병국對 영남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칼럼] ‘쑥대밭’ TK 정치권』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8일자 2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공직비리혐의로 공천에서 탈락했고, 무소속 출마해 박근혜 마케팅으로 경산 시장에 당선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명, 부제소)

2010서울조정1026	(주)우리넷對 매경닷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종목 포커스] 우리넷, 이유없는 상한가 특정세력 매집했나』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관계자가 주가 급등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특정세력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027~1028		신○○ 對 주간현대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국고보조금 빼들려 땅 사고 집 사고… 두 얼굴의 협회 회장님 고발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6일자 28~2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029~1030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對 주간현대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국고보조금 빼들려 땅 사고 집 사고… 두 얼굴의 협회 회장님 고발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6일자 28~2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 소속 회원들이 협회 이름으로 비리를 일삼고 개인 재산을 축적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1일 24면)	

2010서울조정1031~1034		김○○ 對 이투데이신문, 이투데이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1) 『原電 인프라 투자비 4대강에 썼다』 제하의 기사 [이투데이신문 (2010년 6월 14일자 1면), 이투데이 (6월14일자)] (2) 『터키, 원전공사 대가로 군수물자 요구』 제하의 기사 [이투데이신문 (2010년 6월 14일자 3면), 이투데이 (6월14일자)] (3) 『클레임 걱정에 하청업체 계약기피』 제하의 기사 [이투데이신문 (2010년 6월 14일자 3면), 이투데이 (6월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한 대학 강연에서 한수원 예산이 4대강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보도는 할 의향이 있으나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036		이상의 對 동아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술 취해 통제실 비웠던 합참의장 정상 지휘했던 것처럼 문서조작』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1일자 A1면)	
신청인주장	천안함 침몰 당시 신청인이 술취해 통제실을 비웠으나 정상지휘했던 것처럼 문서조작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037~1040		주식회사 송이산업 對 KBS-1TV, KBSi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송이 독점사용 안돼!' 제하의 보도 [KBS-1TV (2010년 6월 8일 19:00), KBSi (6월 8일자)]	

신청인주장	제주도 화산석의 일종인 ‘송이’ 라는 명칭을 신청인 업체가 상표 등록을 통해 독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정당한 절차로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KBSi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기사 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제주참여시간에 신청인 업체를 배경으로 반론보도문 방송,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 표시 • KBSi :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보도 삭제, 향후 상업적 이용 금지
이 행 결 과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송이’ 상표 등록 적법 절차’ 제하의 보도 [KBS-1TV ((2010년 7월 2일 19:00), KBSi (7월 2일자)]

2010서울조정1041~1042, 1045~1056	(주)이비카드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구글,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롯데 M&A전략, 소송 악재에 '발목'』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과 레오콘코리아와의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 롯데가 신청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차질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머니투데이 · 구글 · 네이버 · 다음 · 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네이트 · 야후 : 취하

2010서울조정1043~1044	원일렌트카(주) 對 SBS-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8 뉴스」 프로그램 ‘렌터카 요금이 수리비에 두배? ‘배보다배꼽이 커’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0일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렌터카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적정수준의 2배 이상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300만원, 부제소) ※이행방법 : 화면하단에 ‘정정보도’ 라는 자막 표시,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업체에 해당 하는 화면을 배경으로 방송,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이행 사항 없음 • 손배청구 : 조정액 지급

2010대전조정30~31	김○○ 對 TJB-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8시 뉴스」 프로그램 ‘부실급식 문제’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12일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급식 위탁계약을 맺은 고등학교에서 식단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거부하는 소동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이행 결과	「8시 뉴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일 20:00)

2010서울조정1057~1062	이○○ 외 58인 對 주간조선, 인터넷 주간조선, 네이버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정 대상	『네이버나 짚딱 망했지만 재기했다 성공 위해 남 짓밟은 적 없어』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0년 2월 8일자 36~39면), 인터넷주간조선 (2월 8일자), 네이버 (2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퇴사한 신청인들이 재직 당시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사조직을 운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조선 : 디지털조선일보의 조정대상기사 삭제 • 네이버 : 인터넷 주간조선이 전송해오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뉴스면에 게재하고 검색되도록 함, 뉴스홈 <e-옴부즈맨>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이행 결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0년 8월 2일자 37면), 인터넷 주간조선 (7월 28일자), 네이버 (7월 29일자)]

2010전북조정17~20	진○○ 對 전북연합신문, 새만금일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정 대상	• 전북연합신문 : 『냉동 소 돼지고기 냉장육 납품 폭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3일자 7면) • 새만금일보 : 『냉동육이 냉장육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3일자 4면)
신청인 주장	학교에 정육을 납품하는 신청인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2010경기조정80~81, 84	소○○ 對 시티뉴스 (80-81 정정 · 손배청구), 다음 (84 정정청구)
조정 대상	『S목사 감금사건 ‘형식상 무죄 실질적 유죄’』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선고 받은 감금사건에 대해 ‘형식상 무죄, 실질적 유죄’ 라고 보도하였으나 단순히 무죄이며, 신청인이 고소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재판장의 말을 인용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인용 보도이다.
처리 결과	• 시티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삭제) • 다음 :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삭제) ※ 이행방법 • 시티뉴스 : 7일간 메인화면 팝업창에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 S목사 관련기사 목록을 최상기사 위치에 뜨도록 함
이행 결과	『S목사 감금사건 사실상 무죄...보도,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시티뉴스 (2010년 7월 8일자), 다음 (7월 12일자)]

2010경기조정82~83	반○○對 경기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0년 눈물로 선산 되찾아』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12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팔순할머니에게 부동산 브로커로 접근하여 부동산 인허가를 빌미로 강제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손배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경남조정40~41	권○○對 거제인터넷신문GJN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시민 1인당 2만원씩 도둑 맞고도 관련 공무원은 오히려...하수관거 편취사건 당시 담당과장·계장 '노른자위' 부서에』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거제시 하수관거 횡령사건과 신청인은 무관함에도 마치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社告] 거제시청 도시과장 보도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7일자)

2010서울조정1063	민○○對 교수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선명하게 드러난 지성사의 쟁점』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8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술하지 않은 책을 신청인의 저서라고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동아시아 주자학의 변주’ 국제학술대회참관기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5일자 8면)

2010서울조정1064~1077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근현대미술 대가 작품 일색 ‘복고 장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6월 18일자 25면), 한겨레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파란 (6월 17일자)]
신청인주장	광주 비엔날레 홍보 간담회에 한국관계자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으나 각국 인사가 다수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45~58 참조)]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닷컴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 네이버·네이트·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섹션에서 검색 되도록 함, 자체 움부즈만 코너인 '정정·반론 등 게재' 란에 게시 • 야후·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7월 13일자 2면),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파란 (7월 12일자)]
2010대구조정13	전○○ 對 일간대구경북 (손배청구)
조정대상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0일자 3면)
신청인주장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된 신청인에 대해 ‘잣대 없는 공천’, ‘자격이 없는 사람’ 등 이라고 게재해 피해를 당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알려드립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5일자 3면)
2010광주조정24~25	김○○ 對 광남일보 (추후 · 손배청구)
조정대상	『‘나비축제’ 먹거리장터서 수백만원 갈취』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풍물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재판결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게재, 조정액 200만원)
이행결과	『추후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3일자 10면)
2010광주조정26~27	김○○ 對 함평신문 (추후 · 손배청구)
조정대상	『‘나비축제’ 풍물시장서 수백만원 갈취』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0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풍물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재판결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게재, 조정액 4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결정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078~1084	(주)잉글리쉬 무무 對 파이낸셜뉴스닷컴 (1078~1079 정정 · 손배청구), 네이버 (1080 정정청구), 네이트 (1081 정정청구), 다음 (1082 정정청구), 야후 (1083 정정청구), 파란 (1084 정정청구)
조정대상	『‘잉글리시 무무’ 본사 - 가맹점 법리해석 공방』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계약만료전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통보를 하고 위약금을 물어 가맹점과 법리해석 공방중이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이낸셜뉴스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다음 · 파란 : 각 조정성립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트 · 야후 : 각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이낸셜뉴스닷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파이낸셜뉴스가 정정보도문을 포함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재송고하였을 경우, 정정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옴부즈만 코너에 정정보도문 게시

처 리 결 과	• 다음 · 파란 : 파이낸셜뉴스가 정정보도문을 포함하여 조정대상기사를 재송고 하였을 경우, 정정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조정대상보도 하단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5일자)

2010서울조정1085 (주)아베스 對 에너지타임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하동군 그린빌리지사업 '검은 돈' 검찰 수사』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그린빌리지 사업과 관련해 마을 주민에게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몇몇 사람에게 500만원씩 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주간 에너지타임즈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각 포털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제하의 기사 [에너지타임즈 (2010년 7월 12일자), 주간 에너지타임즈 (7월 12일자 2면)]

2010경남조정42 김홍식 對 고성인터넷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 김홍식 당선자는 행사장에 불참해』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군의원으로 당선된 신청인이 낙선용 SMS를 보내서 군민들을 혼란시켰다고 보도했으나 SMS발송업체의 실수로 잘못 발송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김홍식 군의원 문자메시지 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8일자)

2010서울조정1086~1087 1. 정○○, 2. (주)아이에이치큐 對 스포츠조선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전지현, 드라마 컴백 끝내 불발 왜?』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8일자 2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배우 전지현의 휴대폰 불법도청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 업무에서 물러났으며, 현 소속사가 배우 전지현과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스포츠조선닷컴에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스포츠조선 (2010년 7월 27일자 22면), 스포츠조선닷컴 (7월 27일자)]

2010서울조정1088~1089 (주)아이에이치큐 對 마이데일리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열애설' 그 후 전지현은 어디에 있나?』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배우 전지현의 소속사가 전지현의 열애설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유감표명)

2010강원조정9	1. 대화초등학교 2. 김○○ 對 강원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1) 『운동부 코치 해임 놓고 법정공방』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30일자 21면) (2) 『"성적 부진시 코치직 사퇴" 서약서 강요 파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운동부 코치를 해임한 데 대해 법원이 해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3일자 21면)

2010강원조정10~11	1. 대화초등학교 2. 김○○ 對 인터넷 강원일보, 네이버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1) 『교장과 코치 싸움에 피해는 아이들 몫?』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30일자) (2) 『체전성적 부진하면 코치직 사퇴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운동부 코치를 해임한 데 대해 법원이 해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강원일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인터넷 강원일보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포함하여 재송고하였을 경우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3일자)

2010경남조정43~48	빈○○ 對 경남신문,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일보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정대상	• 경남신문 : (1)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6명 징계』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0일자 6면), (2) 『경찰관들,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도덕적 해이" 비난 목소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1일자 6면) • 경남매일 : 『경찰관 6명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남일보 :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6명 징계』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9일)
신청인주장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이 6명의 경찰관들과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유감표명, 추후보도, 기사 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일보 : 경남일보 사회면 우측 상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행결과	이행 사항 없음

2010경남조정49	김홍식 對 고성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당선증도 받지 않는 군의원 당선자?』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1일자 5면) (2) 『고성군의회 의장 선출?』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일자 13면)
신청인주장	군의원으로 당선된 신청인이 낙선용 SMS를 보내어 군민들을 혼란시켰고 또한 건축설계 전문가 산업분과 위원장 시절 수의 계약 부적절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090~1092	한국전력공사 對 KBS-1TV (정정·반론·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초호화 신사옥’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9일 21:00) (2) 『뉴스광장』 프로그램 ‘초호화 신사옥’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30일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나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며 신축하는 사옥이 에너지효율은 낮고, 규모는 큰 초호화 청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라인>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 보도, 제목은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KBS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반론보도문의 방송영상은 다시보기서비스 제공
이 행 결 과	『뉴스라인』 프로그램 ‘한전, 신사옥 정부 기준 내에서 결정’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16일 23:33)

2010서울조정1093	전국언론노동조합 對 KBS-2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해피선데이』 프로그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불법파업’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4일 17:20)
신청인주장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자막방송 하였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합법적 파업이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파신청인 주장 : 신청인 조합 소속인 KBS 본부가 벌이는 파업은 근로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부산조정34	한국국민중개사업회 울산지부 對 울산매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지적가족 체육대회 ‘찬조금’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3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체육대회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거둬 공무원들에게 찬조금으로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1094~1097		한국방송공사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KBS 뉴스해설, 조·중·동 사실과 ‘판박이’』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6월 30일자 21면), 경향닷컴 (6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의 뉴스해설이 조,중,동 사실과 주제와 논조가 일치하여 상호간 담합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알려 왔습니다』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7월 21일자 28면), 경향닷컴 (7월 21일자)]	

2010서울조정1098~1099		사○○ 對 뉴스앤조이 (반론·손배청구)
조정대상	『교인 모르게 교회 팔다 걸린 목사』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교인모르게 교회를 팔려고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조정대상보도 하단 『‘교인 모르게 교회 팔다 걸린 목사’ 보도에 대한 사○○ 목사의 반론』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9일자)	

2010서울조정1100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對 조선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태평로』 노조 공화국? 노조전임자 공화국』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8일자 A3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 전임자 30명이 타임오프제 법률이 시행돼 회사로부터 월급지원이 끊기자 전임자를 그만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조선닷컴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밝혀왔습니다』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7월 29일자 2면), 조선닷컴 (2010년 7월 29일자)]	

2010서울조정1101~11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對 내일신문, 인터넷 내일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4대강 구미보, 부실시공 의혹제기』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0년 7월 2일자 1면), 인터넷 내일신문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낙동강 구미보의 부실시공으로 권양대 상판에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내일신문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구미보 균열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0년 7월 30일자 1면), 인터넷 내일신문 (7월 30일자)]	

2010서울조정1103		이○○對 YTN (정정청구)
조정대상	(1) 「뉴스&이슈」 프로그램 '인권위, 경찰 수사 행태 전반 조사 확대'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4:08) (2) 「뉴스&이슈」 프로그램 '인권위, 경찰 수사 행태 전반 조사 확대'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5:33) (3) 「뉴스Q」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7:01) (4) 「뉴스Q」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관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8:37) (5) 「YTN24」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20:05)	
신청인주장	신청인과 법적 분쟁상태에 있는 조 모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이슈>, <뉴스Q>, <YTN24> 프로그램에서 각 1회씩 반론보도문 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반론보도문 낭독,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 처리	
이행결과	(1) 「뉴스&이슈」 프로그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1일 12:59) (2) 「뉴스Q」 프로그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1일 16:00) (3) 「YTN24」 프로그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1일 20:00)	

2010서울조정1104~1109		박○○對 YTN, 인터넷 와이티엔,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손해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1) 「뉴스&이슈」 프로그램 '인권위, 경찰 수사 행태 전반 조사 확대'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4:08), (2) 「뉴스Q」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7:01), (3) 「뉴스Q」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관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18:37), (4) 「YTN24」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20:05) • 인터넷 와이티엔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1) 『인권위, 경찰 수사 행태 전반 조사 확대』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4일자, 이하 게재일자 같음), (2)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3)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관 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4)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방송돼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인터넷 와이티엔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파란 : 취하 	

2010서울조정1110~1115		박○○對 YTN, 인터넷 와이티엔,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손해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YTN24」 프로그램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24일 20:05) • 인터넷 와이티엔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파란 : 『인권위, 부당 체포 경찰 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방송돼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인터넷 와이티엔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파란 : 취하

2010부산조정35~38	주식회사 평화 對 KNN, iKNN (매체별 정정 · 청구)
조정 대상	『뉴스아이』 프로그램 ‘규격미달 자재로 수천 세대 공사’ 제하의 보도 [KNN (2010년 7월 5일 20:25), iKNN (7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오배수관 공사용 PVC 이음관의 두께가 규격미달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N :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이미 신청인의 입장을 후속보도를 통해 보도했다.) • iKNN : 취하

2010대전조정32	이○○ 對 계룡일보 (손배청구)
조정 대상	『지역언론 환경변화를 보는 사회』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5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발행하는 계룡신문이 폐간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 결과	『“지역언론 환경변화를 보는 사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일자 2면)

2010서울조정1116~1117	한국방송공사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 대상	『500여 단체 “KBS 수신료 인상 저지”』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6월 29일자 2면), 경향닷컴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광고 폐지 후 수신료 6500원 인상안’ 이 BCG 최종보고서에 돌발 삽입됐다고 보도하였으나, BCG 중간보고 시에 이미 담겨 있었던 내용이다.
처리 결과	각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행 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7월 16일자 2면), 경향닷컴 (7월 15일자)]

2010서울조정1118~1119	(주)더블유아이 對 뉴시스 (정정 · 손배청구)
조정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천시가 추진중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 문제있나(?)』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7일자) (2) 『부천 MBT사업 업자선정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7일자) (3) 『부천 MTB사업 관련, 업무보고에서 ‘도마위’ 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6일자)
신청인주장	부천 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과 관련, 신청인 업체가 공급한 폐기물 건조기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원일(W.I), “최고의 시스템과 기술로 앞장서”』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3일자)

2010경남조정50~51	1. 윤○○ 2. 김○○ 對 경남연합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수석부회장·사무국장 ‘회장님 몰래’ 함안배드민턴연합회 집행부 갈등』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5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윤○○이 신청인 김○○과 결탁하여 불법적으로 함안군 배드민턴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고 예산을 전횡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사과공문, 후속보도, 피신청인 운영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삭제, 외부 홈페이지에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된 경우 삭제 요청, 부제소)
이 행 결 과	『함안배드민턴연합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6일자 5면)

2010경남조정52~53	윤○○ 對 함안정통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배드민턴 군연합회 ‘갈등’ 전직회장 사퇴』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9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마찰을 일으켜 함안군 배드민턴연합회의 전임회장이 자신 사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사과공문, 후속보도, 피신청인 운영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삭제, 외부 홈페이지에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된 경우 삭제 요청, 부제소)
이 행 결 과	『함안배드민턴연합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30일자 2면)

2010대구조정14	조○ 對 대가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건축현장에서 문화재 유물(토기조각) 발굴』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7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축주로 있는 건축현장에 대해 관할 관청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120~1121	전국급속노동조합 부양지부 S&T대우지회 對 머니투데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파업 불참하면 50만원 벌금』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5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노조원들에게 벌금을 받는 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인터넷 머니투데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부제소)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0년 7월 24일자 2면), 인터넷머니투데이 (7월 23일자)]
------	---

2010대구조정15~16 김○○ 對 노컷뉴스, 경북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초등생의 동급생 성추행 및 폭행』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0년 7월 5일자), 경북일보 (7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들이 같은 반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경북일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반론보도문] ‘초등생의 동급생 성추행 및 폭행’ 관련』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5일자)

2010서울조정1122~1125 조○○ 對 오마이건설뉴스,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조정대상	『건기연 원장·논문 표절시비로 시골,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0년 6월 24일자 1, 3면), 인터넷오마이건설뉴스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논문을 표절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126~1127 맹주석 對 프레스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김용철 책 홍보라서?"...외신기자클럽. 시끌시끌』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인 신청인이 정식 기자가 아니어서 회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p> <p>※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편집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p>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일자)

2010서울조정1128 보건복지부 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정대상	(1)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추진』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3일자 1면) (2) 『국회 위 복지부?』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4일자 10면)
신청인주장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6일자 2면)

2010서울조정1129	국도해양부 對 MBC-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멸종위기종 서식처 잇따라 발견, 뒤늦게 ‘보호’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일 21:00)
신청인주장	4대강 공사로 인해 대체서식지로 이식된 단양썩부쟁이가 대부분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멸종 위기종 단양 썩부쟁이 이식 성공’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8일 21:00)

2010서울조정1130~1131	권○○ 對 월간폴리리스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놀이터법 어린이집 큰일 났어요』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호 122~12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옥외놀이터 설치에 관한 국회의원 주최 간담회에 불참한 이유가 지지당이 다르고,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호 135면)

2010서울조정1132	1. 최○○, 2. 백○○ 對 목양신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해(害) 교단 행위자 징계 판결』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불법교단을 세웠다는 교단 산하 특별재판위원회의 잘못된 판결을 그대로 인용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4일자 2면)

2010서울조정1133~1134	강용석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다 줄 생각을 해야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7월 20일자 20면), 인터넷 중앙일보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중앙일보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8월 2일자 2면), 인터넷 중앙일보 (8월 2일자)]

2010서울조정1135~1136		강용석 對 매일경제, 매경닷컴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한나라 '성희룡발언' 강용석 제명』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0년 7월 21일자 6면), 매경닷컴 (7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매경닷컴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채된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0년 8월 2일자 2면), 매경닷컴 (8월 1일자)]	

2010경남조정54		서○○ 對 경남기독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사랑샘 공동체 17년 사역 중 최대 위기에 처해』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7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공동으로 폭행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는 목사의 변명을 여과없이 실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사랑샘공동체 목사 폭행’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8일자 3면)	

2010서울조정1137~1138		유○○ 對 한겨레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박영준 '선진연대 인맥', KB회장 선임 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6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에게 와인납품을 부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2면) ※ 조정조서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 『반론보도문』	

2010서울조정1139~1140		유○○ 對 위클리경향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선진국민연대 와인게이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7일자 13, 14, 1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에게 와인납품을 부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7일자 13면)	

2010서울조정114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對 MBN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 2.0』 프로그램 '단지 내 스포츠센터 전격 매각...주민 반발'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2일 16:10)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를 주민 몰래 졸속으로 매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1)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스포츠센터, 주민 기부금과 무관’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9일 12:00) (2) 「뉴스 2.0」 프로그램 ‘스포츠센터, 주민 기부금과 무관’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9일 18:00, 19:00)

2010경남조정55	경남영양사회 對 경남도민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아이들 남긴 밥 씻어서 재급식…』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영양사 비리를 고발하는 한 조리사의 폭로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해 영양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기사 삭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삭제, 홈페이지 외부에 조정대상기사가 게재 된 경우 삭제 요청, 부제소)
이 행 결 과	『학교 급식 비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10면)

2010서울조정1142	서울관악경찰서 對 경향신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겁도 없이, 왜 그만 글을 올리는 거야” 귀갓길 괴한 3명이 다짜고짜 주먹질』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3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에 시위 관련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내용 : 2010서울중재59 참조) ※ 이행방법 : 경향닷컴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3일자 2면)

2010서울조정1143	남경필 對 한국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인 피소사건 압수수색 영장 7차례나 각각… ‘사찰 표적’ 된 듯』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4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부인의 피소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2면) ※ 조정조서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 『알려드립니다』

2010광주조정28~29	김○○ 對 광주매일, 광주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광주매일 : 『30대 간호사 마취제 투여 자살』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6면, 이하 게재일 자 같음)

조정대상	• 광주일보 : 『우울증 30대 간호사 마취제 주사해 자살』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30대 간호사가 평소 우울증으로 마취제를 투여하여 자살했다고 보도했으나 30대 간호사는 우울증을 앓았던 사실이 전혀 없다.
처리결과	취하(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 광주매일 :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30일자 6면) • 광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7일자 3면)

2010전북조정21~22 최○○ 對 전북매일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 군산시와 시의회』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7일자 7면)
신청인주장	군산시 기술직 국장인 신청인이 건설업체가 제공한 제주도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내용: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0일자 3면)

2010서울조정1144~1145 조○○ 對 연합뉴스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1) 『‘곡성군수 후보 차량 위치추적기’ 공방』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6일자) (2) 『<격전지 곡성군수> - 불법위치추적기 쟁점』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곡성군수 선거 후보였던 신청인의 차량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신청인의 자작극이라는 상대후보의 발언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2010서울조정1146~1149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조용주 對 오마이건설뉴스,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1) 『건기연 원장… 논문 표절시비로 시끌,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0년 6월 24일자 1, 3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6월 24일자)] (2) 『조용주 원장의 절대권력에 당했다』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0년 7월 12일자 1, 3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6월 24일자)] (3) 『권기연 조용주 원장 인사 전횡 “양파껍질”』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0년 7월 19일자 1~2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구원이 직원을 부당하게 해임, 징계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인 원장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내용: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논문표절, 숙청작업… 등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0년 8월 16일자 1~2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8월 16일자)]

2010서울조정1150~116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최○○, 2. 조○○ 對 뉴시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조인스MSN, 파란, 인터넷 재경일보
--------------------------	--

조 정 대 상	(1) 『낮잠 자는 경찰 민생치안 뒷전 단속만 관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5일자, 이하 게재 일자 같음) (2) 『낮잠 자는 경찰 민생치안 뒷전 단속만 관심...강릉경찰 기강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관들이 대낮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낮잠을 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조정성립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조인스MSN · 파란 · 인터넷 재경일보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전국/강원 섹션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 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 대상기사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반론]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3일자) ※ 조정조서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 『밝혀왔습니다』

2010서울조정1168~1169	최○○對 MBC-TV, iMBC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불만제로』 프로그램 ‘수상한 청국장’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7월 21일 18:50), iMBC (7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제조하는 청국장 제품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샘플채취 등 검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삭제)

2010서울조정1170~1171	한국장류협동조합對 MBC, iMBC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불만제로』 프로그램 ‘수상한 청국장’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7월 21일 18:50), iMBC (7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청국장이 병균이 검출되는 위험한 음식이며, 끓여도 균이 사멸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BC : iMBC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BC : 조정대상보도 하단 : 『※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3일자)

2010경남조정56~57	윤○○對 고성미래신문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 “군보조금 부적절” 경남도 감사 지적』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1일자 5면)
신청인주장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남사모)에서 보조금을 부적합하게 집행하고, 남사모 회장이 주민 센터 사무실을 개인 사무실인양 사용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박보도문] ‘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0일자 4면)

2010서울조정1172	허○○ 對 오마이뉴스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미안하고 면목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일자)
신청인주장	용역회사 직원들이 이포보 고공 농성장을 방문한 천정배 의원을 막아섰다고 보도 하면서 용역 경비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15만원,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의 얼굴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각종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조정대상기사에도 반영)

2010서울조정1173~1174	(주)대상 對 데일리노컷뉴스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우리쌀 고추장 ‘묵은쌀’로 생색』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8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묵은 쌀로 고추장을 제조한다고 보도했으나, 고추장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쌀은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6일자 2면)

2010서울조정1175~1176	(주)대상 對 노컷뉴스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일본에선 사료용 쌀이 한국에선 1등 고추장 원료』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묵은 쌀로 고추장을 제조한다고 보도했으나, 고추장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쌀은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 사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각 포털사에 기사 삭제 요청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대상 청정원 우리 쌀 고추장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2010광주조정30~31	최○○ 對 함평중앙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함평군, ‘교육환경발전사업’ 졸속운영』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1면)
신청인주장	모 중학교 골프강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수업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경남조정58~59	
1. 이○○, 2. 손○○, 3. 김○○ 對 경남신문 (추후·손배청구)	
조정대상	(1) 『창원 '50억대 공장 탈취' 발각』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9일자 1면) (2) 『前대표시절 '부당대출' 화근 現대표 기업회생신청 고지에 발각될까 두려워 '탈취' 공모』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9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창원시에 소재하는 50억원대 공장을 탈취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각하려다가 발각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기사 삭제, 사과공문, PR보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 위치에서 3번째 이내에 만 3일 이상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내용이 보이도록 함,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및 유사 기사 삭제, 각 포털사의 블로그 내지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삭제, 부제소)
이행결과	『창원 50억대 공장탈취』 무혐의로 밝혀져 지점장 등 공모 사실무근으로 확인돼』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0일자 1면)

2010서울조정1177~1186	
유○○ 對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경희대 음대교수가 여학생들 상습 성희롱』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4일자 B2면) • 디지털조선일보·네이버·네이트·야후 : 『[Why] 경희대 음대교수가 여학생들 상습 성희롱』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디지털조선일보·네이버·네이트 : 각 조정성립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야후 :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조선일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디지털조선일보가 반론보도문을 포함하여 조정대상기사를 재송고하였을 경우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e-옴부즈만> 코너에 반론보도문 게시 • 네이트 : 디지털조선일보가 반론보도문을 포함하여 조정대상기사를 재송고하였을 경우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8월 14일자 B2면)·디지털조선일보·네이버·네이트·야후(8월 19일자)]

2010서울조정1187	
○○유치원 對 에럴드경제닷컴 (반론청구)	
조정대상	『유치원 마저...』 성추행 은폐시도』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유치원이 소속 운전기사가 보조교사들과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왔는데도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고양시 소재 모 유치원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0일자)

2010서울조정1188	○○유치원 對 인터넷 고양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보조교사들 “기사로부터 상습 성추행”』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유치원은 소속 보조교사가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자 보조교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내용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반론 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경기도 소재 Y유치원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9일자)

2010서울조정1189	신용석 對 연합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인천시 OCA출연금으로 국회의원 해외방문 논란』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5일자)
신청인주장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아시아 지역 스포츠 약소국 지원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여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보도내용에 의해 신청인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2010서울조정1190	신용석 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스포츠 약소국 지원금으로 ‘국회의원 외유’』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6일자 2면)
신청인주장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아시아 지역 스포츠 약소국 지원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여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3일자 2면)

2010서울조정1191	신용석 對 한국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스포츠 약소국 지원금이 관광 자금?』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2일자 18면)
신청인주장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아시아 지역 스포츠 약소국 지원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여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3일자 14면)

2010서울조정1192	경찰청 對 문화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경찰개혁' 부를 '경찰개혁안』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30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추진하는 경찰 개혁 작업 대부분이 제 식구 챙기기 위주의 자화자찬성 정책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私費' 털어가며 범인잡는 경찰』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6일자 8면)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 『알려드립니다』

2010서울조정1193~1194	강용석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7월 20일자 20면), 인터넷 중앙일보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195~1196	강용석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강용석 끝없는 거짓말... 언론중재위 문건까지 왜곡』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조정사건의 심리에서 중앙일보 측 대리인이 취재과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이며 법원에서 이를 다룰 예정으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197	김○○ 對 인터넷 중앙일보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이슈추적] 무면허 침·뜸 금지, 가까스로 합헌... 대체의학 논란』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3일자)
신청인주장	우리나라의 침 시술자가 침구사 39명과 민간자격 소지자뿐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조정대상기사와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198	오○○ 對 오마이뉴스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림산업, "물, 선식, 소금 이외 절대 안된다"』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5일자)
신청인주장	용역회사 직원들이 이포보 공공 농성장을 방문한 국회의원을 막아섰다고 보도하면서 용역 경비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30만원, 부제소)

2010서울조정1199	배○○ 對 오마이뉴스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대림산업, "물, 선식, 소금 이외 절대 안된다"』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5일자)

신청인주장	용역회사 직원들이 이포보 고공 농성장을 방문한 국회의원을 막아섰다고 보도하면서 용역 경비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30만원, 부제소)

2010서울조정1200	1. 윤○○, 2. 윤□□ 對 MBC-TV (손배청구)
조정 대상	「PD수첩」 프로그램 「심층취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 최저생계비의 그늘」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7일 23:00)
신청인주장	최저생계비를 받는 신청인 1과 그의 딸인 신청인 2의 초상 및 음성을 허락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300만원, 부제소)

2010광주조정32~33	고흥발전포럼 對 고흥타임즈 (정정·손배청구)
조정 대상	『“당풍·돈풍·소지역풍” 변화의 바람은 꺼졌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5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이상한 단체이며 선거에 개입한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기사를 전제한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광주조정34~35	정○○ 對 고흥타임즈 (정정·손배청구)
조정 대상	『“당풍·돈풍·소지역풍” 변화의 바람은 꺼졌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5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선거과정에서 모 후보만을 두둔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조정성립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취하
이행 결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6일자 4면)

2010서울조정1201	식품의약품안전청 對 서울신문 (정정청구)
조정 대상	『두 얼굴의 식약청』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식품업체의 규모에 따라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을 다르게 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취하

2010서울조정120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對 SBS-TV (정정청구)
조정 대상	(1) 「8 뉴스」 프로그램 '검사때만 종일 환기'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29일 20:00) (2) 「나이트라인」 프로그램 '검사때만 종일 환기'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30일 00:02)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전기료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승강장 환기 시간을 제한하면서도 공기질 검사기간에는 환기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대구조정17~18	1. 고○○, 2. 이○○ 對 매일신문, 인터넷 매일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관선체제 대구대 정상화 나선다』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0년 6월 16일자 2면), 인터넷 매일신문 (6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구 재단측인 신청인들이 대구대 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에조차 참여하지 않았고 대구대 운영을 파행으로 몰던 장본인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대구대 파행운영 구 재단 탓 아니다”』 제하의 보도 [매일신문 (2010년 9월 10일자 2면), 인터넷 매일신문 (9월 10일자)]

2010부산조정39	신○○ 對 부산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용호만매립지 감정가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용호만매립지 감정평가에 관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보도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03~1204	이○○ 對 BNN산업뉴스, 네이버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6만원짜리 동남아 항공권 직접 예약해 보니...』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4일자)
신청인주장	모 외국계 항공사에서 왕복 10만원대 동남아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05~1208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對 조선일보, 조선비즈닷컴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공공관리자제도’ 시작부터 삐걱』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8월 12일자 B7면), 조선비즈닷컴 (8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서울시가 제시한 업체 선정 기준을 무시하고 정비업체 선정을 위해 일방적으로 총회를 강행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조선비즈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비즈닷컴 : 초기화면 중앙상단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삭제

이행결과	『일방통행식 ‘공공관리자제도’에 주민들 반발』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9월 1일자 B7면), 조선비즈닷컴 (9월 1일자)] ※ 조정조서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민총회 관련 바로잡습니다』
------	---

2010서울조정1209~1210 김○○ 對 법보신문, 법보닷컴 (매체별 추후청구)	
조정대상	『덕해 스님 이사 취소 부당』제하의 기사 [법보신문 (2010년 9월 2일자 4면), 법보닷컴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공공금융 등의 혐의로 이사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설립자가 대법원에서 승소해 복귀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11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對 주간동아 (반론청구)	
조정대상	(1) 『의사협회 무슨 일 생겼나』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5일자 22면) (2) 『경만호 회장 1억원 횡령 의혹 갈수록 논란』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5일자 26면) (3) 『횡령 지적했다고 집단 린치, 의혹은 원초적 부실』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5일자 2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 감사가 협회장 측근인 일부 회원의 횡령을 지적하자 신청인 협회에서 거꾸로 감사를 징계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내용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다.)

2010서울조정1212~1213 맹주석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1) 『국정원, 외신기자들 감금하고 ‘천안함 안보교육’』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8일자) (2) 『국정원, 외신기자들 주입식 ‘천안함 교육’ 논란』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천안함 관련 취재차 백령도를 방문한 외신기자들이 백령도의 한 부대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국정원 안보 교육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면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기사를 제공하는 포털사에 기사 삭제 요청
이행결과	『알려드립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0일자)

2010서울조정1214 (사)한국컴퓨터판매인협회 對 아이뉴스24 (정정청구)	
조정대상	『‘펜티엄’ 아직 죽지 않았다』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펜티엄 컴퓨터의 점유율이 여전히 강세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보도이다.
처리결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경기조정85~86	
남○○對 안성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개인이 사용한 공동관정, 추가예산 집행으로 '숨통'』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8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혼자 사용해 왔다고 보도한 마을 공동관정의 규모와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안성신문닷컴 메인화면에 10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시,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뜨도록 함)
이행결과	『'도화마을 농업용 공동관정'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안성신문 (2010년 9월 10일자, 2010년 8월 25일자 5면), 안성신문닷컴 (8월 24일자)]

2010경기조정87	
학교법인 영석학원對 경인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의정부 영석학원, 전횡비리 해결은 뒷전 "학교매각 추진 의혹"』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9일자 2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원의 전횡비리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매각을 추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인터넷 경인일보메인화면에 7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뜨도록 함)
이행결과	『'의정부 영석학원...학교매각 추진 의혹' 보도관련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0년 8월 31일자 2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31일자)]

2010경남조정60~61	
학교법인 한미학원(경남대학교)對 창원일보.com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경남대=돈에 눈먼 학교』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0일자 5면)
신청인주장	경남대학교에서 철학, 사회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해 학생들과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돈에 눈먼 학교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게재, 조정액 660만원, 사과공문, 부제소)
이행결과	『경남대 관련 오보 사과드립니다 - 사회학·철학과 전공 폐지 기사는 사실과 달라』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6일자 1면)

2010대전조정33~34	
박○○對 당진시대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석유리 국유지 교환과정 특혜 의혹』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국유지 교환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 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정대상 기사를 송고한 포털사에 기사 삭제 요청

2010서울조정1215	
동양산업(주)對 SBS-TV (정정청구)	
조정대상	『뉴스추적』 프로그램 '불법석유가 판친다'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11일 23:0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해상 주유소가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관련 화면을 배경화면으로 사용, 화면 좌측 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표시, 화면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뉴스추적」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일 23:05)

2010서울조정1216	최○○對 목양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각서에 같음하는 사과문』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7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를 실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은 광고이므로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경기조정88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2. 박형우 對 인천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구민섬기겠다더니 폭언·협박』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6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해 살피던 중 항의하는 노인 및 주민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수해현장을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박형우 계양구청장, 수행비서 막말 구설” 본보 8월 16일자 11면 보도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3일자 2면)

2010서울조정1217~1218	김○○對 M.net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슈퍼스타K 시즌2』 프로그램 ‘제4회’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13일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오디션 응시 장면을 왜곡 편집하여 보도하는 등 신청인을 희화화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자막수정, 부제소)

2010대전조정35~36	금산문태권도협회 對 금산신문, 금산진악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신문 : 『하나더 나눔가게 11~13호점 탄생』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5일자 2면) • 금산진악신문 : 『하나더 나눔가게 11~13호점 탄생』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5일자 1면)
신청인주장	기사에 언급된 체육관들이 신청인 협회 소속이라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협회 소속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 금산진악신문 :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5일자 1면)

2010광주조정36	화순군 對 디지털화순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유통회사 동면 설립 재고 바래』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지자체가 유통회사를 화순군 동면 대포리 일원에 설립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행방법 : 사회면에 14일간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화순군, 유통회사 관련 반론보도 - 본사 8월 12일자 “유통회사 동면 설립 재고 바래”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2010광주조정37	산이농협 對 전남매일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해남 산이농협 공사 불법하도급 ‘말뽕’』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7일자 8면)
신청인주장	해남 산이농협이 무면허업자에게 공사를 불법 하도급하여 말뽕이 일고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산이농협 불법 하도급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8면)

2010서울조정1219	증산존치정비제3구역주민자율단합준비위원회 對 코리아리포스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한실장과의 인터뷰] 3곳의 가칭추진위 통합 ‘신뢰’ 라는 쾌속정 타다』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6일자 20면)
신청인주장	증산뉴타운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신청인 준비위원회가 다른 준비위원회에 통합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0일자 2면)

2010서울조정1220, 1223~1226	우제창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공천 전 지역구 의원이 지자체 인사 좌우해서야』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0년 8월 17일자 1면), 세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보좌관들에 대한 인사발령 요구 등을 포함해 용인시장에게 인사외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세계닷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조정대상기사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처 리 결 과	• 네이버·네이트·다음 : 세계닷컴이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정정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0년 9월 10일자 2면), 세계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 (9월 9일자)]

2010서울조정1221, 1227~1230	홍○○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공천 전 지역구 의원이 지자체 인사 좌우해서야』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0년 8월 17일자 1면), 세계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우제창 국회의원이 신청인에 대한 인사발령 요구 등을 포함해 용인시장에게 인사 외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2010서울조정1220, 1223~1226처리결과 참조
이 행 결 과	2010서울조정1220, 1223~1226이행결과 참조

2010서울조정1222, 1231~1234	조○○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공천 전 지역구 의원이 지자체 인사 좌우해서야』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0년 8월 17일자 1면), 세계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우제창 국회의원이 신청인에 대한 인사발령 요구 등을 포함해 용인시장에게 인사 외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2010서울조정1220, 1223~1226처리결과 참조
이 행 결 과	2010서울조정1220, 1223~1226이행결과 참조

2010서울조정1235, 1248~1251	박○○ 對 노컷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김미화, “왜 나만 좌파 의혹을 받아야 하나”』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김미화, 1992년부터 盧와 손잡고 정치참여> 제하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미화씨의 인터뷰로 인해 위 기사를 작성한 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36, 1252~1253	박○○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네이버, 다음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김미화 “연예인 평가르기 바람직하지 않다”』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김미화, 1992년부터 盧와 손잡고 정치참여〉 제하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미화씨의 인터뷰로 인해 위 기사를 작성한 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기각결정 (사유: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37, 1254~1255	박○○ 對 스포츠서울TV(SSTV), 네이버, 다음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김미화 “내가 왜 ‘좌파’ 가 되어야 하는가? 심경토로』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방송인 김미화씨의 인터뷰를 인용,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조정대상기사의 보도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신청인이 쓴 기사와 배치되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반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0서울조정1238, 1256~1258	박○○ 對 오마이뉴스, 네이버, 다음, 야후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좌파? 승리 확산』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방송인 김미화씨의 인터뷰를 인용,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조정대상기사의 보도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신청인이 쓴 기사와 배치되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반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0서울조정1239, 1247, 1259~1261	박○○ 對 한겨레닷컴, 한겨레, 네이버, 다음, 야후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코미디언 슬프게 하는 사회가 서럽고 슬프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닷컴 · 네이버 · 다음 · 야후 (2010년 7월 19일자), 한겨레 (7월 20일자 4면)]
신청인주장	방송인 김미화씨의 인터뷰를 인용,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기각결정 (사유: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광주조정38	영광군 對 호남중앙매일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불법매립 앞장선 영광군』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영광군이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2010년 9월 7일자 2면)

2010전북조정23~26	유○○○ 對 전북중앙신문,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중앙신문: 『익산 ESCO사업 짜고친 고스톱』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9일자 7면)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익산 ESCO부당처리 담당자 징계』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익산시 공무원인 신청인이 '익산시 보안등 교체사업' 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각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홈페이지 뉴스/사회 섹션에 1일간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중앙신문: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3일자 6면)

2010서울조정1240~1241	삼은개발주식회사 對 한겨레닷컴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성미산 하청직원 '전기톱 난동』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직원이 성미산 지역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만취상태에서 전기톱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취하

2010서울조정1242~1243	심○○○ 對 연합경찰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이단연구가 최삼경 목사 비난인사 무더기 처벌』 (2010년 7월 24일자 7면)
신청인주장	최삼경 목사가 신청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으나, 고양지청은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7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이행결과	『[알려드립니다] 70여차례 고소건 모두 승소』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30일~10월 14일자 1면)

2010서울조정1244~1245	뮤즈심포니오케스트라 對 문화저널21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음악적 소통 아쉬웠던 가족 콘서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오케스트라가 공연한 가족 콘서트에서 지휘자와 연주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기사는 음악전문기자가 신청인의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작성한 기사로 정정·손배청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2010경기조정89	상록요양원 對 경기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요양병원 관리 소홀 감염 노출』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4일자 19면) (2) 『치매환자 보호자 동의없이 손뿔어』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9일자 19면) (3) 『"근무대처비 일부 횡령" 제기』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0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요양원이 요양보호사 정원 수를 허위로 조작하고, 요양원 시설 및 환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간 게시, 부제소)
이 행 결 과	『화성 S노인 요양원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7일자 16면)

2010강원조정12	이○○ 對 강릉MBC-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콘도 반환금 청구배짱 고객만 피해’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18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고 음성변조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음성 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영상 중 신청인의 음성 부분 삭제

2010서울조정1246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삼성 보도 누락 파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삼성쪽 전화를 받은 뒤 삼성의 노조 설립과 관련한 보도를 <뉴스데스크>에서 누락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명백한 허위보도이므로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행방법 : 홈페이지 미디어면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표시되도록 함

2010서울조정1262	박영준 對 한겨레21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박영준 사조직'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5일자 34~3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여 사조직처럼 활용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1일자 10면)

2010경기조정90	광명시 對 인천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공무원 품위손상’ 구설』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시의 한 공무원이 현 시장을 위해 지난 선거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신청인 시에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7일자 2면)

2010서울조정1263~1264	(주)장생모 對 KBS-1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광장」 프로그램 ‘탈모 방지 샴푸, 알고보니 ‘가짜’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0일 07:30) (2) 「뉴스9」 프로그램 ‘탈모 방지 샴푸, 알고보니 ‘가짜’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19일 21:3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무허가 샴푸를 기존의 자사 제품인 것 처럼 판매하여 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65	최○○ 對 KBS-1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말로만 명문 놀이방...부실급식에 폐업’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4일 21:00)
신청인주장	유치원 교사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300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공익적인 보도이고 신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발언이 아니어서 음성변조하지 않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66	주식회사알앤엘바이오 對 KBS-1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줄기세포 화장품’ 제하의 보도 (2010년 6월 4일 22: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의 줄기세포 화장품이 주름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프로그램 말미에 스튜디오 멘트 형식으로 방송,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8일 22:00)

2010서울조정1267	국가정보원 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정원의 ‘정치사찰 망명’을 부활시킨 건 누군가?』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7일자 31면)

신청인주장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원장 취임 뒤 정부부처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활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0일자 2면)

2010서울조정1268~1269	동선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對 SBS-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8시 뉴스』 프로그램 '사랑으로 지킨 한옥...파란 눈의 한옥지킴이'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6일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추진 중인 동소문동 재개발계획을 서울시가 최종 취소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재개발계획취소가 아닌 정비구역지정취소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 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을 배경화면으로 하여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SBS에 반론보도 영상을 게시하여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이 행 결 과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동소문동 재개발 취소, 사실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24일 06:00)

2010대구조정19~20	고○○ 對 영남일보, 인터넷 영남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일보 : 『대구대 '옛재단 복귀' 돌발변수』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6일자 1면) • 인터넷 영남일보 : 『정부 사립대 '옛재단 복귀' 허용...대구대 정상화 돌발 변수로』 제하의 기사 (7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대 관계자인 신청인들이 학교 운영을 파행으로 몰던 장본인들이었으며, 대구대 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에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 영남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5일자 2면)

2010부산조정40~41	남○○ 對 경상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학생 훈계하는 경찰에 "욕하지 말고 타이르세요" 참견했다가』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부산조정42~4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광역시지부 對 부산MBC-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상이군경회 외압의 실체는 청와대’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6일 21:30)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지하철청소용역사업 횡령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에 외압을 행사하도록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확인을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도하였으므로 정정보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70~1271		김○○ 對 일요서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올림픽대로 옥외광고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9일자 10~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정치권의 비호를 받아 옥외광고사업권을 낙찰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수주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옥외광고사업 로비 의혹’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3일자 5면)	

2010강원조정13		춘천경찰서 對 춘천KBS-1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청장을 위한 의경배치?’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3일 21:39)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출근시간에 의무경찰을 배치한 이유를 경찰청장의 출근 편의를 위함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 처리	
이 행 결 과	『뉴스9』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6일 21:40)	

2010서울조정127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對 수산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빛진 사람이 세간 늘리고 잔치나 하고 있어서야...』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6일자 1면)	
신청인주장	공적자금을 쓰고있는 신청인 단체가 직원들 직급을 필요 이상으로 올려 배치하는 등 방만 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1면)	

2010서울조정1273~1275		김○○ 對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오마이뉴스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디지털조선일보 : 『상습구타 해직 코치, 다시 직원으로 채용한 高校』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8월 27일자 A12면), 디지털조선일보 8월 27일자] • 오마이뉴스 : 『코치가 때려 기절...쇠뿔등이로도 맞았다』 제하의 기사 (8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중고교 복싱부 코치인 신청인이 체벌성 훈련과 상습적 구타로 해임됐으나 교직원으로 복직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디지털조선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오마이뉴스 : 취하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조선일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6일자 2면), • 디지털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지난 8월 27일자 '상습구타 해직 코치, 다시 직원으로 채용한 高校' 제하의 기사』 제하의 기사 (9월 16일자)

2010광주조정39	(유)남해환경 對 광남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무안군 건설폐기물 관리감독 '구멍'』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9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아적해 놓은 순환골재에서 토사가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광주조정40~41	마○○ 對 전광일보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1) 『순천 모여고 부교재 불법판매 '말뽕'』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4일자 5면) (2) 『전남도교육청 "나물라라" 늦장행정 '말뽕'』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9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수업교재를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문 게재, 조정액 15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결정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

2010제주조정45~46	(주)송이산업 對 제주KBS-2TV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뉴스타임』 프로그램 '송이' 특정업체 상표 등록 안돼'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일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송이' 명칭에 대한 상표 독점사용이 문제가 있다는 제주도 의회 의원의 말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타임> 제주참여 시간에 신청인 업체를 배경으로 하여 반론보도문 보도,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
이 행 결 과	『뉴스타임』 프로그램 '송이 상표 독점 사용 문제 제기 부적절'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7일 20:00)

2010서울조정1276~1278 장○○ 對 뉴시스, 의정부인터넷뉴스, 인터넷 재경일보 (매체별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검찰, 포천경찰서 경찰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혐의가 없는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가려다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인터넷 재경일보 :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61~62 참조)] • 의정부인터넷뉴스 : 취하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전국-경기북부'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 인터넷 재경일보 : '정치-사회'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포천경찰서 경찰, 직무유기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2010서울조정1279 1. 대한아미튜어복싱연맹, 2. 유○○ 對 연합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국제복싱연맹 "한국 회원 자격 박탈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1일자)
신청인주장	국제복싱연맹 소집행위위원회가 신청인 연맹이 새집행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경남조정62~63 1. 안○○, 2. 박○○ 對 경남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죽은 남편 안 보이고 보험금만 보이냐』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과로사한 전 남편의 장례식에는 관심이 없고 보험금만 수령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중재액 300만원, 부제소 (2010경남중재1 참조)] ※ 이행방법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최소 3일간 중앙 최상단에서 5번째 이내 위치에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 외부 인터넷 게시판, 포털 블로그 등에 전래된 조정대상기사는 삭제 조치
이 행 결 과	『'이혼한 아내' 오보 사과드립니다 - 장례식 불참 · 보험금 수령 등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1면)

2010서울조정1280~1281 권○○ 對 SBS-TV (반론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출발! 모닝와이트』 프로그램 '대낮 주택가 사망사건, 도대체 왜?'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30일 07:4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형이 살해당한 이유가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큰 확성기 소음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0전북조정27	강○○對 군산뉴스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강간치상혐의 만기출소 50대, 친누나강간』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 조정액 50만원, 부제소)

2010전북조정28	강○○對 군산미래신문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50대, 친누나성폭행 긴급체포』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 조정액 50만원, 부제소)

2010광주조정42~43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對 광주KBS-1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과도한 공무집행 ‘물의’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7일 21:00)
신청인주장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가 취객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취객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보도내용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정정·손배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광주조정44	화순군對 디지털화순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통화내역 제출 요구는 인권유린』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1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 군수가 검찰 수사중인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특정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사회면에 14일간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통화내역 제출요구는 인권유린” 관련 정정』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 『정정보도문』

2010대구조정21	최○○對 대구KBS-1TV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미신고집회 단체대표 벌금형’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2일 07:30)

신청인주장	장애인단체 대표인 신청인이 미신고집회 개최 및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으나, 항소한 상태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충북조정19~20	대원리 마을회 산촌추진위원회 對 CJB-TV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종합뉴스』 프로그램 ‘부실논란 비닐하우스’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3일 20:25)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종합뉴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6일 20:09)

2010전북조정29	임실군 對 임실뉴스 (정정청구)
조정대상	(1) 『청소년사업 특혜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1면) (2) 『[사설] 강군수 황당한 협약체결 당장 취소해야 마땅하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임실군이 사업능력이 부족한 전주YMCA와 청소년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합의)
이행결과	『임실군과 전주 YMCA간 협약은 무효』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7일자)

2010대구조정22	(주)동양건설 對 경도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돈 줄때면 입다무는 공기업의 ‘황포’』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며 불법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8일자 2면)

2010서울조정1282	강○○ 對 건설교통환경신문 (정정청구)
조정대상	『개별화물 공제조합 설립, “왜 안되고 있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모 광역시 개별화물협회 단체장인 신청인이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개별화물의 공제조합 설립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개별화물 공제조합 설립, 아노디는 이유” 취재 결과 사실과 달라 오보』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사회면)

2010서울조정1283	장○○ 對 인터넷 의정부신문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포천경찰,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혐의가 없는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가려다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부제소 (2010서울중재62 참조)] ※이행방법 : 의정부신문 사회면에 추후보도문 게재, 인터넷 의정부신문에 3일 이내로 추후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포천경찰서 장 경장 직무유기 등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4일자)

2010서울조정1284	한국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 對 데일리안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금투협 노조의 법적대응 “사측 길들이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타임오프제 도입 이전의 노조 전임자수 유지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사측을 길들이기 위해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문제로 삼는 조정대상기사의 쟁점들 중 일부는 충분한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보도한 것이므로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이 형사고소하였으므로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

2010서울조정1285	한국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 對 인터넷 프라임경제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금투협 사태’ 황건호 회장 독심 통할까?』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타임오프제 도입 이전의 노조 전임자수 유지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사측을 길들이기 위해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금투협 노조 “노조기금 아닌 합법적 임대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6일자)

2010강원조정14	후평3동주민센터 외 14인 對 춘천MBC-R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딱따구리」 프로그램 ‘춘천월드레저총회와 경기대회가 열흘앞으로...’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18일 08:30)
신청인주장	춘천시 모 주민센터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월드레저총회 현수막을 부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강제적인 참여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명, 부제소)

2010서울조정1286~1287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對 내외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전국에서 배짱 제일 좋은 남원시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2일자 11면)
신청인주장	태풍 ‘덴무’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 대다수의 직원들이 잠을 자느라 재난상황실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88	신상진 對 한겨레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기고 담뱃값 인상이 최선의 금연정책이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4일자 2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흡연자의 표를 의식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담배회사의 로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고문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289~1290	강○○ 對 EBS-TV, 인터넷EBS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EBS 뉴스」 프로그램 ‘선거법 개정이 대안’ 제하의 보도 [EBS-TV (2010년 6월 7일 20:30), 인터넷EBS (6월 7일자)] (2) 「EBS 10시뉴스」 프로그램 ‘선거법 개정이 대안’ 제하의 보도 [EBS-TV (2010년 6월 7일 22:00), 인터넷EBS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대학생인 신청인이 교육감 선거에 무지한 것처럼 인터뷰를 왜곡 편집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20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결정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

2010경기조정91~94	광명시 對 광명지역신문,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보금자리에 대규모 군사타운이 웬말?』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2일자 1면) (2) 『힘 있는 척한다고 힘이 생기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2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군사타운이 조성될 것이라는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함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 메인화면에 14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이후 보도된 날짜와 지면에 계속 게시

이행결과	『군사타운 보도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광명지역신문 (2010년 10월 13일자 1면),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10월 1일자)]
2010광주조정45	1. (유)남애환경, 2. (유)서부환경, 3. (주)동양환경 對 광남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무안군 건설폐기물 관리감독 ‘구멍’』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9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아적해 놓은 순환골재에서 토사가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행방법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행결과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일자 12면)
2010전북조정30	송천제일지역주택조합 對 전북도민일보 (반론청구)
조정대상	(1) 『송천제일주택조합 아파트 파행우려』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일자 7면) (2) 『송천 제일지역조합 아파트 서희건설 시공』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6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아파트 신축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어 파행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행결과	『송천제일주택조합 암투 말도 안된다』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7일자 7면)
2010서울조정1291~1292	문○○ 對 KBS-1TV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1) 「뉴스9」 프로그램 ‘아파트형 공장에 웬 음식점’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3일 21:00) (2) 「뉴스라인」 프로그램 ‘말뿐인 아파트형 공장’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3일 23:00) (3) 「뉴스광장」 프로그램 ‘亞 최대 아파트형 공장’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4일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산업단지로 지정된 아파트형 공장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용도 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영업 중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손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293	대통령실 對 내일신문 (정정청구)
조정대상	『신한사태 출발점 청와대 와있나』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사장을 고소한 소위 ‘신한사태’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신한금융사태 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5일자 11면) ※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 『신한금융사태 관련 정정보도문』

2010부산조정44~47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對 국제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1) 『사하복지관, 후원금 미지급 다반사』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8면) (2) 『[사설] 잇단 복지관 비리, 철저한 감독으로 원천차단을』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4일자 3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결연 후원금과 물품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9일자 10면)

2010전북조정31~32	양○○ 對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정대상	『학교폭력 관련 분쟁 갈수록 늘고 복잡 전담 조정기구 설치 급하다』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0년 6월 17일자 6면), 인터넷 전북일보 (6월 16일자)]
신청인주장	학교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측이 가해자측에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와 관련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정보도 해 줄 것을 원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광주조정46	화순군 對 인터넷 화순미래뉴스 (정정청구)
조정대상	『꿈수 쓰다 들킨 행정』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0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의 고교 수업료 전액 지원사업이 변칙행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보도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대구조정23	(주)청약씨앤디 對 경북매일 (정정청구)
조정대상	『경북도, '이스트힐' 불법적발땀 조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허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골프장 사업인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행결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1294~1297	한국교육방송공사 對 SBS-TV, SBSi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8시 뉴스』 프로그램 'EBS의 황포... 수능 교재로 돈벌이 '급급'』 제하의 보도 [SBS-TV (2010년 9월 6일 20:00), SBSi (9월 6일자)]
신청인주장	EBS가 일반 도매상에는 수능교재 공급조건을 까다롭게 한 반면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점에는 물량을 몰아주는 등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보도문 보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 • SBSi :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4일 이내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2일 20:00) • SBSi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2010서울조정1298~130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對 한국일보 (1298~1299 정정 · 손배청구), 인터넷 한국일보 (1300 정정청구), 네이버 (1301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산사하복지관 장기간 파행』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0년 9월 9일자 30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결연 후원금과 물품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 취하 • 인터넷 한국일보 · 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302~1304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對 한국모바일방송 (1302~1303 정정 · 손배청구), 다음 (1304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보다 개인착복에 급급?』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결연 후원금과 물품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함의)
이 행 결 과	『[반론]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30일자)

2010서울조정1305~1314, 1319~1324	이○○ 對 스포츠조선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디지털조선일보,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제작진이 밝히는 '화성인 바이러스' 비하인드 스토리』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했던 신청인이 일본 AV를 찍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기사삭제)

2010서울조정1315~1318	이○○ 對 인터넷일요신문, 다음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한국 연예인 일본 AV업계 진출 소문과 진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했던 신청인이 일본 AV를 찍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325~1330	이○○ 對 쿠파뉴스,네이버,네이트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어? 케이블에서 봤는데?』 공주병女 일 AV에 출연』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4일자)
신청인주장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했던 신청인이 일본 AV를 찍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331~1337	재단법인 바보의 뇌능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한국 천주교, 부정·불의 외면...공범자적 삶 살고 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8월 18일자 5면), 한겨레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드림위즈·파란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고 김수환 추기경 기념재단인 신청인 단체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겨레닷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 기사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네이트·다음·파란 : 한겨레닷컴이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 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정정보도문 게재 • 드림위즈 : 한겨레닷컴이 전송해오는 정정보도문을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8일자 2면) • 한겨레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드림위즈·파란 : 『10월 8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8일자)

2010서울조정1338	1. 강○○, 2. 한○○ 對 도시개발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8일자 3면)
신청인주장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의 임원인 신청인들이 한국감정원과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함께 일본에 관광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 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제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2일자 5면)

2010서울조정1339~1345	박○○ 對 뉴시스, 네이트, 네이버, 조인스MSN,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의정부, 한나라당 위원장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2010년 4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의정부 시청 출입기자들이 신청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63~69 참조)]

처 리 결 과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국-경기북부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 네이트·네이버·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뉴스섹션에서 추후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추후보도문 게재 • 조인스MSN·드림위즈·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뉴스섹션에서 추후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의정부를 위원장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4일자)

2010서울조정1346~1347	박○○對 인터넷 신아일보, 다음 (매체별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한나라당 의정부를 당원協 위원장 피소』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의정부 시청 출입기자들이 신청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의정부를 한나라당 위원장 명예훼손 피소건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5일자)

2010서울조정1348~1349	박○○對 경원일보, 다음 (매체별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의정부시청 지방신문 출입기자단 24명 현역 당협위원장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의정부 시청 출입기자들이 신청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박인균 당협위원장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4일자)

2010서울조정1350~1351	박○○對 경원일보, 다음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p>(1) 『의정부 한나라당 을구 공천잡음, 김효열 의원 탈당, 무소속 출마선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6일자)</p> <p>(2) 『의정부 시의회 김효열 의원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비판 성명 내고 탈당』 제하의 보도 (2010년 4월 13일자)</p>
신청인주장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를 공천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인 신청인이 재산없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박인균 당협위원장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4일자)

2010서울조정1352~1353	박○○對 의정부신문, 인터넷 의정부신문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김효열 의정부시의원 한나라당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 [의정부신문 (2010년 4월 15일자 1면), 인터넷 의정부신문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를 공천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인 신청인이 재산없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70~73 참조)] ※ 이행방법 • 인터넷 의정부신문 :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행 결과	『박인균 당협위원장에 대한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의정부신문 (2010년 10월 1~13일자 5면), 인터넷 의정부신문 (10월 2일자)]

2010서울조정1354 박○○ 對 인터넷 북경기신문 (반론청구)	
조정 대상	『김효열 시의원, 한나라당 탈당』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를 공천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인 신청인이 재산없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치면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 검색시 함께 표시되도록 함
이행 결과	『박인균 위원장 반론보도(김효열 전 시의원 탈당성명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1일자)

2010서울조정1355 박○○ 對 인터넷 경기북부시민신문 (반론청구)	
조정 대상	『김효열 의원 한나라당 탈당』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를 공천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인 신청인이 재산없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행 결과	조정대상보도 하단 『위 기사에 대해 박인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2010서울조정1356~1358 박○○ 對 지뉴스코리아 (정정·반론·추후청구)	
조정 대상	(1) 『의정부 한나라를 지역구 “시골시골”』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8일자) (2) 『한나라 의정부(을)구 B위원장 고소』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를 공천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인 신청인이 재산없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취하

2010서울조정1359~1360	김○○對 인터넷 아시아경제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지차체, 또 ‘보궐선거’ 하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평택시 시장인 신청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승진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에 3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를 송고한 각 포털사이트에 대한 정정보도문 송고, 정정보도문은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사회] ‘지차체, 또 보궐선거하나?’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7일자)

2010서울조정1361	고○○對 동아일보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백화점 ‘5만원권 쇼핑 효과’ 에 웃는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1일자 B3면)
신청인주장	백화점에서 쇼핑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50만원, 부제소)

2010서울조정1362	권오진對 연합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내 땅으로 다니지마’ ...경기도의원, 마을 도로 폐쇄』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경기도의원인 신청인이 마을주민과 소방차가 이용하는 도로를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폐쇄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내 땅으로 다니지마’ 경기도의원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6일자)

2010경기조정95	정상운對 중부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성결대 총장선거 ‘돈 봉투 오갔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0일자 2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총장 선출과정에서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인터넷 중부일보 사회면에 7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이후 반론보도문이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일보 : 『“성결대 총장선거 돈봉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자 2면) • 인터넷 중부일보 : 『성결대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자)

2010경기조정96	1. 중앙동발전협의회, 2. 정○○對 반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돼지석상 업체에게 받은 ‘돈’!』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9일자 4면) (2) 『4백만원 받아... 각종 의혹 일어 ‘파문’』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9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돼지석상 설치 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한 동기와 목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광주조정47	화순군 對 디지털화순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의원들이 모를거라고? 호도하지 마라』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의 정부표창은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에 의한 공로가 아니라 단순한 환경 개선 때문이라는 문행주 군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 보도이다.)

2010광주조정48	화순군 對 인터넷 화순미래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꿈수 쓰다 들킨 행정』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0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의 정부표창은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에 의한 공로가 아니라 단순한 환경 개선 때문이라는 문행주 군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초기화면 상단으로부터 5번째에 7일간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 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1일자)

2010광주조정49~50	파인뉴스 對 인터넷 화순미래뉴스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추석특집> 귀성객들에게 추석 선물하는 화순지역신문』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허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대전조정37~40	김○○ 對 충청세종신문, 충청세종신문닷컴 (매체별 반론·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특수임무수행자 연가지회, 비하발언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 [충청세종신문 (2010년 9월 20일자 1면), 충청세종신문닷컴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군의원인 신청인이 행정사무감사 중 특정단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 게재, 이후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반론 보도문 배치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세종신문 (2010년 10월 18일자 1면), 충청세종신문닷컴 (10월 18일자)]

2010경기조정97		권오진 對 용인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진정 시민위한 공직자인가? ‘놀부심보 도의원’』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의 일부 중 자신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폐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유지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경남조정64~65		1. 함안군 배드민턴연합회, 2. 윤○○ 對 함안정통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생활체육대축전 제9회 함안군수기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 개최식 없는 대회행사 예년비해 분위기 ‘썰렁’』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6일자 2면)	
신청인주장	중재위 조정으로 배드민턴대회에 대해 PR보도를 해주기로 했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썰렁했다면서 왜곡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5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결정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결정문에 부제소 조항에 관한 문구도 삽입해야 한다.) 	
이 행 결 과	『함안군수기배 배드민턴대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2면)	

2010서울조정1363		정○○ 對 디지털조선일보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여자친구와 잠자리 장면’ 담은 하드디스크 분실...전문직 A씨의 ‘절망’』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인터넷 음란동영상 유포 경로 및 접근방법 등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로 신청인의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경남조정66~67		김○○ 對 경남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우리한 작업하다 숨졌으니 과로사』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4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다 죽은 직원에 대해 언론에 과로사라고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과로사 논란’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8일자 4면)	

2010전북조정33~34		1. (주)새만금관광개발, 2. 정○○ 對 새전북신문 (정정·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신시도 휴게단지 개발사업에 뼈격』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2) 『농어촌공사 공모절차 의문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1. 신청인1.이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 출자자 변경 과정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신청인주장	2. 신청인2.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새만금관광개발에 취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1일자 2면)

2010경기조정98	인천항만공사對 경기일보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IPA ‘성과급 돈잔치’ 논총』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상후하박’을 적용, 차등 지급하여 논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IPA 경영평가 성과급’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6일자 6면)

2010경기조정99~100	정○○외20인對 하나로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양평 벽산 블루밍 APT 준공 검사 ‘난항’』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8~24일자 1면) (2) 『[사실] 양평 블루밍아파트 준공승인 서둘러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8~24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투기와 전매로 아파트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양평 벽산 블루밍APT준공” 보도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4일자 1면)

2010서울조정1364	(주)메드온對 메디게이트뉴스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의료기기 공동구매, 너무 싸면 사기 의심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의사 아이디를 도용하여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공동 구매를 추진한 후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PR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1365~1367	윤○○對 KBS-1TV, KBS-2TV, KBSi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생생정보통』 프로그램 ‘보험 지급액 적어 자살소동’ 제하의 보도 [KBS-2TV (2010년 8월 26일 19:10), KBSi (8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교통사고 보험금이 적다는 이유로 자살소동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각하 (사유 : 조정대상보도가 보도된 바 없다.) • KBS-2TV · KBSi :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이다.)
---------	---

2010서울조정1368~1372	윤○○對 YTN, 인터넷 와이티엔, 연합뉴스, 노컷뉴스, 한경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뉴스현장』 프로그램 ‘‘보험금 적다...50대 남자 자살 소동』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6일 11:00) • 인터넷와이티엔 : 『‘보험금 적다’...50대 남자 자살 소동』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6일자) • 연합뉴스 · 노컷뉴스 · 한경닷컴 : 『“보험 지급액 적다”.. 안양서 50대 자살소동』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교통사고 보험금이 적다는 이유로 자살소동을 벌였다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인터넷와이티엔 · 노컷뉴스 · 한경닷컴 : 각 취하 • 연합뉴스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광주조정51	영암군금정면자율방재단對 영암군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자율방재단, 태풍 오는데 중국행』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0일자 5면)
신청인주장	영암군 금정면 자율방재단이 태풍에도 불구하고 외유를 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광주조정52	영암군對 영암군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군수 사죄 · 사업 재검토 등 요구』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영암군이 허위로 예산편성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5일자 2면)

2010광주조정53, 61	화순군對 인터넷 화순미래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화순 하니움은 권력의 상징』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6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이 하니움 체육관 사용 관련, 행사 하루 전에 사용금지 통보를 하는 등 행사 주최 측에 큰 피해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p> <p>※ 이행방법 : 초기화면 상단으로부터 5번째에 7일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표시되게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p>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2010광주조정54	신안군 對 남도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신안군, 예산 집행 ‘제멋대로’』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도로포장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6면)

2010부산조정48~49	도시안(주) 對 KNN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아이」 프로그램 ‘씨클라우드호텔 사기 분양’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12일 20:30)
신청인주장	신청인 호텔이 사기분양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해운대 레지던스 호텔 경영호조’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30일 07:40)

2010서울조정1373~1374	이○○ 對 KBS-1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수해 중 골프 의혹’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1일 21:25) (2) 「뉴스라인」 프로그램 ‘수해 중 골프 의혹’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1일 23:07) (3) 「뉴스광장」 프로그램 ‘수해 중 골프 의혹’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일 06:30)
신청인주장	소방방재청 차장인 신청인이 대구세계소방환경기대회 공식일정에 불참하고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부산조정50~53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재단 對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복지법인 총체적비리 부산시, 6곳 형사고발』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0년 10월 6일자 1면), 인터넷국제신문 (10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재단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없이 무상으로 임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375~1376	5·18실체규명위원회 對 광주KBS-1TV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북한이 배후라고?’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9일 20:00) (2) 「뉴스9」 프로그램 ‘북한이 배후라고?’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9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를 극우단체라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 방송,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5·18 실체규명위원회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9일 20:00)

2010서울조정1377~1392	5·18실체규명위원회 對 연합뉴스, 다음, 아후, 매경닷컴, 이타임즈, 로지아이닷컴, 디지털조선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5·18 북한배후설’ 극우단체-5·18 단체 몸싸움』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를 극우단체라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5·18실체규명위원회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0일자)

2010광주조정55~56	5·18실체규명위원회 對 무등일보 (반론·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북 개입’ 극우단체-5월단체 충돌』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2일자 5면)
신청인주장	5.18실체규명위원회가 극우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손배청구 : 취하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6면)

2010광주조정57~58	5·18실체규명위원회 對 KBC-TV (반론·손배청구)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5·18단체와 극우단체 충돌’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9일 20:00)
신청인주장	5.18실체규명위원회가 극우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손배청구 : 취하 ※ 이행방법 :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저녁뉴스』 프로그램 ‘5·18 실체규명위원회 본격 활동 나서’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9일 17:00)

2010광주조정59~60	5·18실체규명위원회 對 광주불교방송(광주BBS-R) (반론·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7시 뉴스』 프로그램 ‘극우인사와 5·18단 회원 충돌’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9일 17:00)
신청인주장	5.18실체규명위원회가 극우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손배청구 : 취하 ※ 이행방법 : 라디오 <17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 보도,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이 행 결 과	「17시 뉴스」 프로그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6일 17:00)

2010서울조정1393~1394	고○○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대구대 학원갈등 “이제 그만”』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0년 7월 28일자 10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27일자)]
신청인주장	대구대 전 이사였던 신청인에게 학내분규와 갈등의 책임이 있고 학원정상화추진위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인터넷 한국일보 :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24시간 이상 게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0년 10월 25일자 16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24일자)]

2010충북조정21~22	영동지음관리공동체영어조합對 청주MBC-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다슬기 싹쓸이’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9일 21:35)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소속 어민이 불법으로 다슬기를 채취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충북조정23~24	배○○對 청주MBC-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다슬기 싹쓸이’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19일 21:3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 소속 어민이 불법으로 다슬기를 채취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광주조정62~63	파인뉴스對 인터넷 화순미래뉴스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민.관 연쇄공격 막아낸 양심언론』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조정과정에서 패소결정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손배청구 : 취하 ※이행방법 : 초기화면 상단으로부터 5번째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9일자)

2010광주조정64	신안군 對 전광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신안군 정신행정 의혹 확산』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 정신행정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

2010광주조정65~66	1. 임○○, 2. 영농조합법인 맑은꽃이쁜꽃야생화 對 전광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곡성군 농가 보조금은 눈먼 돈』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에게 지급된 농가보조금이 잘못 사용되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395~1396	중소기업중앙회 對 일요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불공정 행태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0일자 14~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이익보다는 현 집행부의 기득권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중소기업중앙회 관련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31일자 13면)

2010서울조정1397~1398	중소기업중앙회 對 일요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뻘뻘하게 보니까 진짜 수상하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0일자 10~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이익보다는 현 집행부의 기득권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로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중소기업중앙회 관련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7일자 3면)

2010서울조정1399~1404	중소기업중앙회 對 인터넷뉴스신문고, e파이낸셜신문, e중앙뉴스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 행태 '시끌시끌'』 제하의 기사 [인터넷 뉴스신문고 (2010년 10월 8일자), e파이낸셜신문·e중앙뉴스 (10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이익보다는 현 집행부의 기득권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뉴스 신문고 : 경제코너에 7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 e파이낸셜신문 · e중앙뉴스 : 사회면에 7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뉴스 신문고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6일자) • e파이낸셜신문 · e중앙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보도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2010서울조정1405	박○○ 對 인터넷 재외동포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삼성이 승마로 영국 진출했지요』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중인 승마클럽을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8일자)

2010서울조정1406	한국방송공사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사설] KBS는 때 아닌 '이승만 특집' 계획 철회해야』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0년 9월 16일자 31면), 경향닷컴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기획중인 이승만 대통령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사장의 독단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408~1409	사단법인 KYC(한국청년연합) 對 뉴데일리 (정정 ·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G20 깨자" 좌파진영 80여개 단체 뭉쳤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2009년 이적단체로 분류된 바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단체는 신청인 단체와 이름이 비슷한 타 단체이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p> <p>※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채된 포털사이트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송고</p>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9일자)

2010서울조정1410	소○○ 對 KBS-1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여행객 노리는, '노빵여행'의 실체'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15일 23:05)

신청인주장	베트남 보신관광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서신, 조정액 100만원, 부제소)

2010서울조정1411~1412	배○○ 對 MBC-TV, iMBC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이산가족 상속재산’ 제하의 보도 [MBC (2010년 9월 24일 21:00), iMBC (9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수임한 북한 주민 관련 상속 소송에 북한 고위부가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010경기조정101	영종창보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對 인천공항영종뉴스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주민의 힘 화합하는 영종주민의 날 성황』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후원한 영종주민의날 행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인천공항영종뉴스 기사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일자 1면)

2010경기조정102~103	정○○ 對 반월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조합원 갈등 몸싸움…경찰 출동』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7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의원 회의에 의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조합 사무실을 강제 점거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 운영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을 7일간 게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보도문] “안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 갈등…”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4일자 2면)

2010경기조정104~105	정○○ 對 중부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안산 개인택시 전·현직 조합장측 ‘충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8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현 조합장과의 자격문제를 놓고 물리적 대립관계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전북조정35	1.이○○,2.강○○對 전북일보 (반론청구)
조정대상	『교내 집단폭행 ‘쉬쉬’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집단폭행 피해학생의 부모인 신청인들이 가해자측에게 합의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1억 3000만 원 합의금 요구는 사실무근” 임실 학교폭력 피해 부모 반박』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6일자 6면)

2010대구조정24~25	이○○對 TBC-TV (추후·손배청구)
조정대상	「프라임 뉴스」 프로그램 ‘경북유도회 임직원들 전국체전 심판 매수설 폭로’ 제하의 보도 (2009년 9월 29일 20:20)
신청인주장	경북유도회 전직 임원인 신청인이 상급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르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대구조정26~27	이○○對 연합뉴스 (추후·손배청구)
조정대상	『훈련비 횡령 경북유도회 임직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신청인주장	경북유도회 전직 임원인 신청인이 상급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게재, 기사 삭제, 부제소)
이행결과	『<추후보도문> 경북유도회 전 전무이사 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3일자)

2010경남조정68~69	송○○對 통영타임즈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도경, 통영공설운동장 전광판 관련 내사』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0일자)
신청인주장	통영공설운동장 전광판 공사와 관련해 신청인이 NH개발과 불법계약을 체결해 대금 미지급에 따라 브로커로 개입하고 불법자금조성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통영공설운동장 전광판 내사’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3일자)

2010서울조정1413~1414	사하구중합사회복지관對 한국모바일방송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사하구복지관 산하기관, 허위통장 만들어 사업비 유용』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산하기관인 부산사하시니어클럽이 사업비를 유용해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부산사하시니어클럽은 신청인 단체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행 결과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2010광주조정67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對 전국매일 (정정청구)
조정 대상	(1) 『건설업체-공사 “그들만의 검은 공생”』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0일자 15면) (2) 『‘밀착 의혹’ 갈수록 깊어진다』 (2010년 8월 24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성댐 잔토석 반출사업 과정에서 모업체와 밀착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이므로 정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전북조정36	주식회사○○생명과학 對 인터넷 소통신문 (정정청구)
조정 대상	(1) 『기상관측, 악취 주범 제2공단 L사 ‘유력’』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6일자) (2) 『그 날 악취도 L사에서 발생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신청인주장	2008년과 최근에 익산시 일대에서 발생한 악취의 진원지는 신청인 회사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메인섹션에 1일간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과 연결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의 기사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행 결과	『악취 기사 관련 L사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일자)

2010서울조정1415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對 한겨레 (정정청구)
조정 대상	(1) 『‘4대강 사업뒤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0일자 1면) (2) 『4대강의 또다른 재앙, 크루즈 사업계획』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1일자 31면)
신청인주장	4대강 사업과 관련, 신청인 연구소가 보에 갑문을 설치하여 선박 통행이 가능할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 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6일자 2면)

2010서울조정1416~1417	1. 재단법인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2. 김○○ 對 한국기독교보 (정정·반론청구)
조정 대상	『양화진 선교기념관, 유니온교회 위해 세워졌다』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4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의회가 선교기념관에서 유니온교회를 강제로 내쫓은 것처럼 보도했으나 구청이 예배처소로서의 사용을 금지하여 퇴소한 것이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 뿐이므로 신청인의 정정 · 반론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418~1419 (주)다산북스 對 오마이뉴스 (정정 · 반론청구)

조정 대상	(1) 『소설<덕혜옹주>, 내 책 40여 곳 무단도용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일자) (2) 『[전문] <덕혜회>작가 혼마야스코의 ‘표절 검토 자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발행한 <소설 덕혜옹주>가 일본의 <덕혜회>를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표절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후속 기사로 상세히 보도하였으므로 기사삭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420~1421 백○○ 對 헤럴드경제닷컴, 네이트 (매체별 손해청구)

조정 대상	『"더 빨리 더 빨리", 사라진 봄 가을 한국인의 기질을 바꾼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럴드경제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15만원) • 네이트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15만원)

2010서울조정1422 킨더슬레(주) 對 KBS-1TV (손배청구)

조정 대상	『뉴스9』 프로그램 ‘말로만 ‘명문 놀이방’...부실급식에 폐업’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24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회사의 특정 가맹점에서 있었던 부실급식을 마치 본사와 전체 가맹점에서 일어난 것처럼 오해하도록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실성이 인정된다.)

2010서울조정1423~1426 김○○ 對 시사N, 시사N Live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N : 『포항 출신은 개도 벼슬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7일자 16면) • 시사N Live : 『MB 정부에서 벼락 출세한 성공과 진공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한국거래소 감사로 임명된 절차상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N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합의) • 시사N Live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N :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7일자 8면) • 시사N Live : 『한국거래소 김○○ 상임감사위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	---

2010부산조정54		김○○ 對 UBC (정정청구)
조정대상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구청장 친형 집 앞 잡풀까지’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1일 21:00)	
신청인주장	울산 남구청장의 친형인 신청인 집앞의 풀을 베는데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행방법 : 프로그램 말미에 청색바탕에 흰색으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	
이행결과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2일 21:00)	

2010서울조정1427		김○○ 對 인터넷 내외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1) 『술판 · 싸움판 학교 급식실...학교는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1일자) (2) 『연천전곡고 급식실에서 시작되는 학교 비방』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2일자) (3) 『연천전곡고 급식실, 숨방망이 처분에 ‘시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3일자) (4) 『놀고먹는 연천 전곡고등학교 영양사』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고등학교 영양사로 재직중인 신청인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배식을 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중재신청 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2010서울중재 74~75 참조)] ※ 이행방법 : 내외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인터넷 내외일보 뉴스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행결과	『<정정·반론보도> ‘전곡고 영양사 놀고먹는다’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4일자)	

2010서울조정1428~1431		이○○ 對 MBC-TV, iMBC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국군소령, 검찰 수사’ 제하의 보도 [MBC-TV (2010년 9월 24일 21:00), iMBC (9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군인 신분인 신청인이 사업을 하며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부제소) • iMBC :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기사 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조정대상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신청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국군검찰단의 수사결과 혐의없음이 인정된 경우 신청인과 사전협의하여 추후 보도, 신청인이 보내온 수사종결 혹은 판결선고에 관련한 문건을 <아침 7시 뉴스> 내지 <마감 뉴스> 프로그램의 말미에 진행자가 스튜디오 멘트 형식으로 원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 iMBC : MBC-TV의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신청인이 수사종결 혹은 판결선고에 관련한 문건을 송부할 경우 조정대상보도 삭제
---------	---

2010경남조정70~71	하동군 對 하동평의회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또 무슨 계약 타령?』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1면)
신청인주장	하동군에서 추진중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허위 거짓 계약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기고문 게재)
이 행 결 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9일자 1면)

2010경기조정106	약대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對 부천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천 약대2구역 업체선정 '요지경'』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부대설비 업체 선정과정에서 타 견적보다 높은 업체의 제품을 선정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7일간 정정 보도문 게재,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8~24일자 1면) ※ 조정조서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 『약대 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보도 관련 바로 잡습니다』

2010서울조정1432~1439	(주)아이이에이 對 나눔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유아 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저작권 소송 승리하고 2011년 론칭』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가처분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일 뿐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지난 10월 18일에 보도된 "유아 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저작권소송 승리하고 2011년 론칭"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2일자)

2010서울조정1440~1445 (주)아이이에이 對 뉴스와이어,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유아영어교재 키즈브라운, ‘뉴키즈브라운’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와이어 : 초기화면 중앙목록 상단에 1일간 알림기사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알림기사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가 전재된 포털사에 알림기사 송고 • 네이트·다음 : 뉴스와이어에서 알림기사를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유아영어교재 키즈브라운’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6일자)

2010서울조정1446~1453 (주)아이이에이 對 브레이크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국내 1위 유아 영어교재 키즈브라운, ‘뉴키즈브라운’ 재탄생』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유아 영어 교재 키즈브라운’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8일자)

2010서울조정1454~1459 (주)아이이에이 對 아이비타임즈,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브라운클래스파운데이션, 가상교육시스템 도입한 ‘뉴키즈브라운’으로 재기』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460~1467 (주)아이이에이 對 OSEN,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유아, 유치원 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브라운클래스파운데이션과 새 계약』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osen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정정보도 게재)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osen : 『‘유아영어교재 키즈브라운’ 관련하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5일자)

2010서울조정1468~1473 (주)아이이에이 對 인터넷 중앙일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국내 1위 유아영어교재 ‘키즈브라운’, ‘뉴키즈브라운’으로 재탄생』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유아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관련 기사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6일자)

2010서울조정1474~1479 (주)아이이에이 對 폴리뉴스,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유아영어교재 ‘키즈브라운’, 뉴키즈브라운으로 업그레이드』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게재, 부제소)</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폴리뉴스 : 초기화면 중앙목록 상단에 1일간 알림기사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알림기사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가 전제된 포털사에 알림기사 송고 •네이버·다음 : 폴리뉴스에서 알림기사를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유아영어교재 키즈브라운’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3일자)

2010서울조정1480~1487 (주)아이이에이 對 헤럴드경제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유아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저작권 소송 승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유아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관련 기사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2일자)

2010서울조정1488~1491 (주)아이이에이 對 희망뉴스, 네이버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브라운클래스파운데이션, 법정투쟁 말고 “뉴키즈브라운”으로 재기』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키즈브라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2010서울조정1492 이○○ 對 BN산업뉴스 (반론청구)	
조정대상	『6만원짜리 동남아 항공권 직접 예약해보니...』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4일자)
신청인주장	외국계 항공사에서 왕복 10만원대 동남아 항공권을 출시했다고 보도했으나, ‘미끼’ 상품에 불과하다.
처리결과	기각결정 (사유: 조정대상기사의 보도 내용과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다.)

2010전북조정37~42 (주)아이이에이 對 모모뉴스, 네이버,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유아, 유치원 영어교재 새롭게 선보인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저작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경쟁업체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키즈브라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2일자)

2010광주조정68 1. 김영록, 2. 김○○ 對 광역신문 (정정청구)	
조정대상	(1) 『김영록 의원, 해남 노화 보길 ‘버리나’』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1면) (2) 『김영록 의원 개입 의혹, 유감스러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국회의원이 해상여객 면허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9일자 1면)

2010광주조정69 여수경찰서 對 주간남도신문 (정정청구)	
조정대상	『70억대 부부사기단, 경찰에 수천만 원 돈 뿌렸다 ‘파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일자 3면)

신청인주장	70억대 부부사기단 사건과 관련해 여수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향응이 제공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가 아닌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

2010광주조정70	최○○외3인 對 주간·남도신문 (정정청구)
조정 대상	『60억대 경매사기 검·경로비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0일자 3면)
신청인주장	60억대 경매사기사건과 관련해 여수경찰서 경찰관들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반론보도는 게재할 의사가 있으나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

2010부산조정55~56	사회복지법인 엘림사회복지재단 對 울산KBS-1TV (정정·손배청구)
조정 대상	『뉴스9』 프로그램 ‘요양병원 위생불량’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의 노인복지센터가 위생불량 요양병원으로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취하

2010서울조정1493~1494	이○○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손배청구)
조정 대상	『노인 취업 성공률이 122.6%』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11월 5일자 21면), 인터넷 중앙일보 (5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을 산정에 대한 신청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이름 및 소속기관을 밝혀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495	진안군 對 신이일보 (정정청구)
조정 대상	『진안 군수업무용 자동차 관리, 운영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6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진안군수의 업무용 차량이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행 결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일자 15면)

2010서울조정1496	진안군 對 인터넷 신이일보 (정정청구)
조정 대상	(1) 『진안군, 감사원 감사서 입찰비리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2일자) (2) 『국민의 혈세 억지 명분 만들어 ‘평평’』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일자) (3) 『진안군, 허술한 보조금 행정 또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9일자) (4) 『진안 군수업무용 자동차 관리, 운영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진안군수의 업무용 차량이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되고 있으며, 군의 각종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2010부산조정57	학교법인 정선학원 對 교회복음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브니엘학원 재단운영권 대법원 최종판결』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의 학교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총동창회와 교사 및 학부모 등이 갈등을 빚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전북조정43	김○○ 對 J-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뉴스』 프로그램 ‘청원경찰 밀실채용’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일 20:20)
신청인주장	군산시의 청원경찰 미공개 채용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취업준비생인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경기조정107	약대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對 부천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천 약대2구역 환기시스템업체선정 ‘말썽’』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4일 ~ 1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한 업체로부터 환기시스템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제품 평가기준을 제공하는 등 업체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7일간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8일~ 24일자 1면) ※ 조정소서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 『약대 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보도 관련 바로 잡습니다』

2010서울조정1497	식품의약품안전청 對 내일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유해논란 감미료 사용규제 풀어』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유해성 논란이 있는 감미료(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영유아식에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인터넷 내일신문의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제된 각 포털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6일자 2면)

2010서울조정1498~1500 나○○對 교회와이단 (정정·반론·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전주 성은세계선교교회 나○○, 영매(靈媒) 주장』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호 56~73면)
신청인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집회도중 영매(靈媒) 간증을 했으며 신청인의 외국 신학교 박사학위에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01~1502, 1512 (사)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對 빅뉴스 (1501~1502 정정손배청구), 네이버(1512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불법 웹하드 DCNA 김부겸 등 민주당 개입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9일자) (2) 『인미협, 김부겸에 저작권보호센터 관련 공개질의』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비호를 받으며 사무국장 취임행사를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뉴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결정문에 따른 반론보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네이버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뉴스 : 사회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을 1일간 보도,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 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빅뉴스가 반론보도문을 전송해오는 시점부터 3일 이내에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 되도록 함, 뉴스홈 <e-옴부즈맨> 코너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 네이버 :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1503 식품의약품안전청 對 MBC-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기적의 화장품, 알고보니 ‘스테로이드’ 범벅’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1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화장품에 기능인증서를 내 준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

처 리 결 과	<p>는사실보도이므로 중재부의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p> <p>※ 이행방법 :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부에 자막 게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p>
---------	---

2010서울조정1504~1505	(사)서울약형시험회 對 서울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한약재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6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불량한약재신고센터가 없어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한약은 밥보다 안전해요』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5일자 27면)

2010서울조정1506~1509	하○○對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Sports 라운지] 평창유치위·대한체육회 ‘삐걱’』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11월 9일자 A27면), 디지털 조선일보 (11월 8일자), 네이버·네이트 (11월 9일자)]
신청인주장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인 신청인이 기념품 납품업체들을 모두 바꾸는 등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일자 A27면) • 디지털조선일보·네이버·네이트 : 『[바로잡습니다] 11월 9일자 ‘평창유치위·대한체육회 ‘삐걱’ 제하의 기사』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일자)

2010경기조정108	김○○對 경인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뽀뽀한 비리교감』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5일자 2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그 학교의 신입생 입학 점수 조작과 교비 횡령 등의 비리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인터넷 경인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뽀뽀한 비리 교감’ 보도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0년 11월 26일자 2면), 인터넷경인일보 (11월 26일자)]

2010강원조정15~20	미래산업(주) 對 원주KBS-1TV, 울산MBC-TV, GTB-TV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원주KBS-1TV : (1) 「뉴스9」 프로그램 ‘음식물 폐수 오염 심각’ 제하의 보도 (2010년 10

조정 대상	<p>월 27일 21:00), (2) 「뉴스광장」 프로그램 ‘음식물 폐수 오염 심각’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8일 07: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음식물처리업체, 부실처리 의혹’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7일 21:00),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음식물처리업체, 부실처리 의혹’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8일 07:10) • GTB-TV : (1) 「뉴스820」 프로그램 ‘음식물 자원화업체가 ‘환경오염’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7일 20:20), (2) 「뉴스라인」 프로그램 ‘음식물 자원화업체가 ‘환경오염’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8일 07:20)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오폐수를 방류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KBS-1TV :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보도는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보도이므로 반론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울산MBC-TV :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보도는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보도이므로 반론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 GTB-TV :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 및 손해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10~1511	김○○ 외 5인 對 대한건설기계신문 (반론·손배청구)
조정 대상	『육설과 폭력 난무한 임시총회 불법난입』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0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대한건설기계협회장 선거장에 난입해 육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 결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6일자 2면)

2010광주조정71~72	박○○ 對 호남뉴스일번지 (정정·손배청구)
조정 대상	『함평군, 공무원 군의원 압박...군수 배경 ‘지적’』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군수와의 친인척 관계를 이용해 군의원을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취하

2010광주조정73	신안군 對 광주매일 (정정청구)
조정 대상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8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2010광주조정74	신안군 對 전남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신안군, 특정단체 예산 지원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8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13~1514	이재오 對 오마이뉴스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이재오·임태희, 북 ‘리호남 참사’ 비밀접촉” MB정권 인사, 수사대상서 제외…표적수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리호남’ 내각참사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
이 행 결 과	조정대상보도 하단 『이재오 장관, 오마이뉴스 보도에 유감(遺憾) 표명』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5일자)

2010경남조정72~73	(주)원 對 창원MBC-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정황 확인...소환 늦춰질 듯’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8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미세분무 소화장치인 불도리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PR보도 게재, 유감공문) ※이행방법 : <뉴스데스크> 로컬 뉴스 프로그램 시작 후 5분 이내에 정정보도문 방송,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명기, 방송화면은 불도리의 제품 사진 및 관련 인증 서류, 화재 진압 실험 비교 등의 장면을 사용, 조정대상방송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에서 모두 삭제, 뉴스를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에 신청인 회사, 제품 또는 회사 관계자 등이 출연 내지 인터뷰하는 내용의 방송을 3회 이상 내보낼 것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이동식 소화설비 불도리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24일 21:00)

2010서울조정1515	광주인탑스(주) 對 전자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LED 조명공사 비리 많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0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낙찰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해 조달청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3일자 2면)

2010서울조정1516	광주인탑스(주) 對 인터넷 전자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규격 미달 LED 조명 납품업체들 ‘철퇴’』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낙찰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해 조달청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3일자)

2010대구조정28	포항장성두산위브더제니스 비송대책위원회 對 경북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포항장성두산위브 ‘분양가 할인’ 일단락』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15면)
신청인주장	두산건설과 포항 두산위브 입주예정자협의회가 향후 미분양 가구 분양 시 할인 폭만큼 기존 계약자도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으나, 신청인 소속 계약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517~1518	(주)일앤엘바이오 對 MBC-TV (정정·반론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해외에서 줄기세포 치료시술중 사망’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2일 21:00)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줄기세포’ 국내에서 불법시술’, ‘줄기세포 주사가 뭐길래?’, ‘줄기세포시술 ‘폐동맥 · 암 발생’」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5일 21:00)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줄기세포’ 불법시술’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6일 06:00) (4)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줄기세포’ 불법시술, 유력인사 로비 의혹’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6일 21:00) (5)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줄기세포 불법에 주먹구구식 시술까지’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9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부산조정58	배○○ 對 UBC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군수출마 인사가 그린벨트 훼손’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1일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오다 철거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충분한 사전조사 후 보도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정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제주조정47~48 양○○對 제주KBS-1TV (정정·손배청구)	
조정 대상	「뉴스9」 프로그램 ‘공무원 납품비리 수사 교육청 번져’ 제하의 보도 (2010년 8월 16일 21:3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공무원 납품비리를 검찰에 제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뉴스광장>, <뉴스 930>, <뉴스9> 프로그램에서 각각 정정 및 사과보도문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은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 진행자는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영상과 스크립트를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하여 검색가능하도록 함
이행 결과	(1) 「뉴스광장」 프로그램 ‘공무원 납품비리’ 여직원 돈 가로챘 사실 없어’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30일 06:00) (2) 「뉴스9」 프로그램 ‘공무원 납품비리’ 여직원 돈 가로챘 사실 없어’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30일 09:30) (3) 「뉴스 930」 프로그램 ‘공무원 납품비리’ 여직원 돈 가로챘 사실 없어’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30일 21:00)

2010경기조정109~110 박상은對 경인일보 (정정·손배청구)	
조정 대상	(1) 『여객선 운항중단’ 해명도 거짓』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일자 23면) (2) 『지역행사 순찰헬기 동원 물의 ‘박상은 의원’』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8일자 1면) (3) 『박상은 의원 ‘헬기동원 파문’ - 해경, 항공기 지원규정 보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0일자 22면)
신청인주장	지역구 행사 참석 당시 해경 헬기를 이용한 것에 대해 신청인이 여객선 운항 중단에 따른 부득이한 이용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피신청인이 연속보도를 통해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유감 표명, 사과 내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청구취지가 결정문에 반영되어야 한다.)

2010충북조정25~26 진천군축구협회對 충청타임즈 (정정·손배청구)	
조정 대상	『진천축구협 ‘충북 챔피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9일 1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단체명 옆에 부회장의 직책과 이름을 표기하는 등 마치 회장이 공식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2일자 4면)

2010대구조정29	합자회사 고려산업 회 한국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영주 여특리 채석단지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16면)
신청인주장	영주시가 진입로도 확보하지 않은 신청인 업체에 골재채석 사업을 승인해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적법한 절차로 승인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6일자 16면) ※조정조사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 『정정보도문』

2010대구조정30~31	카리코람산악회 회 매일신문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문희갑 전 대구시장 ‘2010 팔공산악대장 수상자’ 로 선정』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28면)
신청인주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에베레스트 칼라파타르봉 등정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사건보도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다.)

2010서울조정1519~1520	1. 김○○, 2. 서울굴삭기연합회 회 대한건설기계신문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기종별 대표, 임시총회 불법난입 강경 대응』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5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대한건설기계협회장 선거장에 불법 난입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1일자 2면)

2010서울조정1521~1527	사회심리치료사협회 회 문화일보 (1521~1522 정정 · 손해청구), 문화닷컴 (1523~1524 정정 · 손해청구), 네이버 (1525 정정청구), 네이트 (1526 정정청구), 파란 (1527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구직자 울리는 ‘허위 민간자격증’』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0년 9월 24일자 2면), 문화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파란 (9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사회심리치료사자격증이 실체가 불분명한 미등록 민간자격증이라고 보도했으나, 특허청에 등록된 전문가자격증이다.
처 리 결 과	• 문화일보 · 문화닷컴 · 네이버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트·파란 :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닷컴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가 전제된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 송고 • 네이버 : 문화일보가 반론보도문을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 네이트·파란 : 문화일보가 반론보도문을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문화일보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조정대상기사에 이를 반영하여 노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림』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0년 12월 7일자 10면), 문화닷컴·네이버·네이트·파란 (12월 7일자)]

2010서울조정1528~1529 (주)문화방송 對 인터넷일요서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특종 MBC 대외비 특별감사 보고서 내용 단독공개 제1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8일자)
신청인주장	삼성의 MBC 내부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MBC가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7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2010서울조정1530~1531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KBS 안전관리팀 비리 재조사는 감사부정』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10일자 4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1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KBS가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KBS 안전관리팀에 대해 재감사를 통해 징계 수준을 대폭 완화해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공정한 감사였다.
처 리 결 과	<p>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 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업무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정정보도가 필요하다.)</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초기화면에서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이 확인되게 하고,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2010전북조정44~45		김○○ 對 해피데이고창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후원·협찬금은 결산보고 대상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지역축제(고창 모양성제) 사무국장인 신청인이 2009년도 후원금 및 협찬금에 대해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모양성제 결산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3일자)	

2010전북조정46~47		남원시 對 전주매일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남원시 건설과 과다지출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6일자 11면) (2) 『남원시 건설과 계약도 허술』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7일자 11면) (3) 『개탄스러운 남원시 건설과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8일자 15면) (4) 『수사의지 ‘흐릿’...경찰 불신 심화』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9일자 10면) (5) 『남원시 건설과 뒷돈거래 철저한 규명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2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지자체 공무원들과 사무용품 납품업체간에 뒷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본보 남원시 건설과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6일자 2면)	

2010광주조정75		소림학교 對 목포MBC-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장애학교서도 폭행’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22일 21:00)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장애학교서도 폭행’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23일 07: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폭행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전북조정48		(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對 새진북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전주소리축제 이상한 예산 집행』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1면) (2) 『소리축제 갈란테 공연 의혹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10면) (3) 『타지역 축제 총감독 동시 수행 2년 임기보장-수행비 특별예우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5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주최한 ‘이네사 갈란테’ 공연 예산의 집행이 투명하지 않고, 단체장에게 3년 임기를 보장한 것은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7일자 2면)	

2010서울조정1532	신○○對 아시아투데이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출다 추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6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보도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액 50만원, 부제소)

2010경남조정74~75	박○○對 함안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칠원자원봉사단체 정치 집단화 우려, 자원봉사대장 선거에 함안군수·군의원 영향력 개입 시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7일자 3면) (2) 『칠원면 자원봉사 대장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3면) (3) 『[발행인칼럼] 칠원면여성자원봉사대 '존재의 의미' 되새겨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칠원면 자원봉사대장 선거를 앞두고 함안군수가 신청인에게 한쪽 후보자 지지 전화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손배청구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5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만큼 중재부의 손해배상액 지급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칠원면 자원봉사대 선거 - 적법하게 봉사대장 선출된 사람은 박○○씨』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1면)

2010서울조정1533	문○○對 엠파이트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블라토프 삼보회장, 대한체육회 방문 '삼보연맹 맹비난』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한체육회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대한삼보연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6일자)

2010서울조정1534~1535	해군본부對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해군 장성 등 120면 계좌추적』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0년 11월 19일자 1면), 인터넷 서울신문 (1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링스헬기' 허위정보 사건과 관련, 수뢰혐의가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인 해군 관계자의 규모가 2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120여명인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536~1537		방○○○ 對 법률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변질되는 공청회… 명분은 ‘의견수렴’ 실상은 ‘여론몰이’』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4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양형기준 관련 공청회에서 법무부 입장을 대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의 내용은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전북조정4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對 전주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기자수첩』 남원시 공무원노조 시민 위한 노동운동 기대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5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가 조정과정에서 기각된 것은 기자의 지적이 정당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당사자 문제’로 기각한 것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9일자 15면)	

2010충북조정27~28		1. 윤○○, 2. 김○○, 3. 김□□ 對 충청일보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절차 무시한 강압수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7일자 3면)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수사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결과	『절차 무시한 강압수사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3면) ※조정조사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 『“절차 무시한 강압수사 ‘논란’”, “경찰, 청주시 이첩사건 무리한 진행 임산부 하혈…상당窟 ‘사실 파악중’”』	

2010경남조정76~77		임○○ 對 함안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1) 『칠원자원봉사단체 정치 집단화 우려, 자원봉사대장 선거에 함안군수·군의원 영향력 개입 시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7일자 3면) (2) 『칠원면 자원봉사 대장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3면) (3) 『[발행인칼럼] 칠원면여성자원봉사대 ‘존재의 의미’ 되새겨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칠원면 자원봉사대장 선거를 앞두고 함안군수가 신청인에게 한쪽 후보자 지지 전화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 손배청구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2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처 리 결 과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만큼 중재부의 손해배상액 지급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함안군수, 칠원봉사대 선거개입 사실과 달라 - 면장에게 사태 파악 지시만 내린 것으로 확인돼』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1면)

2010경남조정78~79	
양산시對 매일경남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양산시 '주먹구구식' 행정비난 서창동 주민센터 설계변경 말썽』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5일자 7면)
신청인주장	양산시 서창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당초 헬스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도서관으로 바꾸는 바람에 주먹구구식 행정이 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당초 헬스장 계획은 없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삭제, 홈페이지 외부에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 삭제 요청, 초기 화면 중앙 부분에 3일 이상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으로 연결)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양산시 서창동 주민센터 관련 정정보도 - 헬스장 계획 후 설계변경 보도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7면)

2010경남조정80~81	
하○○對 함안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칠원자원봉사단체 정치 집단화 우려, 자원봉사대장 선거에 함안군수·군의원 영향력 개입 시비』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7일자 3면) (2) 『칠원면 자원봉사 대장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3면) (3) 『[발행인칼럼] 칠원면여성자원봉사대 '존재의 의미' 되새겨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칠원면 자원봉사대장 선거를 앞두고 신청인이 칠원면장에게 한쪽 후보자 지지 전화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손배청구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조정액 3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만큼 중재부의 손해배상액 지급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함안군수, 칠원봉사대 선거개입 사실과 달라 - 면장에게 사태 파악 지시만 내린 것으로 확인돼』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1면)

2010경기조정111~112	
송영길對 연수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평민당 백석두 시장후보 '송영길 후보' 검찰에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기업으로부터 향응 및 성접대를 받고, 투자 로비를 해 준 대가로 수십만 달러의 뇌물까지 챙겼다는 인천시장 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측의 고발장 내용을 인용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리기사 형식으로 보도해 줄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
---------	--

2010강원조정21~22 이○○ 對 인제신문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사설』 몸통과 깃털』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6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지방선거 당시 고전을 하자 수재의연금 문제를 고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보도이다.)

2010강원조정23~26 인제군 對 인제신문, 인터넷인제신문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인제군 본지 상대 언론탄압』 제하의 기사 [인제신문 (2010년 11월 30일자 1면), 인터넷 인제신문 (11월 30일자)] (2)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 즉각 중단 촉구』 제하의 기사 [인제신문 (2010년 11월 30일자 2면), 인터넷 인제신문 (1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지자체가 피신청인에게 협박을 가하는 등 언론탄압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조정대상기사는 그 내용에 있어 잘못된 것이 아니다.)

2010서울조정1538~1541 김○○ 對 내외일보, 인터넷 내외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0년 11월 29일자 4면), 인터넷 내외일보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고교 영양교사인 신청인이 학생수를 잘못 계산해 급식발주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내외일보 : 사회면에 1월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전곡고 영양교사 식단표도 작성 못해’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0년 12월 16일자 4면), 인터넷 내외일보 (12월 15일자)]

2010서울조정1542~1553 권○○ 對 문화일보, 문화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청계천 두 馬夫의 혈투』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0년 11월 16일자 8면), 문화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파란 (1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청계천 꽃마차 운영을 둘러싼 마부들간의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보도내용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2010경기조정113	(재)부천문화재단 對 부천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부천문화재단 ‘법인카드 갱’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5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속칭 법인카드 갱을 하여 회식비용 등을 부풀려 결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2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부천문화재단 법인카드갱 의혹’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6일자 3면)

2010서울조정1554	김○○ 對 SBS-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MC몽 사건의 이면’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30일 23:1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들이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문 게재, SBS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보도 검색 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부제소)
이 행 결 과	•SBSI :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7일자)

2010서울조정1555	문화체육관광부 對 전자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방송콘텐츠 진흥’ 방통위가 맡기로』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일자 1면)
신청인주장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기로 신청인 부처와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서울조정1556~1557	고○○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학원정상화 오랜 숙제 풀리나” 긴장감 도는 대구대』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0년 9월 3일자 25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대 관계자인 신청인이 대구대 정상화추진위원회 참여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3일자 26면) • 인터넷 중앙일보 :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된 『알려졌습니다』 제하의 기사 (12월 23일자)

2010서울조정1558 아○○○ 對 인터넷 코리아타임즈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EBS foreign host accused of broadcasting drunk』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30일자)
신청인주장	EBS 영어강사인 신청인이 취중강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서울조정1559~1560 송영길 對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기부자 따로 있는데... 생색낸 송영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12월 2일자 A10면), 디지털조선일보 (12월 2일자)]
신청인주장	연평도 사태 이동들에 대한 인천시의 무상지원이 민간 기부금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면서도 인천시장인 신청인이 마치 자신이 사준 것처럼 생색을 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61~1562 (주)하나금융지주 對 서울경제, 서울경제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하나금융, 론스타 주주사 대상 외환은행 인수자금 유치 협상』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0년 12월 7일자 A8면), 서울경제닷컴 (12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론스타의 주주사를 대상으로 외환은행 인수자금 유치를 위한 협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서울조정1563~1564 이소영 對 프리시안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의 신정아? 이소영 국립오페라단장, 경력 대부분 허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0일자) (2) 『허위 경력 이소영 단장은 문제거리 종합세트』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경력이 대부분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충북조정29~30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건강마을 對 인터넷 충청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아름다운 건강마을 공사비 지급하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신축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에 24시간 반론보도문 게재, 이후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반론 보도문 배치
이 행 결 과	『"아름다운 건강 마을 공사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2010충북조정31~34	(주)두진건설 對 충청매일, 인터넷 충청매일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두진건설, '건설업자 잠적' 불똥』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9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유령집회'를 신고하고 신청인 회사의 건설업자가 잠적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매일 : 초기화면에 24시간동안 정정보도문 게재, 이후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정정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 행 결 과	『"두진건설 '건설업자 잠적' 불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0년 12월 17일자 2면), 인터넷 충청매일 (12월 16일자)]

2010서울조정1565~1566	(주)에코에너지홀딩스 對 KBS-1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국책과제 업체 직원 200억대 비리 적발'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6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명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화면이 나와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567	(주)하나금융지주 對 네이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테마섹 후폭풍..골드만도 하나금융 매각 움직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1일자) (2) 『하나금융-골드만, 풋백옵션 있나 없나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2일자)
신청인주장	하나금융이 골드만삭스에게 주식을 매각할 때 풋백옵션을 부여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568~1571	한국방송공사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조 정 대 상	『[취재여록] 공영방송 본분 잇은 KBS』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0년 11월 25일자 A38면), 한경닷컴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KBS가 드라마와 쇼프로그램들을 외국에 공짜로 뿌리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0광주조정76~77		전○○對 화순미래뉴스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논평> 더 이상의 말장난은 삼가 해야』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수가 군정과 관련해 말장난을 하고 현실을 부풀려 호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72~1573		노○○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민중의소리 (매체별 손배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머니투데이 : (1) 『박지원-강기정 ‘국회 편치’』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8일자, 이하 게재일자 같음), (2) 『[사진] 격투기장으로 변한 국회』 제하의 기사, (3) 『[사진] 분노의 박지원, 날치기 어퍼컷!』 제하의 기사 • 민중의소리 : (1) 『[단독영상] 김성희 한나라당 의원, 강기정 민주당 의원 안면 가격』 제하의 기사, (2) 『주먹질에 여성 머리채까지.. 김성희 비난 몸살 “깡패야? 국회의원 이야?”』 제하의 기사, (3) 『[사진] 분노의 박지원, 날치기 어퍼컷!』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국회 경위인 신청인이 강기정 의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0서울조정1574		(주)농수산홍쇼핑對 뉴스토마토 (정정청구)
조정대상	『신세계-하림, 농수산홍쇼핑 매각협상 재개될까?』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신세계 그룹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반론 및 PR보도 게재)	
이행결과	『도상철 사장 “농수산물홍쇼핑, 유통전문기업으로 탈바꿈”』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2일자)	

2010서울조정1575~1578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對 뉴코리아리포스트, 인터넷 뉴코리아리포스트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p>(1) 『국토부 ‘인재풀’ 제도…허협화와 묘한 이해관계』 제하의 기사 [뉴코리아리포스트 (2010년 10월 4일자 A7면), 인터넷 뉴코리아리포스트 (10월 4일자)]</p> <p>(2) 『한정협 교육모집공문 ‘의무교육 · 불이익 받을 수 있다’ 파장』 제하의 기사 [뉴코리아리포스트 (2010년 12월 1일자 A1면), 인터넷 뉴코리아리포스트 (12월 1일자)]</p>	
신청인주장	한국도시정비협회가 서울대에서 진행할 도시정비 교육의 강사진을 친분이 있는 신청인 단체 소속 강사로 주로 구성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처 리 결 과	•인터넷 뉴코리아리포스트 :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에 3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 삭제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제하의 기사 [뉴코리아리포스트 (2011년 1월 18일자 A2면), 인터넷 뉴코리아리포스트 (1월 19일자)]

2010서울조정1579~1580	김○○對 KBS-1TV, KBSi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교사 ‘성과급’ 소송’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13일 06:00) •KBSi : 『교사가 성과급 적다며 교장 상대로 소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성과급이 적어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신청인이 제시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만으로는 보도할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81	장병완對 문화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지역구 ‘4대강 예산’ 野의원이 증액 요구』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3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대강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582	성남시對 서울신문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성남시, 판교소각장 악취소동 조작 의혹』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6일자 14면)
신청인주장	성남시가 판교 소각장 인수를 지연하기 위해 악취소동을 조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합의)
이 행 결 과	이행 사항 없음

2010부산조정59	김형오對 부산MBC-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구청장인가’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22일 21:00) (2) 『뉴스투데이 부산』 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구청장인가’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23일 07:1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선거공약으로 남북항대표 연결도로를 고가도로 대신 지하차도안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는 잘못된 부분이 없어 정정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

2010서울조정1583~1584	(주)정·식품對 컨슈머타임즈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식품 ‘유아용 ○○○’에 각종 ‘탈’?』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유아용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물질의 유입경로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를 전재한 각 포털사에 정정보도문 송고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0일자)

2010서울조정1585	남○○외7인對 SBS-TV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기적의 신의학인가, 사이비 시술인가?’ 제하의 보도 (2010년 10월 2일 23:10)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환자들을 유인하여 소위 ‘의식의학’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로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 해당 방송은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0서울조정1586~1587	황○○對 매경닷컴, 연합뉴스 (매체별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1) 『‘너 조심해라’ 공무원에 협박문자 보내』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이하 게재 일자 같음) (2) 『‘공무원에 협박문자’ 문화운동가 벌금형』 제하의 기사 (3) 『공무원에 협박문자 보낸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제하의 기사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공무원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를 보도하면서 실명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2010경기조정114	(정정청구) 성남시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이재명 시장 “여러분은 정치적 敵”』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3일자 5면)
신청인주장	성남시의 시장이 성남직장운동부 해체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아원에 대한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이재명 성남시장 발언'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8일자 5면)

2010서울조정1588~1590	주○○對 동아일보, 데일리포커스, 연합뉴스 (매체별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일보 : 『[사진] 휘발유값 고공행진』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1일자 2면) •데일리포커스 : 『[사진] 치솟는 휘발유값』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1일자 1면) •연합뉴스 : 『[사진] 주유소 휘발유값 '고공행진' 계속』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휘발유값 폭등 관련 보도에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일보·데일리포커스 : 각 취하 •연합뉴스 : 취하 (사유 : 100만원 지급)

2010경남조정82~83	(유)진해교통對 경남도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수노조 택시사업장 사납금·최저임금 갈등』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8일자 5면) (2) 『진해교통, 민노총 가입 직원에 불이익』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2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에서 민노총 민주택시 가입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경남조정84~85	(정정·손배청구) 아○○對 진주MBC-TV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소나무 불법 반출'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5일 21:00)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행정도 한 몫'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6일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아름드리 소나무를 야음을 틈타 불법반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게재,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에서 결정한 정정보도문의 내용 중 몇몇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p> <p>※이행방법 : 로컬 뉴스 시작 후 4분 30초 이내에 정정보도문 방송,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통상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정정보도문 첫 문장은 진행자를 비추는 동시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명기하고, 이후 보도 마지막까지는 조정대상 보도 장면이 나오도록 할 것</p>

2010서울조정1591~1592	(주)와이티엔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연평도 간 안상수, 보온병 보고 "포탄" 동영상 알고 보니 방송사의 '연출 영상'』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0년 12월 1일자 A8면), 동아닷컴 (12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보도한 한나라당 대표의 포탄 동영상상이 연출 영상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

처 리 결 과	<p>상기사는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보도이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으며, 동아닷컴은 동아일보의 보도를 전제하였으므로 정정보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p> <p>※이행방법</p> <p>• 동아닷컴 : 초기화면 중앙에 1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p>
---------	--

2010충북조정35 행동하는 복지연합회 충청투데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사회복지정책보좌관 후보 적정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5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관여한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정책보좌관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사회복지정책보좌관 후보 적정성 논란’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5일자 5면)

2010서울조정1593~1595 1.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2. 김○○ 對 MBC-TV (정정·반론·손배청구)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사라진 고구려 벽화’ 제하의 보도 (2010년 9월 27일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도굴된 고구려벽화를 매수하여 팔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0서울조정1596~1597 (주)유니드파트너스 對 인터넷 재경일보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단독] 유니드파트너스 제주암센터 사업, 사실상 좌초상태… FI부재 드러나』 (2010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암센터 설립 사업이 좌초상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에 후속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후속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아래에 후속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유니드파트너스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9일자)

2010서울조정1598 (주)주간해남신문사 對 MBC-TV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자치단체장 “호화관사는 기본, 기자는 부하직원”’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4일 21:00)
신청인주장	언론사 기자를 부하직원인 것처럼 언급한 지역자치단체장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신청인 언론사의 제호를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0서울조정1599~1600	강○○對 한국대표문학신문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문협 선관위 공정성 논란 휘말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문인협회 선관위 간사인 신청인이 협회 이사장으로 출마한 특정후보자를 등록일 하루 전날에 미리 접수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2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2010서울조정1601~1602	성남시시설관리공단對 인터넷 내외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1) 『이사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1일자)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제왕적 본부장 체제구축, 비난고조』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이사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사회면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행결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제왕적 본부장 체제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2010서울조정1603~1604	성남시시설관리공단對 인터넷 현대일보 (정정청구)
조정대상	(1) 『이사장 공석 中 정관변경』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2일자) (2) 『제왕적 본부장체제? 감사권까지 장악 조항 추가』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이사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사회면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행결과	(1) 『이사장 공석 中 정관변경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9일자, 이하 게재일자 같음) (2) 『제왕적 본부장체제? 감사권까지 장악 조항?』 제하의 기사 ※조정조서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 문제없다” 주장』

2010서울조정1605	이○○對 SBS-TV (반론청구)
조정대상	『8 뉴스』 프로그램 ‘경찰, 단속은커녕 노래방에 술안주 납품’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20일 20:10)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관내 노래방을 비호해주는 대가로 4천만원 정도의 부당 이익금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SBS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기사 스크립트 하단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을 이어서 게재, 부제소)
이 행 결 과	•SBS : 조정대상보도 하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7일자)

2010경기조정115	성남시시설관리공단對 뉴스페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잡은 인사로 혼란을 주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원칙없는 잡은 인사로 인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정보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

2010경기조정116	성남시시설관리공단對 뉴스페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관리공단, 전보제한, 성남시 기획감사 지적, 나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막가파식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정보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

2010경기조정117	성남시시설관리공단對 수도권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성남 시설관리공단 ‘쿠데타’, 이사장 ‘허수아비’ 로 ‘음모’』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1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현재 공석인 이사장을 명목상 존재로 전락시키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론보도와 함께 중재부의 조정에 따른 합의 문구임을 결정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론보도만 가능하다.)

2010경기조정118	성남시시설관리공단對 수도권일보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본부장이 감사권까지 장악』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1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기획본부장이 감사권한까지 장악하여 이사장의 권력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론보도와 함께 중재부의 조정에 따른 합의 문구임을 결정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론보도만 가능하다.)

2010경기조정119	성남시시설관리공단對 전국매일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성남 시설공단 무리한 정관개정 원성』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4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현재 공적인 이사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론보도와 함께 중재부의 조정에 따른 합의 문구 임을 결정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론보도만 가능하다.)

2010경기조정120	성남시시설관리공단對 전국매일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성남 시설공단 정관개정 물의』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2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이사장 권한의 감사실을 기획본부장 직제로 편제시켜 기획본부장이 공단 내 실질적 권력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론보도와 함께 중재부의 조정에 따른 합의 문구 임을 결정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론보도만 가능하다.)

2010서울조정1606	박○○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매체별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오늘 : 『방통위, 규제 풀어도 광고혼풍 어렵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2일자 2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방통위, 규제 풀어도 광고 시장 혼풍 어렵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향후 광고시장을 전망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방통위가 규제를 풀어도 광고시장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초기회면에 1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기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오늘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6일자 2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4일자) <p>※ 조정성립 당시 매체별 반론보도문의 본문 상이</p>

2010서울조정1608~1625	황○○對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인터넷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동아닷컴, 매경닷컴, 세계닷컴, 인터넷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닷컴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동아닷컴·인터넷 중앙일보 : 『'영터리 美사이버대로 19억 학위장사'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5일자) • 머니투데이 : 『美사이버대학 학위장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6일자 20면) • 인터넷 머니투데이 : 『'美원격대학' 학위 장사 총장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5일자) • 노컷뉴스·파이낸셜뉴스닷컴 : 『대법, 꺾데기 미국 사이버대 학위장사 일당에 무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영터리 미국 사이버대학을 설립해 학위장사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합뉴스·머니투데이·인터넷 머니투데이 :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노컷뉴스·동아닷컴·매경닷컴·세계닷컴·인터넷 중앙일보 : 각 취하 •파이낸셜뉴스닷컴 :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이낸셜뉴스닷컴 : 『[알림]퍼시픽에일대학(PYU) 총장 등 무죄확정』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2010서울조정1626~1627		이○○對 일요신문, 인터넷 일요신문 (매체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요신문 : 『해외 전훈지 수용소와 다름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6일자 59면) •인터넷 일요신문 : 『육상 허들 커플 이○○·이○○ 충격 인터뷰』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현 육상경기연맹에 대한 불만을 폭로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게재)</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일요신문 : <인터넷기사 A/S>코너에 정정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1년 1월 19일자 3면), 인터넷 일요신문 (1월 12일자)]	

2010경남조정86~89		(주)이넥코리아對 경남도민일보, 다음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학업체 무책임한 태도 상처만 남겨』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0년 12월 6일자 4면), 다음 (12월 6일자)] (2) 『인도 유학업체, 학생피해 '나 몰라라' 일관』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0년 12월 15일자 5면), 다음 (12월 15일자)] (3) 『인도 유학업체 계약내용도 무시』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0년 12월 21일자 5면), 다음 (12월 21일자)] (4) 『인도 유학업체 약관 '표준'에도 못 미쳐』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0년 12월 22일자 5면), 다음 (1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인도 유학 전문업체인 신청인 회사에서 유학갔다 퇴학당한 학생의 등록금도 환불해 주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도민일보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 최상단에서 아래로 5번째 이내 위치에 최소 7일간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한 후 자체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피신청인 홈페이지 및 외부 포털사이트 뉴스 및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 등에 조정대상기사가 전제 내지 매개되어 있는 경우 삭제 조치, 부제소)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인도유학업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8일자 4면)	

2010대전조정41~42		박○○對 대전KBS-1TV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뉴스9』 프로그램 ‘국가보조금 ‘줄줄’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29일 21:00)	
신청인주장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학원 사진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 학원은 보도내용과 무관함을 확인하는 대전KBS 총국장 명의의 확인서 발송, 부제소)	
2010강원조정27~28		상지대학교對 데일리안강원 (반론청구)
조정대상	(1) 『상지대 법학부 교수 또 횡령혐의, 두 번째 검찰 고발 당해』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일자) (2) 『상지대, 또 통학버스 관련 100억대 공금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일자)	
신청인주장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학원 사진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정정보도, 기사 삭제, 유감표명을 함께 요구하고 있으나 반론보도만 수용 가능하다.)	

제2장 중재사건 전체 목록

2010서울중재1~7	진○○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드림위즈 (매체별 정정청구)
중재대상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12월 21일자 29면), 한겨레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드림위즈 (1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 신분인 신청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해당민원은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기고문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겨레닷컴 : 중재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기고문을 이어서 게재 • 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드림위즈 : 한겨레닷컴이 기고문을 중재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재대상기고문에 이를 반영
이행결과	『신문고 민원수사 최선을 다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1월 14일자 29면), 한겨레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드림위즈 (1월 13일자)] ※ 중재결정서상 기고문의 제목 :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2010서울중재8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對 네이트 (정정청구)
중재대상	『법치 도전 법정 소란, 더 엄격히 처벌해야』 제하의 사설기사 (2009년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언론사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기각결정 (사유 : 사실보도이다.)
2010서울중재9~16	환경부 對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중재대상	『<기자메모> ‘미군부대 오염’ 변죽만 울린 환경부』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환경부가 부평미군부대 안팎 환경오염 원인규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네이버·네이트·다음 :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고 자체 움부즈만 코너인 ‘정정·반론 등 게재 코너’에 게시 • 야후 : 뉴스 홈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합의한 반론보도의 본문 표시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인천경향 1월 4일자 2면』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2일자)

2010서울중재17~20	(주)케너텍 對 네이버, 네이트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중재대상	『국내 첫 구역전기사업(CES) 애물단지 전락』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일자)
신청인주장	구역형 전기사업자인 신청인 회사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입주자들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네이버·네이트: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고 자체 옴부즈만 코너인 '정정·반론 등 게재 코너'에 게시
이행결과	『사당동 CES사업 보도에 대한 케네텍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26일자)

2010서울중재21~28	(주)펀스테이션 對 네이트, 다음, 야후,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중재대상	『성남 '펀스테이션 특혜' 사실로』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내지 않았고, 분양을 통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겨 흑자부도를 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네이트·다음: 경향닷컴의 정정보도문이 뉴스홈에서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자체 옴부즈만 코너에 게시 •야후·하나포스: 경향닷컴의 정정보도문이 각각의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9일자)

2010서울중재29~38	(주)북짱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네이버, 네이트, 야후, 하나포스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중재대상	『"X새끼" 'XX년'.. 너한테 안 팔아!』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상품의 박스에 욕설이 적혀있어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홈에 24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에 이어 게시 •네이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섹션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동일 기간까지 <e-옴부즈만> 코너의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보도문 게시 •네이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페이지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e-뉴스룸> '정정기사' 코너에 이를 반영 •야후·하나포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홈에 24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시, 제목을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19일자)

2010경기중재1	
종 재 대 상	이○○對 OBS경인TV (손배청구)
신청인주장	「경찰 25시」 프로그램 (2010년 3월 8일 23:00)
처 리 결 과	<p>살해당한, 신청인의 어머니의 사체를 발굴하는 장면을 유족의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p> <p>중재결정 (내용 : 조정액 200만원, 유감표명) ※ 이행방법 : 지정기일까지 금액 지급, 보도문을 프로그램 서두에 청색바탕에 흰색자막의 화면에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는 시간동안 머물도록 보도</p>
이 행 결 과	「경찰 25시」 프로그램 ‘고인 및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3월 29일 23:00)

2010서울중재39~40	
종 재 대 상	양○○對 노컷뉴스, 연합뉴스 (매체별 추후청구)
신청인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컷뉴스 : 『제주대 교직원 카드깡으로 공금 빼돌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연합뉴스 : 『제주대 직원이 법인카드로 카드깡. 거액 횡령』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p>대학교 교직원인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공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 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p>
처 리 결 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게재) ※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컷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를 완료한 후 추후보도문을 중재대 상기사의 하단부에 이어서 게시 •연합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컷뉴스 :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2일자) •연합뉴스 : 『제주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3월 30일자)

2010서울중재41~44	
종 재 대 상	(주)아산엠단성사對 네이트, 야후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주장	『‘103년 전통’ 단성사에 불이 꺼진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1일자)
처 리 결 과	<p>단성사 극장이 사실상 휴점 상태라고 보도했으나, 일부 매장을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루어지고 있다.</p> <p>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페이지에서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e-뉴스룸> ‘정정기사’ 코너에 이를 반영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룸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103년 전통 단성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0일자)

2010서울중재45~58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對 한겨레, 한겨레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중재대상	『근현대미술 대가 작품 일색 ‘복고 장터’』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6월 18일자 25면), 한겨레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파란 (6월 17일자)]
신청인주장	광주 비엔날레 홍보 간담회에 한국관계자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으나 각국 인사가 다수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한겨레닷컴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 네이버·네이트·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자체 옴부즈만 코너인 ‘정정·반론 등 게재’란에 게시 • 야후·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0년 7월 13일자 2면), 한겨레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파란 (7월 12일자)]

2010서울중재 59	서울관악경찰서 對 경향신문 (반론청구)
중재대상	『“겁도 없이, 왜 그딴 글을 올리는 거야” 귀갓길 괴한 3명이 다짜고짜 주먹질』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23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에 시위 관련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중재결정 (내용: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 이행방법: 경향닷컴 홈페이지 중재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게재
이행결과	『알려 왔습니다』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3일자 2면)

2010서울중재60~61	장○○ 對 뉴시스, 인터넷재경일보 (매체별 추후청구)
중재대상	『검찰, 포천경찰서 경찰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혐의가 없는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가려다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추후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뉴시스 : ‘전국-경기북부’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 인터넷재경일보 : ‘정치-사회’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이행결과	『포천경찰서 경찰, 직무유기 ‘무혐의’』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2010서울중재62	장○○ 對 인터넷의정부신문 (추후청구)
중재대상	『포천경찰,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혐의가 없는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가려다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처리결과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게재) ※ 이행방법 :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행결과	『포천경찰서 장경장 직무유기 등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20일자)

2010경남중재1	1. 안○○, 2. 박○○ 對 경남도민일보 (손배청구)
중재대상	『죽은 남편 안 보이고 보험금만 보이나』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과로사로 사망한 전 남편에 대해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고 보험금만 수령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중재결정 (내용 : 중재액 300만원, 부제소)

2010서울중재63~69	박○○ 對 뉴시스, 네이트, 네이버, 조인스MSN, 다음, 드림위즈, 파란 (매체별 추후청구)
중재대상	『의정부, 한나라당 위원장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2010년 4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의정부 시청 출입기자들이 신청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게재)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국-경기북부'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 네이트 · 네이버 ·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뉴스섹션에서 추후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자체 움부즈만 코너에 추후보도문 게재 • 조인스MSN · 드림위즈 ·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뉴스섹션에서 추후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의정부를 위원장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4일자)

2010서울중재70~73	박○○ 對 의정부신문, 인터넷 의정부신문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중재대상	『김효열 의정부시의원 한나라당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 [의정부신문 (2010년 4월 15일자 1면), 인터넷 의정부신문 (4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를 공천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인 신청인이 재산없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처 리 결 과	•인터넷 의정부신문 :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박인균 당협위원장에 대한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의정부신문 (2010년 10월 1~13일자 5면), 인터넷 의정부신문 (10월 2일자)]

2010서울중재74~75	
김○○ 對 인터넷 내외일보 (정정·반론청구)	
중 재 대 상	(1) 『술판·싸움판 학교 급식실...학교는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1일자) (2) 『연천전곡고 급식실에서 시작되는 학교 비방』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2일자) (3) 『연천전곡고 급식실, 솜방망이 처분에 ‘시끌’』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3일자) (4) 『놀고먹는 연천 전곡고등학교 영양사』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고등학교 영양사로 재직중인 신청인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배식을 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내외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인터넷내외일보 뉴스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반론보도> ‘전곡고 영양사 놀고먹는다’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24일자)

